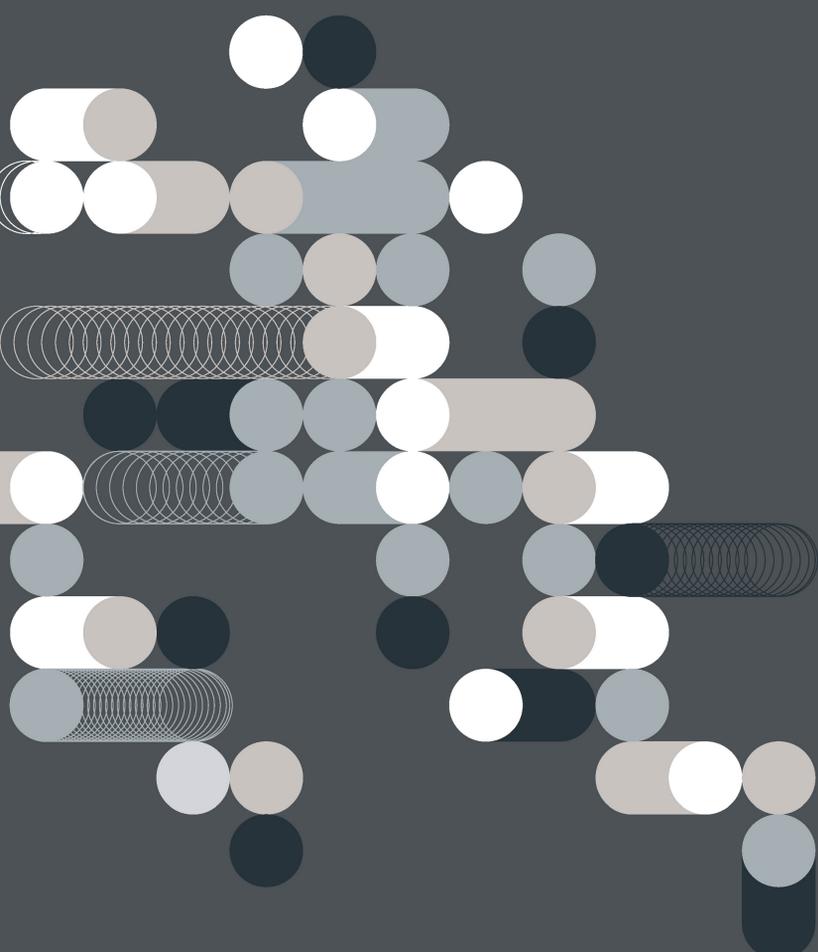


빅테크의 대출기능 현황, 영향과 정책과제

2021. 12

이병윤 · 서정호



빅테크의 대출기능 현황, 영향과 정책과제

이병윤 · 서정호

목차

요약

| | |
|--|----|
| I. 서론 및 연구 동기 | 1 |
| II.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 및 자금중개 현황 | 5 |
| 1. 빅테크 자금중개의 정의 | 5 |
| 2. 현황 | 8 |
| 가.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 | 8 |
| 나. 빅테크의 자금중개 서비스 진출 | 16 |
| 3.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요인 | 23 |
| III. 국내 ICT기업의 금융업 진출 추진 사례와 시사점 | 26 |
| 1. ICT기업의 금융업 진출 초기 사례 | 26 |
| 2.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역사 | 30 |
| 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실패사례 | 30 |
| 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공사례 | 33 |
| 다. 시사점 | 34 |
| IV. 금융기관 자금중개의 중요성 및 한계 | 36 |
| 1. 금융기관 자금중개의 의의 | 36 |
| 2. 금융기관 자금중개의 중요성 | 37 |
| 가. 경제성장 및 불평등 해소에 기여 | 37 |
| 나.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기여 | 37 |
| 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주 수익원 | 39 |

| | |
|--|-----------|
| 3. 은행 등 금융기관 자금중개의 한계 | 40 |
| 4. 시사점 | 43 |
| V. 빅테크 자금중개의 장·단점 | 45 |
| 1. 빅테크 자금중개의 장점 | 45 |
| 가. 신용평가 개선 | 45 |
| 나. 담보위주 대출 관행 개선 | 48 |
| 다. 자금중개시장 경쟁 강화 | 48 |
| 2. 빅테크 자금중개의 단점 | 49 |
| 가. 독과점화 가능성 | 49 |
| 나. 반경쟁적 행위 가능성 | 49 |
| 다. 금융안정성 저해 가능성 | 50 |
| VI. 사례 분석 | 52 |
| 1. 해외사례 : 남미 전자상거래업체 Mercado Libre | 52 |
| 가. 개요 | 52 |
| 나. 신용평가의 정확도 향상 | 53 |
| 다. 차입자 포용성 향상 | 54 |
| 2. 국내사례 : 네이버파이낸셜 | 54 |
| 가. 개요 | 54 |
| 나. 대안신용평가 절차 | 56 |
| 다. 대안신용평가의 효과 | 57 |
| 3. 시사점 | 64 |

| | |
|--------------------------------|----|
| VII. 정책과제 | 66 |
| 1. 기본방향 | 66 |
| 2. 빅테크 자금중개의 활성화 | 68 |
| 3. 기존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제고 | 71 |
| 4. 빅테크의 자금중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72 |
| 가. 모니터링의 필요성 | 72 |
| 나.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의 취지와 빅테크 | 74 |
| 5. 독과점 방지 | 78 |
| 6. 빅테크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율 마련 | 79 |
| 7.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 82 |
| | |
| VIII. 결론 및 시사점 | 84 |
| | |
| 참고문헌 | 88 |

표목차

| | |
|--|----|
| 〈표 II-1〉 빅테크의 자금중개 형태별 구분 | 6 |
| 〈표 II-2〉 국내 주요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제공 현황 | 13 |
| 〈표 II-3〉 빅테크 기업과 금융그룹의 시가총액 비교 | 15 |
| 〈표 II-4〉 글로벌 주요 빅테크의 자금중개 서비스 | 18 |
| 〈표 II-5〉 글로벌 주요 빅테크의 자금중개 서비스(계속) | 19 |
| 〈표 II-6〉 인터넷전문은행 증금리대출 신규공급액 | 23 |
| 〈표 III-1〉 다우기술 사업영역 | 28 |
| 〈표 III-2〉 2008년 금융위가 제시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 31 |
| 〈표 III-3〉 기업의 규모별 자금조달 금액 및 비중 추이 | 38 |
| 〈표 III-4〉 국내은행의 총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 추이 | 39 |
| 〈표 III-5〉 국내은행의 총이익 대비 이자이익 비중 추이 | 40 |
| 〈표 III-6〉 연도별 차입 외부자금의 조달비중(금액기준) | 40 |
| 〈표 III-7〉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 | 42 |
| 〈표 III-8〉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대비 담보대출 비중 추이 | 43 |
| 〈표 VI-1〉 Mercado Libre 차입자들의 내부등급 및 크레딧뷰로 등급별 손해율 | 53 |
| 〈표 VI-2〉 사업자 구분별 대출 관련 통계 | 57 |
| 〈표 VI-3〉 스마트스토어 과거 3개월 월평균 거래금액대별 대출 관련 통계 | 58 |
| 〈표 VI-4〉 스마트스토어 업력별 대출 관련 통계 | 59 |
| 〈표 VII-1〉 카카오와 네이버의 금융 관련 적용 법률 | 73 |
| 〈표 VII-2〉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의 범위 | 81 |

그림목차

| | |
|--|----|
| 〈그림 II-1〉 글로벌 핀테크 투자활동 현황 | 9 |
| 〈그림 II-2〉 국내 핀테크 기업 수 추이 | 9 |
| 〈그림 II-3〉 빅테크의 업무별 매출 비중 | 10 |
| 〈그림 II-4〉 국내 간편송금 일평균 거래실적 추이 | 12 |
| 〈그림 II-5〉 국내 간편결제 일평균 거래실적 추이 | 12 |
| 〈그림 II-6〉 디지털 금융 분야 주요 사업자 | 14 |
| 〈그림 II-7〉 카카오뱅크의 대출금 및 증가율 추이 | 22 |
| 〈그림 III-1〉 키움증권 국내 브로커리지(brokerage) 시장점유율 추이 · | 27 |
| 〈그림 III-2〉 다우키움그룹 지배구조 | 28 |
| 〈그림 III-3〉 키움증권 영업수익 및 수탁수수료 추이 | 28 |
| 〈그림 III-4〉 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예대율 추이 | 41 |
| 〈그림 VI-1〉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대출 구조 | 55 |
| 〈그림 VI-2〉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안신용평가 프로세스 | 56 |
| 〈그림 VI-3〉 비금융데이터만 활용한 전략등급의 효과 | 60 |
| 〈그림 VI-4〉 비금융데이터 활용 최종심사결과의 등급분포 | 61 |
| 〈그림 VI-5〉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의 사업자 특성별 분류 | 62 |
| 〈그림 VI-6〉 대출실행자와 대출미실행자 간 대출 이후 매출액 변동 비중 비교 · | 63 |
| 〈그림 VII-1〉 빅테크 자금중개기능에 대한 정책방향 | 66 |
| 〈그림 VII-2〉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 접근방식 | 68 |
| 〈그림 VII-3〉 카카오의 금융사업 구조 | 72 |

한국금융연구원 홈페이지(www.kif.re.kr < 연구자료 < 보고서)를 이용하시면,
본 발간물의 그림, 표를 컬러로 보다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약

I. 서론 및 연구 동기

-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금융산업에서도 혁신적인 ICT 기술이 접목되어 디지털금융이 확산되는 등 금융혁신이 촉진되면서 두 가지 방향에서 금융산업의 경영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음.
 -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빠르게 이루어져 금융회사의 경영전략, 업무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등 모든 업무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혁신적인 ICT 기술로 무장한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뛰어들면서 금융시장에서 기존 금융회사들과 경쟁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빅테크는 자체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축적하고 있는 풍부한 고객데이터와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들의 신뢰, 충성스러운 고객군을 가지고 있고 핀테크와는 달리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은행과의 경쟁관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본고는 빅테크의 각종 금융서비스 중 금융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자금중개서비스를 다루려고 함.
 - 일반적으로 빅테크는 지급서비스(payment) 제공으로 금융서비스를 시작하고, 이후 기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플랫폼상의 판매자들을 위해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영역을 넓혀 감.

▣ 빅테크의 자금중개서비스 제공은 초기 단계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매우 큰 규모임.

- 2019년 현재 전 세계 핀테크와 빅테크의 총신용은 7,95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빅테크 신용은 총 5,720억 달러 정도로 파악됨.
- 우리나라에서는 빅테크인 카카오, 네이버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거나 기존 금융회사와 제휴 등을 통해 자금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빅테크는 대출서비스에서 기존 금융회사들에 비해 더 많은 데이터와 혁신기술로 수준 높은 신용평가를 할 수 있음.

- 빅테크는 넓은 고객베이스를 기반으로 형성된 플랫폼 내 상거래, SNS, 검색 등에서 얻은 방대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AI와 머신러닝 기법 등 혁신적인 기술로 품질 높은 신용평가를 할 수 있음.
- 신용평가 품질이 높아지면 자원배분 효율성 개선, 대출 소외 계층에 대한 대출을 통한 금융포용성 개선으로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

▣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한 본고의 연구동기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는 것임.

- 금융회사도 아닌 빅테크가 금융업, 특히 금융의 고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중개업에 진출하는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
- 과거에도 금융회사가 아닌 ICT기업이 금융업을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대부분 실패했는데 왜 최근에는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가?
- 빅테크가 과연 기존 금융회사들에 비해 신용평가에서 더 나은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까?
- 빅테크 자금중개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은 무엇인가?

II.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 및 자금중개 현황

1. 빅테크 자금중개의 정의

▣ 자금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란 자금공급자로부터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개해주는 역할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

- 자금중개는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이 자금잉여자에게서 예금을 받아 이를 자금수요자에게 대출해 주는 직접 중개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제시스템 내에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금수요자와 잉여자금이 있는 자금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자금중개라고 할 수 있음.

* 예금을 받지 않는 여신전문금융기관, 주식·채권시장도 자금중개를 수행함.

▣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빅테크(BigTech)도 금융서비스의 하나로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자금중개를 하게 되는데 그 형태를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음.

빅테크의 자금중개 형태별 구분

| | 비금융플랫폼 본체 | 금융자회사 | 단순중개(타금융회사와 제휴) |
|---------|-----------|-------|-----------------|
| 대출 | ① | ② | ③ |
| 예금 + 대출 | ④ | ⑤ | ⑥ |

▣ 빅테크 대출은 비금융플랫폼인 빅테크 본체에서 직접 해주거나, 은행 등 금융자회사를 설립하여 해주거나, 또는 타금융회사와 제휴를 맺어 제휴 금융회사에서 대출해 주는 방식 등이 있으며, 각 경우에 대출만 해줄 수도 있고,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줄 수도 있음.

- 예금수취기관이 아니면 예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④와 ⑥의 형태는 성립하지 않음.
- 본고에서 빅테크의 자금중개라고 할 때는 ①, ②, ③, ⑤의 경우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을 사용함.

2. 현황

가.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

- ▣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ICT 및 첨단지식산업의 급성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거래에 대한 수요 폭증 등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음.
 -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 이외에도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fintech)에 대한 투자가 전(全)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핀테크의 수(數)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 빅테크(big tech) 중 일부도 지급·결제, 자산관리, 보험 및 대출 중개 등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다만, S&P Capital IQ에 따르면 빅테크들의 주요 사업은 정보·기술(IT)과 컨설팅(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분석)이 매출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금융서비스는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까지 금융서비스가 이들의 핵심사업이라 보기는 어려움.
 - 알리바바(Alibaba), 아마존(Amazon)과 같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사업에 진출한 사례도 있음.
-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들이 간편송금·간편결제 서비스를 기초로 지급결제시장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진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네이버와 카카오 그룹만 보더라도 지급서비스(payment)는 물론 송금, 은행업(카카오뱅크), 대출(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대출), 투자, 보험 등의 서비스를 직·간접으로 취급하고 있음.

■ 향후 이들 빅테크 기업들이 높은 성장세를 기반으로 새로운 혁신금융 사업에 참여할 경우, 금융시장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11월 1일 시가총액 기준 네이버(Naver)는 KB금융의 약 2.8배, 카카오는 약 2.6배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음.
- 또한, 현재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및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러한 사업을 빅테크가 영위할 경우 빅테크의 금융 진출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

나. 빅테크의 자금중개 서비스 진출

■ 세계적으로 빅테크의 대출서비스는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내부 자금이나 조달자금을 이용하여 직접 대출해 주거나 외부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예컨대, 남미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Mercado Libre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에서 거래 중소기업(seller)을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중국 텐센트(Tencent)는 자회사인 인터넷전문은행 WeBank를 통해 자체 SNS 프로그램인 위챗(WeCha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해 주고 있음.
- 아마존(Amazon)은 2020년 하반기부터 골드만삭스 (Goldman Sachs)에 위탁하는 형태로 플랫폼 입점 업체 대상으로 대출서비스를

시작하였음.

-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예·적금 및 대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20년 12월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캐피탈과 제휴하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 대출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2021년 2월에는 우리은행과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상품을 내놓기도 했음.
 - 카카오는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간편결제·송금서비스를 제공하고 2016년 1월 카카오뱅크를 설립하여 예·적금, 대출, 증권계좌개설 등 다양한 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요인

- 빅테크가 금융업에 진출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①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인데, 대출 등 은행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측면이 있고, 또 빅테크와 핀테크가 제공하는 기술에 기반한 금융서비스의 편리성이 수요를 끄는 측면이 있음.
 - ② 빅테크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들의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져 빅테크의 핵심 비즈니스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빅테크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음.
 - ③ 빅테크가 비즈니스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 ④ 빅테크가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기존 비즈니스 및 금융서비스 양자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전략적 차원

- ⑤ 빅테크가 금융서비스를 추가하면 네트워크 외부성으로부터 혜택도 받고 이를 더 강화하기도 하기 때문임.
- ⑥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우월성을 활용하려는 목적
- ⑦ 금융산업 내 경쟁 부족
- ⑧ 규제 차익을 누리기 위한 목적 등

Ⅲ. 국내 ICT기업의 금융업 진출 추진 사례와 시사점

▣ 본 장에서는 국내 ICT기업의 금융업 진출 시도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요인들로 인해 최근 들어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함.

-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도 ICT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일부 성공사례가 있지만 대체로 진입이 쉽지 않았음.
- 이처럼 과거에는 쉽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ICT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해진 것은 IT기술이 크게 발전한 요인도 있고 금융혁신에 대한 당국의 의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린 것으로 보임.

1. ICT기업의 금융업 진출 초기 사례

▣ ICT기업의 초기 금융업 진출 성공사례로 키움증권을 들 수 있는데, 키움증권은 2000년에 온라인 증권사로 설립되어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해 왔으며, 현재 브로커리지(brokerage) 부문에서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음.

- 모회사인 다우기술(41.22% 지분 보유)은 다우키움그룹의 중간지주 회사에 해당되는데, 2020 회계년도 다우기술 연결영업이익의 약 87%가 키움증권에서 산출되고 있음.
- 현재 키움증권은 키움인베스트먼트, 키움저축은행, 키움YES저축은

행, 키움자산운용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음.

▣ 키움증권의 성공요인에는 무엇보다도 공격적인 수수료 정책을 들 수 있겠으나, 이외에도 모기업의 IT 역량을 십분 활용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 즉, 「영웅문」이라는 트레이딩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영웅문S」는 라이선스를 해외로 수출하며 상당한 수익을 확보하기도 했는데, 다우기술과의 협업으로 플랫폼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이외에도 ICT기업이 금융회사에 투자한 사례는 많은데, 대표적으로 2010년 2월 SK텔레콤은 하나카드의 지분 49%를 인수하여 신용카드 사업에 뛰어들었고(‘통신+금융’), 2011년 11월 통신사 KT는 BC카드의 지분 33.85%를 추가 매수하여 최대주주(35.83%)로 등극했음.

2.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역사

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실패사례

▣ 2001년에 브이뱅크(V-bank) 설립이 추진되었으나 수익모델 미비, 외국계 금융회사 자금 유치 실패, 정책당국의 미온적인 태도, ‘동일인 지분한도 4% 규정’ 등으로 실패함.

- SK텔레콤·롯데·코오롱 등 대기업과 안철수연구소 같은 벤처기업 등 20여 개 기업들이 공동 출자
- 100명 이하 인력과 무점포 경영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높은 금리를 제시해 고객들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 제시
- 수익모델 미비, 외국계 금융회사 자금 유치 실패, 정책당국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무산됨.

- 특히 ‘동일인 지분한도 4% 규정’을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10% 이상 지분투자 유치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유치 실패로 무산됨.
- 2008년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계좌개설을 하려면 대면 확인이 필요하다는 ‘금융실명법’ 조항,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취약한 수익모델 및 과당경쟁에 의한 부실 우려 등으로 무산됨.
- 금융위는 2008년 6월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을 통한 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검토함.
 - 그러나 2010년 4월 국회 정무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모델이 취약하고 과당경쟁으로 은행들이 부실화할 우려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은행법 개정안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도입이 무산됨.
 -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안정성이 중시된데다 계좌개설을 하려면 대면 확인이 필요하다는 ‘금융실명법’ 조항도 걸림돌이 되었음.
- 또 하나의 중요한 도입 실패 요인은 당시만 해도 IT기술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따른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임.
- 우선 스마트폰이 없어 오늘날 인터넷전문은행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뱅킹이 불가능해 편의성이 떨어졌음.
 - 또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IT기술이 발전하여 이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신용평가, 마케팅 등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으나 2008년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음.

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공사례

- ▣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제시된 설립 필요성은 다음 세 가지임.
 - 1)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 제고, 2) 금융혁신을 통한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3) 미래 신성장동력의 창출

- ▣ IT기술의 큰 발전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이익이 매우 커졌음.
 -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모바일뱅킹이 가능해졌음.
 - 4차 산업혁명으로 빅데이터와 AI 등 IT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이를 활용할 경우 신용평가,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리스크관리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음.

- ▣ 금융실명법 상 대면 본인확인 필요, 산업자본 최대주주의 의결권 있는 은행주식 4% 이상 소유금지 등이 걸림돌이었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이익이 크고, 금융당국의 금융혁신 의지도 커서 해결됨.
 - 이러한 규제 걸림돌들은 금융위가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방식에 비대면 확인방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으로 정보통신기업에 한해 은행주식 소유비율을 34%로 완화시켜줌으로써 해결됨.

- ▣ 이에 따라 2017년 4월 케이뱅크, 7월 카카오뱅크, 2021년 10월 토스뱅크 등 3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었음.

다. 시사점

- ▣ 과거 설립에 실패하였던 인터넷전문은행이 2017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가 완화된 영향이 컸지만 실질적으로는

IT기술 발전 등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따른 장점이 커졌고 금융당국의 금융혁신에 대한 의지도 강했기 때문임.

- 스마트폰 보편화로 모바일뱅킹이 가능해져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커졌음.
- 4차 산업혁명으로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IT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평가,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리스크관리 등에서 장점이 극대화되었음.
- 금융당국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통한 금융혁신으로 금융소비자 후생 증대 및 은행산업 경쟁강화를 도모하려는 의지가 강했음.

IV. 금융기관 자금중개의 중요성 및 한계

1. 금융기관 자금중개의 의미

- ▣ 자금중개기관은 자금공급자로부터 잉여자금을 받아 풀(pool)을 만들어 다양한 규모와 만기 조건을 가진 자금수요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등 자산변환 기능을 수행하여 원활한 자금흐름을 도와줌.
- 은행 등 자금중개기관은 자금공급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자금수요자의 신용위험을 사전적으로 평가하고 (delegated screening) 또 사후적으로 감시하여 (delegated monitoring) 정보비대칭성을 줄이는 신용위험 중개 역할도 수행함.

2. 금융기관 자금중개의 중요성

가. 경제성장 및 불평등 해소에 기여

- ▣ 은행 등 금융기관은 자금중개를 하기 전 차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고 사후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 ▣ 또한 자금중개기관의 신용평가를 통한 자금중개 기능은 타고난 재원이 적은 경제주체들도 자신의 아이디어와 노력만 있으면 사업을 성공시켜 소득과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음.

나.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기여

- ▣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소기업이 주로 직접금융인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간접금융인 대출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음.
 - 2019년 말 현재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전체의 85.5%, 사업체 수는 99.9%에 이룸.
 - 2019년 말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중 대출 비중은 99.6%에 달함.

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주 수익원

- ▣ 국내은행의 총자산 중 대출자산 비중은 대체로 60%대를 기록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금중개에 따른 이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자이익이 국내은행 이익의 8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3. 은행 등 금융기관 자금중개의 한계

- ▣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을 주로 은행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경우 영세한 기업이 많아 정확한 경성정보를 얻기 힘들어 신용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 업력이 짧거나 첨단기술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재무제표나 경영지표 등 정량적 정보가 기업의 미래가치나 성공 가능성 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에는 연성정보의 활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최종 판단을 결국 사람인 대출심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데에서 나오는 오류도 있음.
 - 한편 중소기업들의 경우 부동산 등 담보가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 은행의 원화대출에서 담보대출 비중이 50%를 넘고 있어 담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4. 시사점

- ▣ 기존 금융기관들이 대출대상에 대한 신용평가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신용평가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가 있을 경우 자금중개시장에 진입하여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그 역할을 최근 빅테크 계열 금융회사들이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
 - 이들은 빅테크에 축적되어 있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AI 등으로 분석하여 대출대상에 대해 보다 정밀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존 자금중개시장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등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V. 빅테크 자금중개의 장·단점

1. 빅테크 자금중개의 장점

가. 신용평가 개선

- ▣ 은행의 신용평가는 뚜렷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특히 정보불투명성이 높고 미래가치 판단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신용평가가 어려운 실정임.

- ▣ 빅테크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차입자 관련 방대한 빅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AI와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사람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은행보다 더 정확한 신용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음.
 - 빅테크는 수많은 가입자들이 활동하는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기업의 이커머스 활동, 고객들의 온라인 검색 및 SNS 활동 등으로부터 기업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빅데이터로 구축할 수 있음.
 - 대출 대상 기업에 대한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는 재무제표와 같이 수치화된 경성정보가 나타낼 수 없는 기업의 미래가치, 행동특성, 평판 등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나타냄.
 - 이처럼 방대한 빅데이터를 경성정보와 함께 AI와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할 경우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는 전통 은행보다 더 나은 신용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음.

- ▣ 빅테크의 정교한 신용평가는 자원배분 효율성 및 금융포용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 빅테크가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경우 자원의 낭비를 줄여 자원배

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또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경우 기존 금융기관들이 대출해줄기 어려웠던 대출대상에게 대출해 줄 수 있어 금융포용성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음.

나. 담보위주 대출 관행 개선

- ▣ 빅테크에 의한 대출은 기존 금융회사에 의한 자금중개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담보위주 대출 관행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음.
 - 빅테크는 네트워크 외부효과와 높은 플랫폼 이전 비용 등을 활용하여 자체 플랫폼 내에 있는 차입자에 대해 담보를 받지 않고도 대출상환을 강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해 신용대출을 확대할 수 있어 금융포용성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음.
 - 특히 최근 4차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첨단지식기반기업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이들은 유형자산보다는 지식·특허 등 무형자산이 많아 담보 대출을 받기 어려워 빅테크가 역할을 할 수 있음.

다. 자금중개시장 경쟁 강화

- ▣ 기존에 영업하던 은행 등 금융회사 이외에 빅테크가 자금중개시장에 진입할 경우 시장경쟁이 강화되어 금융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2. 빅테크 자금증개의 단점

가. 독과점화 가능성

- ▣ 빅테크는 네트워크 외부효과와 높은 플랫폼 전환비용 등으로 독과점화할 가능성이 높음.
 - 빅테크는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플랫폼 이용에 따른 이익이 커지는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해 규모가 커질수록 경쟁력이 강화되어 시장 지배력이 더욱 커지는 현상이 발생함.
 - 또 플랫폼 이용자의 경우 플랫폼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플랫폼으로의 전환 비용이 커지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빅테크 플랫폼은 이용자가 많아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음.

나. 반경쟁적 행위 가능성

- ▣ 빅테크는 자체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반경쟁적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음.
 - 예를 들어 자체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에만 혜택을 주거나, 상품번들링 할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음.
 - 플랫폼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빅테크가 이를 소비자에 대한 가격차별화에 활용하여 소비자효용을 가져갈 수 있음.
 - 빅테크가 방대한 데이터로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경우 위험도가 높거나 수익기여도가 낮은 차입자를 아예 대출대상에서 배제할 수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소비자를 차별할 수도 있음.

다. 금융안정성 저해 가능성

- ▣ 대형 빅테크가 자금중개 서비스를 하며 시장에 진출할 경우 다양한 경로로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
 - 빅테크와 기존 은행 간 과도한 경쟁에 의해 시장 전체적으로 위험 추구가 확대되면서 금융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음.
 - 빅테크의 주요 사업인 비금융업의 리스크가 금융업으로 전이될 위험도 있음.
 - 대형화된 빅테크의 경영실패나 운영위험 등이 발생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음.

VI. 사례 분석

1. 해외사례 : 남미 전자상거래업체 Mercado Libre

- ▣ Frost et al. (2019)은 남미 인터넷 전자상거래 기업인 Mercado Libre의 자체 플랫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결과와 전통적인 크레딧뷰로(credit bureau) 방식의 신용평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자 방식이 더 정확한 신용평가를 하고 금융포용성도 높였음을 보임.
 - Mercado Libre는 기존에 이미 크레딧뷰로(credit bureau) 방식의 신용평가 등급을 가지고 자체 플랫폼에서 이커머스를 수행하는 판매 자들에 대해 자체 플랫폼의 빅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신용평가를 수행(내부등급 방식)하였음.
 - 이들에 대해 손해율을 구해본 결과 내부등급 방식이 기존의 크레딧뷰로 방식에 비해 손해율을 더 정확하게 예측한 것으로 나타남.
 - 또 Mercado Libre는 크레딧뷰로 방식 분류에서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대출이 어려웠던 그룹의 판매자들에 대해서도 내부등급

방식 신용평가를 통해 일부 대출해줌으로써 금융포용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음.

2. 국내사례 : 네이버파이낸셜

가. 개요

- 2020년 12월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과 제휴하여 네이버의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영업하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상품’을 출시
 - 네이버파이낸셜이 대출을 신청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들에 대해 대안신용평가(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 ACSS) 시스템으로 신용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미래에셋캐피탈에 제공하면 미래에셋캐피탈에서 최종 승인하여 대출이 나가는 방식임.
-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은 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 CB)가 가진 금융 데이터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판매자들의 판매현황, 매출흐름, 단골고객 비중, 고객 리뷰, 반품률 등 각종 비금융 데이터들을 결합하여 빅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AI,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하는 것임.
- 대출상품 영업 기간이 짧아 아직 의미 있는 손해율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워 본고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빅테크의 대안신용평가 방식이 기존 신용평가에 비해 어느 정도 개선된 평가결과를 도출했는지 알아보려고 함.

나. 대안신용평가 절차

-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안신용평가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1단계에서는 대출신청자에 대해 CB 등급과 네이버의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한 내부등급을 결합하여 결합등급을 산출함.
 - 2단계에서는 이 결합등급에 네이버의 보다 광범위한 비금융데이터만으로 이루어진 평가에 따른 등급인 전략등급을 합산하여 최종승인여부가 결정됨.

다. 대안신용평가의 효과

- 비금융데이터만으로 이루어진 평가에 따른 전략등급의 효과
 - 2단계 전략등급은 비금융데이터만 활용한 평가인데 이것이 1단계 평가결과를 뒤집은(승인전환) 경우가 16.9%, 동 결과의 등급을 상승시킨(등급상승) 경우가 41.6%로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가 상당한 효과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음.
- CB등급에 비금융데이터까지 활용하여 신용평가를 한 결과 일반적으로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는 6~7등급 대출신청자도 일부 대출을 받았고 1~3등급에서도 승인거절자가 나오는 등 비금융데이터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은행대출이 어려운 간이사업자, 초기 사업자, Thin-filer 및 20대 사업자들도 대출을 받아 금융포용성도 높아진 것으로 보임.
 - 전체 대출 중 42.5%가 은행대출이 어려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에 대한 대출임.
 - 38.8%가 은행대출이 어려운 업력 18개월 미만의 초기 사업자들임.

- * 빅테크 플랫폼 내 판매자들의 경우 실시간으로 매출정보 확인이 가능하여 업력이 짧은 업체도 대출신청 및 승인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
- 대출신청자 중 금융정보가 없는 Thin-filer가 2.7%였는데 이 중 약 51%가 대출을 받았고, 금융 이용 경력이 매우 짧은 20대 사업자들 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 대출 받은 사업자가 그렇지 못한 사업자에 비해 대출 이후 더 좋은 영업실적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나 대안신용평가가 대출대상 선별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음.
- 대출실행자들 중 43.0%가 매출이 올랐으나 대출미실행자들 중 매출이 증가한 비율은 39.2%에 그침.
- 매출이 감소한 판매자 비율은 대출실행자들 중 57.0%였으나 대출미실행자들 중 비율은 60.8%에 달했음.

3. 시사점

- ▣ 해외사례에서나 국내사례에서나 빅테크가 자체 플랫폼에서 영업하는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에서 AI, 머신러닝으로 분석하여 수행한 신용평가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옴.
- Mercado Libre 데이터를 분석한 해외사례에서는 빅테크의 내부 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등급이 CB등급에 비해 손해율을 더 잘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음.
- 네이버파이낸셜의 사례를 분석한 국내사례의 경우에는 대체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내부 신용평가가 CB에 의한 신용평가에 비해 더 나은 선별력을 보여주었으며 금융포용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 그러나 신용평가 대상이 자체 플랫폼 내 판매자가 아닐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빅테크의 형태에 따라 결과의 품질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금융업 라이선스를 받아 금융산업에 직접 진출하고 있는 빅테크의 경우 기존 은행들이 접근 가능한 크레딧뷰로(CB) 정보에 더해 모기업이나 관계회사로부터 비금융 정보를 수월하게 입수할 수 있어 기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우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반면, 제휴를 통해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간접진출형은 일반적인 신용평가에서 은행 대비 정보우위를 아직 판단하기 이른 것으로 보임.

Ⅶ. 정책과제

1.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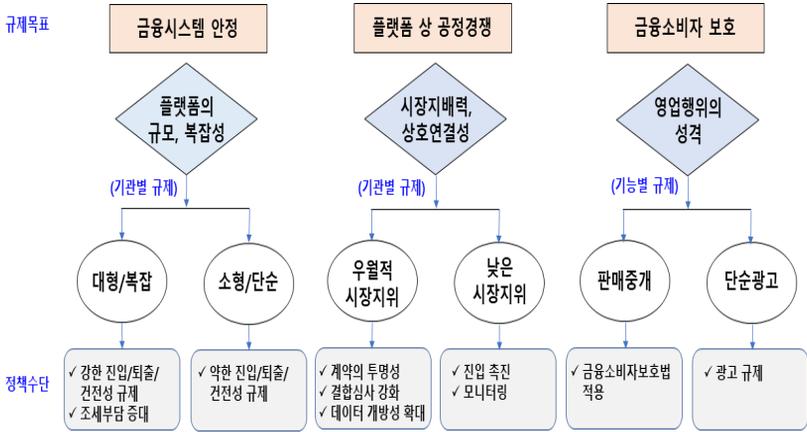
- 빅테크 자금중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장·단점이 공존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첫째, 빅테크가 기존 금융권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에 접근하는 경우 즉,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자금중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면 빅테크의 자금중개를 차단할 명분은 약함.
- 둘째,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확대될 경우, 특히 비금융사업에서 촉발된 리스크가 금융사업의 파급될 리스크, 시장지배력 확대에 따른 불공정 거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 빅테크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비금융사업 부문의 부실이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

- 빅테크가 플랫폼 지배력을 앞세워 가입자 유치와 이를 통한 수수료 수익을 확보하는 반면 판매에 대한 책임은 금융회사에 전가할 수도 있음.
- 또한, 플랫폼 독점으로 금융상품 광고 및 나열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되거나 특정 금융사 상품 위주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경우 사실상 시장지위의 남용 가능성이 커짐.

▣ 셋째, 정책당국은 일률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규제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곳에 목적 적합한(relevant) 규제를 제시해야 할 것임.

- 즉,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규모나 사업의 복잡성, 시장지배력, 영업활동의 성격 등에 따라 정책조합(policy mix)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 접근방식



2. 빅테크 자금중개의 활성화

- 빅테크의 자금중개 시장 진출은 동 시장 경쟁을 강화하고 신용평가 정확도 향상을 통해 자원배분 효율성 및 금융포용성도 개선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리스크관리를 위한 철저한 금융감독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대출 신용평가 업무 위탁 제도 개선 필요
 - 금융회사가 고유업무로 판단되는 대출 신용평가 업무를 핀테크나 빅테크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의 일관인 지정대리인 제도에 따른 것임.
 - 빅테크의 자금중개 활성화 차원에서 빅테크에 의한 대안신용평가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경우 업무 허용 기간의 적절한 연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빅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 활성화 필요
 - 공급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이란 물품을 생산하여 대기업 등에 공급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통칭하는 것임.
 - 핀테크·빅테크 기업은 CB 데이터 및 자체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안신용평가를 하여 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고 차입자에 대해서는 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회사 대출, 어음할인 계약을 중개하는 형태의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의 확대 발전을 위해 참여 기업을 핀테크뿐 아니라 빅테크, 신용카드사, 통신사 등으로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 거래 관련 데이터를 창출하고 축적하며 이를 참여 기업들이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3. 기존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제고

- ▣ 기존 금융회사도 빅테크와 같이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평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수업무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허용해 주는 방안 검토
 - 기존 대형 빅테크에 비해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으나 기존 금융회사들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비금융 데이터를 확보하고 축적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임.
 - 기존 금융회사들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자체적으로 직접 영위하거나 또는 제휴를 통해 할 수 있을 것임.

- ▣ 금융회사에 부수업무로 비금융 업무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허용해 주기 위해서는 고려해야할 점들이 많음.
 - 미국의 경우 은행에 부수업무를 허가해줄 때는 해당 업무가 은행 고유업무와 기능적으로 동일하거나 논리적 연장선상에 있는지, 소비자 편익을 창출하고 은행 건전성을 제고하는지 등을 검토함.
 -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고려하는데 2015년에 금융위원회가 신규 부수업무에 대해 은행의 여유 인적·물적자산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까지 폭넓게 인정하도록 탄력적으로 해석하기로 하였음.

- ▣ 부수업무 허용 관련 요건들을 충분히 고려하되 이를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범위를 확대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임.

4. 빅테크의 자금증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 빅테크의 경우 기존 금융법에 따라 규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룹 내 계열사들과 상호 연계성·연결성도 높아, 금융거래의 규모가 증대되어감에 따라 모니터링할 유인이 증대

카카오와 네이버의 금융 관련 적용 법률

| | 카카오 | | | 네이버 |
|--------------|-------|----------|-------|----------|
| | 카카오페이 | 카카오페이 증권 | 카카오뱅크 | 네이버 파이낸셜 |
| 전자금융거래법 | ○ | ○ | ○ | ○ |
|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 × | × | ○ | × |
| 자본시장법 | × | ○ | × | × |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 ○ | ○ | ○ | × |
| 금융지주회사법 | × | × | × | × |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 × | × | × | × |

- ▣ 현재 국내에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상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빅테크 기업은 아직 없으나, 자금증개거래가 빈번하고 규모가 상당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은 보여줄 필요가 있음.
 -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제로는 자본적정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 공시, 위험관리실태평가 등이 있는데, 이 중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내부거래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빅테크 그룹 내 고위험(high-level risk) 내부거래를 유형화하고, 이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 시 규제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으로 편입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임.
 - 감독 목적 상 빅테크 자금증개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정교하게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야 할 것임.

5. 독과점 방지

- ▣ 빅테크는 네트워크 외부효과와 높은 전환비용 때문에 독과점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금융업은 빅테크의 다양한 업무들 중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주도적으로 빅테크의 독과점화 방지를 유도하기는 어려우며 금융당국과 공정거래당국의 협업이 필요함.

6. 빅테크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율 마련

- ▣ 빅테크가 유발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는 ①빅테크의 금융상품을 공급하려는 금융회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②빅테크의 금융소비자에 대해 불공정행위가 있음.
- ▣ 이에 대해 금융규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가능함.
- ▣ 첫째, 기능별(functional) 또는 행위별(activity-based)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동일 기능(혹은 동일 리스크)에 대해 동일 규제를 적용
 - 더욱이,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을 연계하고 판매하는 전(全) 단계에 걸쳐 행위 유형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플랫폼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하고 각 행위에 대한 법적 성격도 명확하게 할 필요

■ 둘째,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비대칭적인 데이터 공유 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임.

-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 범위도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음.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으로 상당량의 금융회사 보유 정보가 빅테크에 제공될 수도 있는 반면, 빅테크가 보유한 다양한 정보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괄되지 않아 금융회사 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되기 어려움.

■ 셋째, 금융당국 내 플랫폼의 공정경쟁을 제고하는 감독기능 및 해외 감독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정보, 신용정보 등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독점적 지배력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 기존 금융사업자 및 빅테크 간 규제차익의 최소화 등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
- 금융당국 내에 비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금융 부문의 공정경쟁 이슈를 관리하는 기능을 보장할 필요
 -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의 경우 경쟁 촉진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이익 증대 (promote effective competition in consumers' interests in regulated financial services)가 주요 mission임.
-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국내 감독에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해외 감독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적인 협력과 규칙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7.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 빅테크가 신용제공을 확대할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해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금융당국이 핀테크 및 빅테크에 의한 신용제공의 규모를 파악하고

공식적으로 집계할 필요가 있음.

- 자금중개시장 경쟁강화에 따른 무리한 위험추구 행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감독 당국의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 경쟁 강화에 따른 일부 금융회사들의 부실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함.
 - * 빅테크가 강화된 신용평가 능력을 기반으로 정보불투명성이 높은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장확대에 나설 경우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은 수익성 악화로 부실화할 수 있음.

VIII. 결론 및 시사점

- ▣ 빅테크가 금융업, 특히 자금중개업에 진출하는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 빅테크가 금융업 진출을 늘리는 이유는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고 네트워크 외부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다각화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다양한 데이터 확보로 기존 비즈니스 및 금융서비스 양자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등의 효과 때문임.
 - 아울러 기존 금융회사들의 신용평가 및 서비스 지역에서의 한계 등으로 틈새시장이 있기 때문임.
- ▣ 과거에도 ICT기업이 자금중개 등 금융업을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대부분 실패했는데 왜 최근에는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가?
 - 과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시도들은 실패했는데 금융실명제와 은산분리 규제 등이 표면적인 이유였으나 실질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IT기술이 발전하지 않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실익이 크지 않았기 때문임.
 - 최근 들어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고 금융당국의 금융혁신 의지도 가세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며 IT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되었음.

■ 빅테크가 기존 금융회사들에 비해 자금중개 시 신용평가에서 더 나은 경쟁력을 보일 수 있나?

- 남미 전자상거래기업인 Mercado Libre의 데이터를 분석한 해외사례에서는 빅테크의 내부 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등급이 금융데이터만을 활용한 크레딧뷰로(CB)의 신용등급에 비해 손해율을 더 잘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음.
-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안신용평가 데이터를 분석한 국내사례의 경우에도 대체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내부 신용평가가 CB에 의한 신용평가에 비해 더 나은 변별력을 보여주었으며 금융포용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빅테크 자금중개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은 무엇인가?

- 빅테크 자금중개의 장점은 신용평가를 개선할 수 있고, 담보위주 대출관행을 개선할 수 있으며, 자금중개시장 경쟁이 강화된다는 것임.
- 빅테크 자금중개의 단점은 독과점화할 가능성이 높고, 반경쟁적 행위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임.
- 빅테크 자금중개 활성화를 위해 빅테크의 금융 자회사 설립, 기존 금융회사와의 제휴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대출 신용평가 업무 위탁 제도 개선 및 빅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 활성화 등을 추진할 필요
- 기존 금융회사도 빅테크와 같이 금융정보와 비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가 가능하도록 비금융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줄 필요
- 빅테크는 실질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면서도 기존 금융회사보다

규제에서 다소 자유로운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더라도 관련 규제 중 일부를 적용하는 방안 검토

- 빅테크는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공정거래 당국 간 협조가 필요
- 빅테크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율 마련을 위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비대칭적인 데이터 공유 체계를 개선하며, 플랫폼 공정경쟁 제고를 위한 감독기능 강화 및 해외 감독당국과의 공조 강화 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핀테크 및 빅테크에 의한 신용제공 규모를 파악하고, 경쟁강화에 따른 일부 금융회사들의 무리한 위험추구에 대비한 모니터링 강화,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마련 등을 할 필요

▣ 향후 정책당국은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갖는 순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

- 빅테크의 자금중개 활동은 금융산업의 경쟁구도와 고객들의 금융행동을 바꾸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혁신동기를 자극하며, 금융산업의 체질 개선을 이끌 수 있음.
- 정책당국은 자금중개 기능의 다변화를 모색하되 이를 적절히 감독할 규제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 빅테크의 자금중개 서비스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명확히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향후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보다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정책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임.

I. 서론 및 연구 동기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다. 금융산업에서도 기존 금융업무에 이러한 혁신적인 ICT 기술이 접목되면서 디지털금융이 확산되는 등 금융혁신이 촉진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방향에서 금융산업의 경영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먼저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회사의 경영전략, 업무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금융상품, 고객접점, 후선업무 등 모든 업무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서정호 · 이병운 2020). 2019년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금융회사 108개 중 65.7%인 71개사가 활발하게 디지털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초부터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업무의 비대면화 및 이를 위한 디지털전환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혁신적인 ICT 기술로 무장한 기업들이 금융업에 뛰어들면서 금융시장에서 기존 금융회사들과 경쟁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기술(technology)과 금융(finance)을 결합한 핀테크(fintech) 기업들이 금융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핀테크를 넘어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빅테크(BigTech)도 금융업 진입을 확대하고 있다.¹⁾ 해외에서는 “GAFA”, “BATH”²⁾ 등 대형 빅테크가 막강한 플랫폼과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들이

1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비즈니스 중 하나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IT기업을 빅테크라고 지칭하며, 대체로 한 두 개의 단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과 차별화된다.

2 GAFA (Google, Amazon, Facebook, Apple), BATH (Baidu, Alibaba, Tencent, Hwawei)

금융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금융회사와 제휴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시장에 진출을 늘리고 있다. 빅테크는 금융산업에서 후발주자이지만 자체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축적하고 있는 풍부한 고객데이터와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들의 신뢰, 충성스러운 고객군을 가지고 있고 핀테크와는 달리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은행과의 경쟁관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병윤 · 서병호 · 권홍진 2020).

일반적으로 빅테크는 자체 플랫폼의 이커머스(e-commerce)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부족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서비스(payment)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서비스를 시작한다. 이후 신용이력이 짧고 담보제공도 어려워 기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플랫폼 상의 판매자들을 위해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서비스의 영역을 넓혀 간다. 즉 빅테크가 자금중개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이다.³⁾

본고는 이 빅테크의 자금중개서비스 제공에 주목하고 있다. 자금중개⁴⁾는 금융업이 생겨나게된 근본적 원천이며 가장 고유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애초에 금융업이 탄생하게된 이유가 금융시장에 자금 부족자와 자금 초과보유자 간 원활한 자금중개를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자금중개업에 빅테크가 진출하면서 금융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빅테크의 자금중개 서비스 제공은 초기 단계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매우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핀테크 및 빅테크의 신용제공 관련 국제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는 캠브리지 대안금융센터(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CCAF)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전 세계 핀테크와 빅테크의 총신용은 7,9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rnelli et al, 2020). 이 중 빅테크 신용은 총 5,720억 달러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중국, 일본, 한국 및 동남아시아

3 빅테크는 본체에서 직접 자금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금융자회사나 타 금융회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제공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 빅테크의 자금중개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자세한 논의는 II장 1절 “빅테크 자금중개의 정의”에서 다룰 것이다.

4 본고의 제목은 “빅테크의 대출기능”으로 되어 있으나, 대출도 자금중개의 하나이므로 본문에서는 자금중개에 집중하여 서술할 예정이다.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및 남미의 일부 국가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가 금융회사인 카카오뱅크를 설립하여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캐피탈과 제휴하여 대출 신용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대안신용평가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빅테크는 대출서비스에서 기존 금융회사들에 비해 경쟁우위 요소를 가지고 있다. 우선 빅테크는 넓은 고객베이스를 기반으로 형성된 플랫폼 내 상거래, SNS, 검색 등에서 얻은 방대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AI와 머신러닝 기법 등 혁신적인 기술로 대출대상에 대해 품질 높은 신용평가를 할 수 있다. 이는 빅테크 자금중개가 기존 금융회사에 비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요인이다. 신용평가의 품질이 높아지면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개선되고 기존 금융회사 대출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대출도 할 수 있어 금융포용성도 개선되므로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이처럼 빅테크가 대출대상에 대한 신용평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자금중개업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이는 금융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들이 있다. 먼저 금융회사도 아닌 빅테크가 금융업, 특히 금융의 고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중개업에 진출하는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 과거에도 금융회사가 아닌 ICT기업이 금융업을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대부분 실패했는데 왜 최근에는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가? 빅테크가 과연 기존 금융회사들에 비해 신용평가에서 더 나은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러한 빅테크의 자금중개업 진출은 금융산업과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빅테크 자금중개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은 무엇인가? 빅테크가 이미 여러 형태로 자금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은 실물경제 성장과 금융자금의 배분 등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5 대안신용평가(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 ACSS)란 기존의 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 CB)가 가진 금융 데이터에 빅테크 플랫폼에서 얻을 수 있는 이커머스 판매현황, 매출흐름, 단골고객 비중, 고객 리뷰, 반품률 등 및 SNS, 검색 등 각종 비금융 데이터들을 결합하여 빅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AI,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역할을 하는 자금중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이 본고의 연구동기이다.

본고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국내·외 현황 및 국내 ICT기업의 금융업 진출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빅테크 등 ICT기업이 왜 지금 성공적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 자금중개에서 기존 금융기관의 한계가 무엇이길래 빅테크가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 규명하였고 이러한 빅테크 자금중개의 장·단점도 살펴보았다. 빅테크로부터 직접 얻은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실제 빅테크기업이 자금중개 시 수행하는 신용평가에서 경쟁력이 있었는지 분석하였다.⁶⁾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II장에서는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 및 자금중개 현황을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과거 ICT기업의 금융업 진출 시도 사례를 살펴본다. IV장에서는 기존금융기관 자금중개의 한계에 대해 검토하여 빅테크의 자금중개시장 진출 요인을 분석한다. V장에서는 빅테크 자금중개의 장·단점을 알아보았다. VI장에서는 해외와 국내 빅테크의 실제사례에 대한 데이터분석을 통해 빅테크가 자금중개 시 신용평가에서 기존 금융회사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VII장에서는 빅테크 자금중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VIII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6 이 작업을 위해 저자들에게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 준 네이버파이낸셜의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린다.

II.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 및 자금중개 현황

1. 빅테크 자금중개의 정의

경제시스템에서 자금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란 자금공급자로부터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중개는 경제시스템에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자금중개를 하는 중요한 금융기관 중 하나는 은행이다. 우리나라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고유업무는 예금·대출 및 지급결제 업무이다.⁷⁾ 즉 은행은 자금잉여자(자금공급자)로부터 예금을 받아 자금수요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자금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은행 이외에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⁸⁾들도 예금·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금중개는 예금취급기관이 자금잉여자에게서 예금을 받아 이를 자금수요자에게 대출해 주는 직접 중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제시스템 내에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금수요자와 잉여자금이 있는 자금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자금중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신용카드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기관도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수요자들에게 대출해주는데 이것도 시장의 잉여자금을 수요자에게 연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중개라고 할 수 있다. 은행도 예금뿐 아니라 채권발행을 통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해

7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제2항 :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외국환

8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종합금융회사가 있다. 여기서 신용협동기구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상호금융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주기도 하는데 이것도 자금중개이다. 또 자금수요자인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이것도 시장의 잉여자금을 수요자인 기업에게 중개해 주는 것이므로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중개라고 할 수 있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빅테크(BigTech)가 광범위한 비즈니스 라인의 일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업에 진입하고 있다. 빅테크가 금융서비스의 하나로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빅테크도 자금수요자들에게 시장의 잉여자금을 연결해 주는 자금중개를 하게 된다. 빅테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금중개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를 구분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1〉 빅테크의 자금중개 형태별 구분

| | 비금융플랫폼 본체 | 금융자회사 | 단순중개(타금융회사와 제휴) |
|---------|-----------|-------|-----------------|
| 대출 | ① | ② | ③ |
| 예금 + 대출 | ④ | ⑤ | ⑥ |

빅테크가 대출을 해줄 때에는 비금융플랫폼인 빅테크 본체에서 직접 해주거나, 은행 등 금융자회사를 설립하여 해주거나 또는 타금융회사와 제휴를 맺어 자금수요자를 단순히 연결해 주고 대출은 제휴 금융회사에서 해주는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각 경우에 대출만 해줄 수도 있고, 또는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접목하면 〈표 II-1〉과 같이 6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 은행 등 예금수취기관이 아니면 예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④와 ⑥의 형태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고에서 빅테크의 자금중개라고 할 때는 〈표 II-1〉의 ①, ②, ③, ⑤의 경우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을 사용한다.

각 형태에 대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①은 비금융회사인 빅테크 본체에서 플랫폼 내 판매자나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대출해 주는 형태다. 이때 빅테크 본체는 예금수취기관이 아니므로 예금을 받을 수는 없으며 따라서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외부자금 또는 내부자금으로 대출해

줄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려면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데 비금융회사가 대출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 등의 라이선스를 받는 것은 어려워 이러한 방식의 대출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②는 예금을 받지 못하는 금융자회사를 설립하여 대출해 주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빅테크가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하여 대출해 주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자금조달은 외부자금이나 내부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반면에 ⑤는 빅테크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금수취기관을 자회사로 설립하여 대출해 주는 형태이다. 중국의 빅테크인 텐센트가 자회사인 위뱅크(WeBank)를 통해 대출업무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가 자회사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 경우에는 예금, 외부자금, 내부자금 모두를 자금조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은 빅테크가 타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어 자금수요자를 단순히 연결만 해주고 제휴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나가는 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캐피탈과 제휴하여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들을 위한 신용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대출은 미래에셋캐피탈에서 나가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빅테크가 금융서비스로 신용을 제공하며 자금중개를 해주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어느 경우이건 자금중개에서 빅테크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데이터와 AI, 머신러닝 등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빅테크의 자금중개라고 할 때는 이 모든 방식의 자금중개를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향후 빅테크 자금중개에 대한 정책방안을 수립할 때에는 각 자금중개 방식 별로 차별화된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9 과거 아마존의 대출 프로그램인 Amazon Lending의 경우 아마존이 Bank of America에서 직접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플랫폼 내 판매자들에게 대출해 주었다.

2. 현황

가.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

1) 글로벌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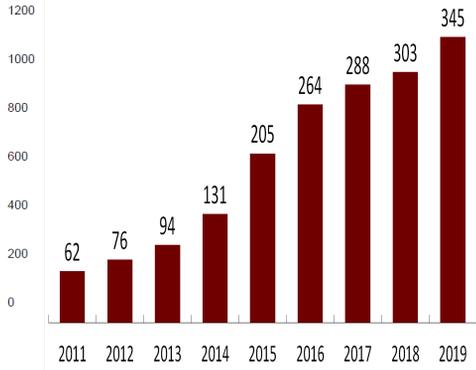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ICT 및 첨단지식산업의 급성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거래에 대한 수요 폭증 등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다. 빅데이터 처리·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모바일 거래가 확산되면서 금융산업의 구조 및 금융회사 경영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9년 5월 금융감독원 조사¹⁰⁾에 따르면 금융회사 108개 중 65.7%인 71개사가 디지털 전환을 활발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에 가속도가 붙고 있음은 분명하다. 더욱이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거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면거래에 의존하던 기존 금융거래 방식에 디지털 혁신의 파고(波高)가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fintech)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핀테크 기업의 수(數)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핀테크 기업체 수가 2013년 94개에서 2019년 345개로 늘어났다.

10 금융감독원은 은행 17개사, 카드 8개사, 보험 41개사, 증권 42개사를 대상으로 ①디지털 전환 전담조직, ②전문인력 확보 방안, ③디지털 전환 사업 추진 계획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금융감독원 2019).

〈그림 II-1〉 글로벌 핀테크 투자활동 현황 〈그림 II-2〉 국내 핀테크 기업 수 추이



자료 : KPMG(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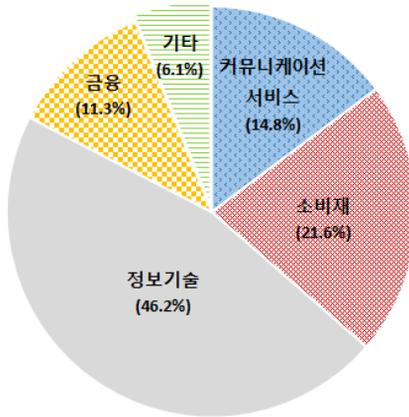
자료 : 금융위원회

핀테크를 넘어 대형 플랫폼 기업인 빅테크(big tech)도 금융서비스의 범위를 넓혀가며 금융업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정보·기술, 온라인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 등 비금융사업에서 형성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 “BATH(Baidu, Alibaba, Tencent, Hwawei)” 등 빅테크 기업들이 막강한 플랫폼 파워와 축적된 고객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기존 금융회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이병윤·서병호·권홍진 2020).

일반적으로 빅테크는 IT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자상거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영위하고 있다. 수많은 사용자들과 맺는 관계를 통해 방대한 사용자데이터를 습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데이터가 많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용자가 더 많아지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xternality)를 십분 활용하고 있다. 빅테크 중 일부는 지급결제, 자산관리, 보험 및 대출 중개 등 금융 관련 사업을 적극 확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핀테크가 주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영위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회사(대부분 단일 비즈니스 모델)라면, 빅테크는 금융서비스가 여러 업무들 중 하나인 회사라고 할 수 있다. S&P Capital IQ에 따르면 빅테크의 주요 사업은 정보·기술(IT)과 컨설팅(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분석)이 매출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서비스는 빅테크 매출의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이들의 핵심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빅테크의 금융서비스는 주로 기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볼 수 있다.

〈그림 II-3〉 빅테크의 업무별 매출 비중



주 : 1) 빅테크기업은 Alibaba, Alphabet, Amazon, Apple, Baidu, Facebook, Grab, Kakao, Mercado Libre, Rakuten, Samsung, Tencent를 포함
 2) S&P Capital IQ에서 제공한 2018년 총수익 기준(데이터 없을 경우 2017년)
 3) 정보 기술에는 일부 금융 관련 비즈니스 포함
 4) 기타는 의료, 부동산, 유틸리티 포함
 자료 : S&P Capital IQ, BIS (2019)

빅테크의 초기 금융서비스는 주로 지급서비스(payment)에 국한되었는데, 이는 빅테크의 전자상거래(e-commerce) 플랫폼에서 결제과정을 편리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빅테크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구매자는 상품의 빠른 수령을 원하고 판매자는 지급이 확실해진 이후에 배송하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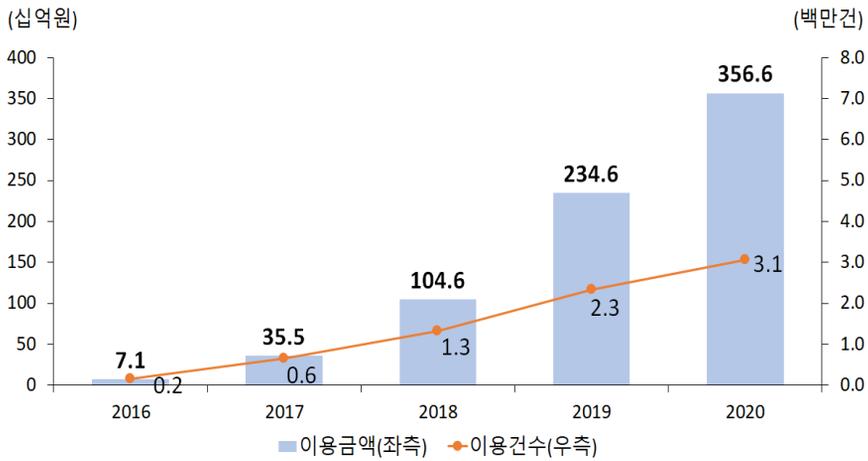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빅테크의 지급서비스가 배송시점의 결제리스크를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빅테크의 지급서비스가 신용카드 등 다른 전자지급수단의 대체 지급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빅테크가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독자적인 비즈니스로 구축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본업인 비(非)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부가된 측면이 짙다.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산업에 진출한 사례도 있다. 중국의 알리바바(Alibaba)는 자사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금융회사인 'Ant Financial'을 통해 결제서비스인 '알리페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아마존은 결제서비스인 '아마존페이(Amazon Pay)', 온라인 현금 결제 서비스인 '아마존캐시(Amazon Cash)'를 제공하고 있으며, 애플은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Apple Pay)'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애플카드(Apple Card)'를 출시하기도 하였다.

2) 국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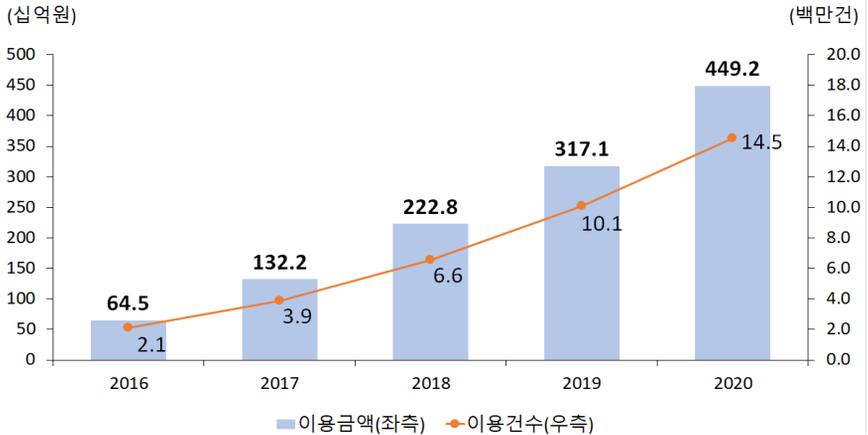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들이 간편송금·간편결제 서비스를 기초로 지급결제시장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간편송금은 보안카드 또는 OTP 없이 비밀번호, 지문 등 간편한 인증수단을 이용한 송금 서비스를 의미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에 일평균 국내 간편송금 이용건수 약 20만건, 이용금액 약 71억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말에는 각각 약 310만건, 약 3,566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금액 기준으로 연평균 약 166.2%의 성장률을 보인 셈이다. 간편결제는 신용카드나 선불충전금, 은행계좌 정보를 저장해 두고 간단한 과정을 거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한다. 2016년에 일평균 국내 간편결제 이용건수가 약 210만건, 이용금액 약 645억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말에는 각각 약 1,450만건, 약 4,492억원으로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하였다. 연평균으로는 약 62.4%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림 II-4〉 국내 간편송금 일평균 거래실적 추이



자료 : 한국은행 (2021)

〈그림 II-5〉 국내 간편결제 일평균 거래실적 추이



주 :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카드기반 간편결제에 한함(선불, 계좌이체 방식 등은 제외)

자료 : 한국은행 (2021)

〈표 II-2〉 국내 주요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제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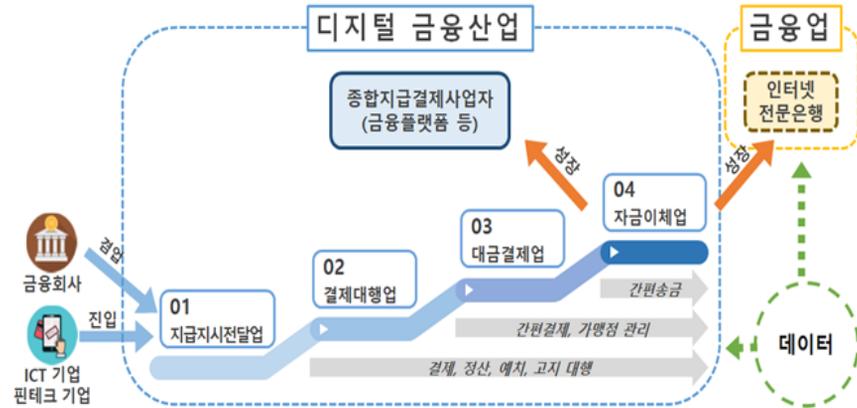
| | 네이버 | 카카오 |
|----------|---|---|
| 결제 송금 |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 송금 - 계좌연결/잔액충전, 온 · 오프라인 결제 |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 계좌연결/잔액충전, 온 · 오프라인 결제 (카카오뱅크) 송금서비스 - 22개국 전신료, 중개 · 수취수수료 면제 |
| 예금 대출 | (네이버파이낸셜) 신용대출('20.12) - 네이버페이 이용 업체 대상 - 미래에셋캐피탈 제휴 - 온라인 SME대상 대출서비스 예정, 우리은행 제휴('21.상반기) | (카카오뱅크) 예 · 적금 - 입출금통장, 정기예금, 자유적금 등 (카카오뱅크) 대출 -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 |
| 투자 | (네이버페이) 증권계좌 - 종합, CMA계좌 - 삼성증권 제휴 (네이버파이낸셜) CMA계좌 - CMA 통장개설 ('20.7) - 미래에셋대우 제휴 - 주식, 펀드, ELS 투자서비스 | (카카오뱅크) 증권계좌 -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제휴 카카오페이증권 설립('20.2) - 예금자보호 대상 증권계좌개설 - 펀드투자(미래에셋, 삼성, 키움자산 운용 제휴) - 국내 및 해외 주식매매를 위한 M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출시 예정('21) (카카오페이) 소액투자 - 펀드, 증권, P2P, 크라우드펀딩 등 - 피플펀드 등 제휴 - P2P구조화상품 판매 중단('20.7) |
| 보험 | (NF보험서비스)보험법인 등록('20.6) - '소상공인 의무보험' 교육서비스 제공, 현대해상 · DB 손해보험 제휴, '20.11) | (카카오페이)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인가 신청('21.1) - 인바이유(인슈어테크기업)인수('19.7) - 인바이유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12개 보험사 제휴) |
| 자회사 | 네이버파이낸셜 - 네이버의 네이버페이 사업부문 분사 - 네이버 90.5%, 미래에셋대우 9.5% | (카카오뱅크) 카카오 31.78%,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27.11% 등 (카카오페이) - 카카오 56.1%, 알리페이 43.9% (카카오페이증권) - 카카오페이 60%, 신한그룹 40% |

주 : 2021.2월 말 현재

자료 : 해당 기업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작성, 이보미 (2020a) 참고

한편 현재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¹¹⁾ 및 종합지급결제사업자¹²⁾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러한 사업을 빅테크가 영위할 경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¹³⁾ 동법 개정안에는 지급지시전달업 및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신설 이외에도, 전자금융업종의 기능별 통합 및 간소화, 최소자본금 인하, 그리고 스몰라이선스(small license) 도입을 통한 진입규제 합리화, 소액 후불결제·충전한도 상향 등도 포함되어 있다.¹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핀테크 및 빅테크의 금융업 진입은 보다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6〉 디지털 금융 분야 주요 사업자



자료 : 금융위원회 (2020b)

- 11 지급지시전달업이란 고객계좌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고객의 지급지시를 받아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 12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간편결제·송금 이외에도 모든 전자금융업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독자적으로 계좌(payment account)를 발급할 수도 있다.
- 13 금융위원회 (2020b) 참고
- 14 2020.11월 29일 윤관석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

특히 빅테크 기업은 시가총액에서 금융그룹을 압도하고 있어 향후 금융시장에서 본격 경쟁한다면 기존 경쟁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6월 1일 기준 세계 최대 빅테크 기업인 애플(Apple)은 시가총액이 2조 7,040억 달러로 세계 최대 금융그룹인 제이피모건(JP Morgan)의 5,020억 달러 대비 5.4배 더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제이피모건의 시가총액 5,020억 달러는 빅테크 기업 시가총액 7위인 알리바바(Alibaba)의 5,940억 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2021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Naver)는 시가총액이 510억 달러로 우리나라 최대 금융그룹인 KB금융의 180억 달러 대비 약 2.8배에 해당된다. 카카오는 시가총액이 470억 달러로 KB금융 대비 약 2.6배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표 II-3〉 빅테크 기업과 금융그룹의 시가총액 비교

(단위 : 십억달러)

| 빅테크 기업 | 시가총액 | 금융그룹 | 시가총액 |
|-----------|-------|-------------------------|------|
| Apple | 2,704 | JPMorgan | 502 |
| Microsoft | 1,863 | BOA | 367 |
| Amazon | 1,623 | ICBC | 273 |
| Google | 1,609 | China Construction Bank | 206 |
| Tencent | 770 | Wells Fargo | 195 |
| Facebook | 933 | HSBC | 128 |
| Alibaba | 594 | KB지주 | 18 |
| Baidu | 67 | 신한지주 | 16 |
| Naver | 51 | | |
| eBay | 41 | | |
| Kakao | 47 | | |

주 : 2021.6.1.일 기준(단, 국내 금융사 및 빅테크의 시가총액은 2021.11.1.일 기준으로 함)

자료 : Bloomberg, Companiesmarketcap.com

나. 빅테크의 자금중개 서비스 진출¹⁵⁾

1) 글로벌 동향

세계적으로 빅테크의 대출서비스는 주로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내부 자금이나 조달자금을 이용하여 직접 대출해주거나 외부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주요 대출대상은 빅테크 플랫폼 이용자들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입점업체, SNS 플랫폼 내 광고주 등이 있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도 존재한다. 빅테크가 금융자회사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통해 대출서비스를 하기도 한다.

남미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Mercado Libre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에서 거래 중소기업(seller)을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Mercado Libre는 2016년 아르헨티나에 대출기관(자회사)인 Mercado Credito를 출범시켰고, 2017년에는 브라질과 멕시코로 진출하였다. Mercado Libre의 자회사인 Mercado Credito는 Mercado Libre의 mPOS (mobile point of sale)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merchants)에 운전자금대출 (working capital loan)을 제공해오고 있는데 2018년에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2019년에는 멕시코로 해당 서비스를 확장하였다. Mercado Credito는 자금조달을 주로 현지 금융회사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근 Goldman Sachs는 Mercado Libre 그룹의 대출영업을 위해 2019년에 Mercado Credito에게 1.25억 달러(USD), 2020년에는 Mercado Pago에 7천만 달러(USD)의 자금을 대출 형태로 제공한 바 있다. Mercado Credito는 Mercado Pago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신용을 제공하고 있는데, 플랫폼 참여자들이 Mercado Pago를 주(主)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도록 고착화(lock-in)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라 보여진다.

15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핀테크기업은 자본금 부족 등으로 대출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핀테크 기업의 주요 비즈니스 분야는 1) 송금/결제, 2) 보안/인증, 3) 금융투자, 4) 인슈어테크, 5) 자산관리, 6) 클라우드펀딩/P2P, 7) 핀테크 SI, 8) 해외송금 등이다.

중국에서는 텐센트(Tencent)가 자회사인 인터넷전문은행 WeBank를 통해 자체 SNS 프로그램인 위챗(WeCha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해주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자회사로 두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하다. <표 II-5>는 자금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주요 빅테크 기업을 보여주고 있다.

빅테크가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이용된다. 아마존(Amazon)은 2020년 하반기부터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에 위탁하는 형태로 플랫폼 입점 업체 대상 대출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빅테크의 자회사가 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예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을 위한 자금은 내부자금이나 금융기관 차입, 채권발행 등에 의존하게 된다. 초창기 아마존은 자체 비금융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자금과 파트너십을 체결한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에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에게 소액대출(Amazon Lending)을 제공하였다.

한편, 빅테크나 핀테크 등 온라인과 플랫폼에 기반한 비전통적 대출기관의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없는 데, 캠브리지대 안금융센터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이하 'CCAF')에서 그나마 국제비교가 가능한 일부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동 센터에서는 전세계 빅테크와 핀테크 등에 대한 서베이를 통해 매년 대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표 II -4〉 글로벌 주요 빅테크의 자금증개 서비스

| Amazon | Facebook | ebay | Google | Mercado Libre | Alibaba | Baidu | Tencent | Rakuten | Grab |
|---|--|--|--|--|--|--|---|--|--|
| <p>Amazon Lend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판매자 등 신청하여 대출 - 만장 기입 대상 대출 서비스 <p>대출자원: - 2020년, Goldman Sachs와 제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대출 플랫폼 (Markus)이용 - 2016년 50A와 파트너십을 통해 시행한다 (secured revolving credit) 제공받았음. <p>대출금리: - 3%~16.9% APRs</p> <p>대출: - 100달러~ 750,000달러</p> <p>대출기간: - 3개월~ 12개월</p> | <p>Charge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cebook 광고주 대상 후발 서비스 - Clearbanc 제휴 | <p>PayPal Working Capital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기입 대출 - Webbank 제휴 - 02년인수, 15년 분사 - 90일 이상 PayPal Premier, Business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대상 <p>대출한도 - 기업기입의 경우, (business등금)~ 20,000달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mier등금) 총 결제 금액의 30%수준에서 최대 125,000달러 <p>대출금리: - 15%~30%</p> <p>Capital for ebay business selle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ay Management Payments를 사용하는 eBay 판매자를 대상 (3개월 이상, 월별 매출 \$500 이상인 사업자에 한함) <p>- 수에 따른 상환 5%~20% (일일 매출 기준의 고정비용)</p> <p>대출자원: - YouLend (온라인 대출기관)</p> | <p>Lending Club Progr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ners 대상 저금리 대출 - Lending Club 제휴 <p>대출상품을 노출하고 Lending Club으로 연결해주는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ogle 리셀러 파트너 대상 파이렛 프로그램 <p>대출한도: - 최대 60만 달러</p> <p>대출기간: - 최대 2년</p> | <p>Mercado Credi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 중소기업, 소매 기업 대출 - 중소기업 대출 - 골드만삭스에게 1억 2,500만 달러 조달 Mercado Credito의 멕시코 시업 자금지원 - Mercado Credito Brazil의 경우, IDB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경우, 사업부의 경우 Mercado Libre 내부자금 조달 - Mercado Libre/Pago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사업자 대상 <p>(Prisiamo en Cutes Files Now)</p> <p>대출한도: - 최대 4백만달러</p> <p>대출기간: - 최대 24개월</p> <p>(Dhero Plus)</p> <p>대출한도: - 최대 25만달러</p> | <p>Myban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은행 - 중소기업, 농업인, 내국자 구매 소비자 대상 대출 <p>(왕산디안, 网商款)</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기업 전용 대출 <p>(위반오, 供应链)</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플랫폼(타오바오, 티아오바오, 푼다차) 대상 대출상품 <p>- 2019년 기준 대출잔액 7백억 3천만 위안(약 12조원)</p> <p>대출금리: - 5%~18%</p> <p>JeBeE(Ant Cash No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대출 - Ant Group 지원조달인 것으로 보임 | <p>Bankin Ban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은행 - China Citic Bank과 합작 금융상품 판매 및 소매대출 <p>(Baidu Unmone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대출 - 대학생을 제외한 18~55세 이용자를 대상으로 United Bank 등 금융기관과 제휴조달인 것으로 파악 | <p>Webban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은행 - 소매대출, 오토론 (Weilida) - 온라인 소비자 소매대출상품 - QQ와 WeChat의 파트너십으로 출시됨 <p>(SME Loa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담보 중소기업대출 <p>대출한도: - 최대 300만위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문자 및 모바일 기를 결합 상품 <p>대출기간: - 최대 24개월</p> <p>대출금리: - 약 3.6%인 것으로 나타남</p> <p>Tencent Credit - 개인 중소기업 신용평가</p> | <p>Rakuten Ban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은행 - Rakuten Ichiba 기입장 대상 대출 <p>(부동산 담보대출)</p> <p>대출한도: - 1백만엔~ 1억엔 (10만엔 단위)</p> <p>대출기간: - 1년~25개월</p> <p>대출금리: - 0.62%~ 9.38 (21.0월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기준 고정금리 <p>(인바스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50세 이상의 소비자 대상 <p>대출한도: - 1백만엔~ 1억엔</p> <p>대출기간: - 중신</p> <p>대출금리: - 2.95%</p> <p>(학자금대출)</p> <p>대출한도: - 최대 100만엔</p> <p>대출기간: - 최대 6개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비, 자외회 - 학원대학, 최대 1천만엔 | <p>Grow with Gra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운송사금 소매대출 <p>Grab Finan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ab Merchant- on전자 대상 대출 - Grab Merchant 파트너 기업 대상 대출 - Grab Merchant 소상공인 대상 대출 <p>(Business Loan)</p> <p>대출한도: - 1만SGD~ 10만SGD</p> <p>대출기간: - 3개월~ 12개월</p> <p>대출금리: - 0.9%~3.5%</p> <p>(Merchant Cash Advance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ab Merchant- partner 대상의 대출서비스 <p>대출한도: - 최대 10만SGD</p> |

(표 II-6) 글로벌 주요 빅테크의 자금중개 서비스(계속)

| | Amazon | Facebook | Ebay | Google | Mercado Libre | Alibaba | Beidu | Tencent | Rekuten | Grab |
|----|---|---|--|---------------------------------------|---|---|--|---|---|---|
| 대출 | | | <p>대출금리: - 신청 시 결정된 고정이자율 (3%부터) 적용 규모: - \$500~ \$1,000,000 대출기간: - 최대 60개월</p> | | | <p>Zhima Credit - 개인·중소 기업 신용평가 - Zhima Credit 신용조회료 Ant Micro Loan에서 소액대출 가능</p> | | | <p>대출금리: - 고정금리 3.9% - 변동금리 3.25 (21.6월 기준) 대출기간: - 1년~14년</p> <p>Grab financial Services Asia - 인보카드사 Credit Season과 조인트벤처</p> | |
| 예금 | <p>(Amazon Cash) - 현금, 고인물 이머슨 기프트카드나 신용으로 전환하여 현금 예치</p> <p>(Amazon Seller Account) - 대금 이체업체 Hyperwallet와 제휴하여 셀러의 자부담회금 결제대금들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함. - Hyperwallet 의 예금계좌를 이용 (Amazon Seller -Central1 서비스)</p> | <p>Facebook Pay - PayPal과 연결하거나 Facebook Pay에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결제, 송금 등을 실행 가능 - 거래내역 추적 가능</p> | <p>Paypal 계정에 금융회사 계좌를 등록하여 사용</p> | <p>디지털예금계좌 - 페타은행, SFCU 등과 제휴</p> | <p>Mercado Pago - Mercado Libre의 자부담결제서비스 분야 제휴사 - digital wallet 기능 - 보통예금 계좌 서비스 포함 - Mercado Fondos라는 자산관리 서비스도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 은행 계좌 대비 높은 이자 지급</p> | <p>MyBank 에서 예금 계좌 서비스 제공</p> | <p>개인인 스킴업 중심의 일반 예금계좌 서비스 제공 - 중산층과 합리적인 direct banking 서비스 인에 예금기능을 포함</p> | <p>Webbank App을 통해 전자 예금 계좌 서비스 이용 가능</p> | <p>인보카드 (인보카) - Webbank App을 통해 전자 예금 계좌 서비스 이용 가능 (보통예금) - 예금 기한 없음 - 주요 은행의 20배에 해당하는 금리 적용 (정기예금) - 고정금리의 적용 - 최대 1년 만기 - 스포츠 장 예금 상품이 있음 (민간연장특약) - 최대 10년까지 연장(스텝업) - 최대 15년까지 연장(플렉) (환율특약) - 정기예금 계좌에 투자화환특약 기능 결합</p> | <p>GrabPay로 신용카드, GrabPay Wallet 송금, 결제, 송금, 은행계좌 연결 등 기능</p> |

자료 : 이보미(2020b) 참고 재구성

CCAF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전세계 핀테크와 빅테크의 총신용은 7,9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Cornelli et al. 2020). 빅테크 신용은 총 5,720억 달러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중국, 일본, 한국 및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및 남미의 일부 국가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핀테크 신용은 총 2,230억 달러 정도인데 중국의 규제 강화로 2018~19년 중 감소하였으나 중국 이외 국가에서는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핀테크 및 빅테크의 총신용은 2013년에 각각 99억 달러, 106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2019년에 핀테크 신용은 약 23배, 빅테크 신용은 약 54배나 증가한 모습을 보여 성장세가 매우 빠른 상황이다. 특히 2013년에는 핀테크와 빅테크 총신용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빅테크 신용이 핀테크 신용의 두 배 이상이 되어 빅테크의 신용공급이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 국내 동향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이 각종 금융서비스에 진출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예·적금, 대출, 펀드, 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12월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캐피탈과 제휴하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 대출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2021년 2월에는 우리은행과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우리은행 소상공인 대출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대출모집인 자격으로 대출 신청자를 모으고 우리은행에서 대출 여부를 심사해 대출하는 방식인데 대출심사 시 기존 금융정보 외에 네이버가 보유한 다양한 비금융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¹⁶⁾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은 기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으며 특히,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는 애로가

16 “네이버 온라인 사업자, 담보 없이 우리은행서 대출받는다”, 중앙일보, 2021. 2.24

더욱 컸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통상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네이버파이낸셜의 사업자 대출은 ‘금융소외계층을 공략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시’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또한, 제도권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사잇돌 중금리 대출(약 6.5%)이나 제2금융권 대출(15~24%)과 비교하여 낮은 금리(3.5~9.9%)로 자금을 제공받게 되었다.

대출 초기 성과를 기초로 대출자 분포를 살펴보면,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대출을 신청한 대출자 중에서 사업 운영기간이 36~60개월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승인 비중이 가장 높게(20.7%) 나타났다. 그러나 6~12개월 18.8%, 12~18개월 12.3%, 18~24개월 13.9%, 24~36개월 14.9%로, 사업자 업력간 대출승인 비중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⁷⁾ 자세한 내용은 제Ⅵ장 제2절에서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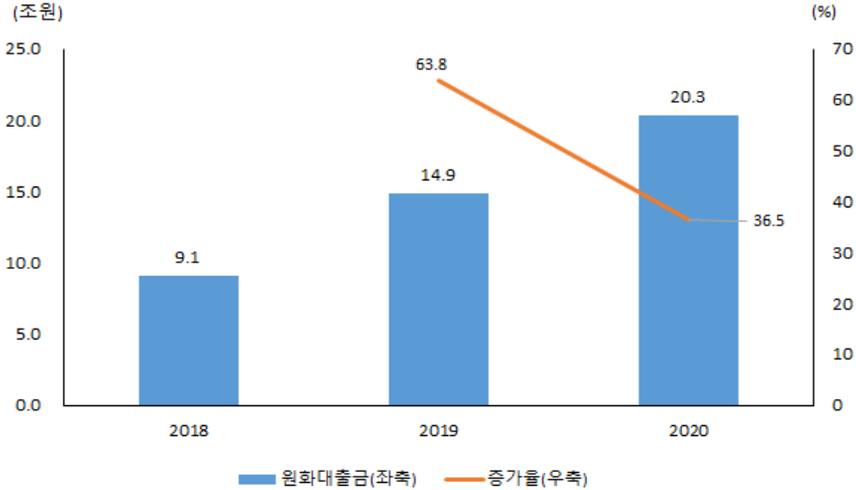
한편, 카카오는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간편결제·송금서비스를 제공하고 2016년 1월 카카오뱅크를 설립하여 예·적금, 대출, 증권계좌개설 등 다양한 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에 바로투자증권(카카오페이증권으로 사명 변경)을 인수하여 증권업에 뛰어들었으며,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보험업 인가도 진행 중이다.¹⁸⁾

2017년에 영업을 개시한 인터넷전문은행들(케이뱅크, 한국카카오뱅크)도 기존 금융권이 침투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카카오가 2017년 4월에 설립한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2018년말 9.1조원이었던 카카오뱅크의 원화대출금은 2년만인 2020년말에 20.3조원으로 123.1% 증가하였고, 2021년 하반기부터는 카카오페이가 가지고 있는 결제 및 고객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여 보다 업그레이드 된 중금리·중신용 상품을 선보이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17 매일경제(2021.4.5.) 기사 내용 참조

18 2021년 11월 현재 카카오페이는 자회사로 법인보험대리점(GA) KP보험서비스를 두고 있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디지털보험사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예비인가를 받은 상태임.

〈그림 II-7〉 카카오뱅크의 대출금 및 증가율 추이



주 : 카카오뱅크 2017년 7월 출범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러나 당초 빅테크 계열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¹⁹⁾ 혹은 중신용자²⁰⁾ 대출의 공급 기반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인터넷전문은행은 2020년말까지 약 2.5조원 정도의 신규 중금리대출을 공급하였으나 아직은 시중은행보다 중·저신용자(4등급 이하)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초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상향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²¹⁾

19 통상 연 4% 이상 10% 미만의 대출금리 구간을 의미한다.

20 개인 CB회사가 제공하는 10등급 체계에서 4~6등급 차주를 의미한다.

21 금융위원회 (2021) 참고

〈표 II-6〉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신규공급액

(단위 : 억원)

| 구 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누계 |
|------------|-------|-------|-------|--------|--------|--------|
| 은행권 전체(B) | 3,370 | 7,942 | 8,922 | 14,897 | 18,004 | 53,135 |
| 인터넷전문은행(A) | - | 1,371 | - | 10,440 | 13,516 | 25,327 |
| 카카오 | - | - | - | 9,768 | 13,516 | 23,283 |
| 케이 | - | 1,371 | - | 672 | - | 2,043 |
| 비중(A/B) | - | 17.3% | - | 70.1% | 75.1% | - |

자료 : 금융위원회 (2021)

3.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요인

빅테크는 금융업이 본업이 아닌데도 지급서비스부터 시작하여 대출, 보험, 자산운용 등으로 금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그 요인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으로부터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 예를 들면 인구 중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비중이 작은 지역 등에서 빅테크 신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기존에 금융회사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금융서비스 수요를 빅테크가 채워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남미의 빅테크 기업인 Mercado Libre의 2016년 서베이에 의하면 온라인 플랫폼 업자들 중 70%가 대출을 받아 자기 비즈니스에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이들 중 25%만 은행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Frost et al. 2019). 즉 기존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로부터의 대출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빅테크와 핀테크가 제공하는 기술에 기반한 금융서비스가 편하다고 느껴 수요가 늘어나는 요인도 있다. Bain & Company와 Research Now (2017)의 서베이에서 인도 응답자의 91%, 중국 응답자의 86%, 미국 응답자의 60%가 기술기업의 금융서비스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Frost et al. 2019).

둘째, 빅테크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들의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져 빅테크의 핵심 비즈니스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빅테크 기업은 금융서비스를 자신들의 기존 플랫폼에 통합시킴으로써 고객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들의 플랫폼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 핵심 비즈니스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 셋째, 빅테크가 비즈니스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빅테크 기업은 기존의 각종 비즈니스에 금융서비스를 추가하여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빅테크가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기존 비즈니스 및 금융서비스 양자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빅테크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 여기에서 고객의 지출, 대출, 상환, 저축 습관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데이터가 창출된다. 이는 빅테크의 다른 핵심 비즈니스를 위한 광고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빅테크는 이커머스, SNS, 검색 등 비금융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소비자에 대한 매우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이 금융서비스 시 차입자의 상환능력 평가, 신용평가 및 보험관련 위험평가 등에 활용되어 금융서비스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즉 빅테크의 금융서비스와 비금융 비즈니스에서 모은 데이터들이 양쪽 비즈니스에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빅테크의 금융서비스는 네트워크 외부성으로부터 혜택도 받고 이를 더 강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플랫폼의 한쪽(예를 들어 판매자)으로 참여하는데 따른 혜택이 다른 쪽 참여자(예를 들어 매입자) 숫자 증가에 영향을 받아 네트워크 상에 외부성이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내 사용자가 많아지면 사용자들이 더 많은 가치를 얻게 된다. 사용자가 많아지면 관련 데이터가 증가하고 이의 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면 더 많은 사용자가 몰리게 된다.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더 많은 데이터를 얻게 되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외부성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빅테크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해 여타 비즈니스들로부터 혜택도 받고 또 이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여섯째,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우월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빅테크는 AI, 머신러닝 같은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고 빅데이터도 확보하고 있어서 전통적인 금융회사에 비해 소비자들에 대한 데이터분석을 통한 정보비대칭성 축소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이를 활용할 경우 빅테크는 전통적인 금융회사에 비해 더 나은 신용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대출이나 보험 등에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어 더 높은 수익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일곱째, 금융산업 내 경쟁부족이다. 기존 금융회사들이 규제로 인해 시장경쟁에서 보호받는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회사가 초과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보여 빅테크가 시장에 진입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덟째, 규제 차이이다. 빅테크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나 건전성규제 등 현재의 금융규제가 빅테크에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는 빅테크의 비용감소 및 경쟁우위 요인이 될 수 있다.

Ⅲ. 국내 ICT기업의 금융업 진출 추진 사례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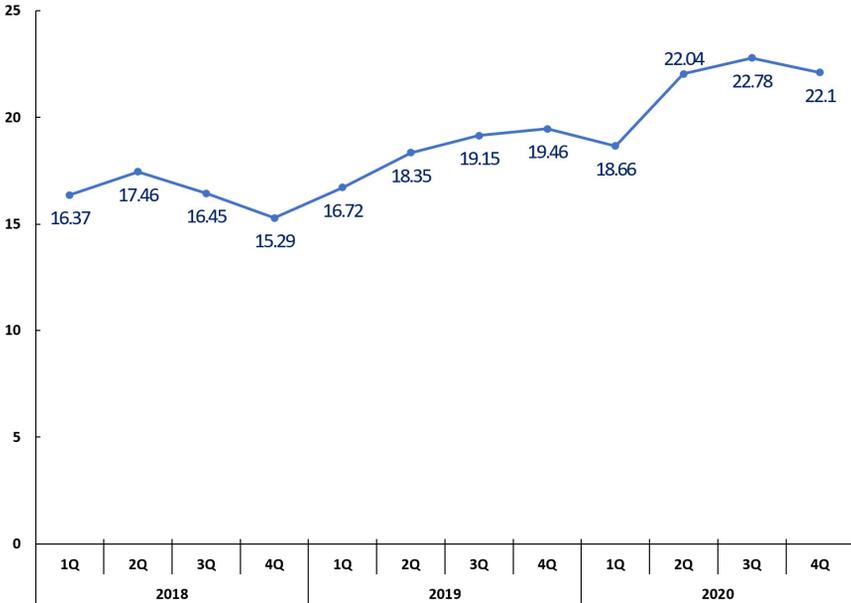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핀테크·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되고 있고 빅테크 및 ICT기업이 출자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ICT기업이 금융업(전자금융거래업 포함)을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의 숫자는 2013년 94개에서 2019년 345개로 늘어났고 인터넷전문은행은 2017년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2021년 10월에는 토스뱅크가 출범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도 ICT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일부 성공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진입이 쉽지 않았다. 이처럼 과거에는 쉽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ICT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해진 것은 IT기술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게 발전한 요인도 있지만 금융혁신에 대한 당국의 의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린 영향이 크다. 본 장에서는 국내 ICT기업의 금융업 진출 시도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요인들로 인해 최근 들어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1. ICT기업의 금융업 진출 초기 사례

ICT기업의 초기 금융업 진출 성공사례로 키움증권을 들 수 있다. 키움증권은 2000년에 온라인 증권사로 설립되어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해 왔으며, 현재 브로커리지(brokerage) 부문에서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그림 Ⅲ-1〉).

키움증권의 모회사는 다우기술(41.22% 지분 보유)이며, 현재 키움증권은 키움인베스트먼트, 키움저축은행, 키움YES저축은행, 키움자산운용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그림 Ⅲ-2〉). 모회사인 다우기술은 다우키움그룹의 중간지주회사에 해당되는데, 2020 회계년도 다우기술 연결영업이익의 약 87%가 키움증권에서 산출되고 있다. 키움증권 설립 당시 다우기술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을 주로 영위하였으며, 현재 사업구조는 〈표 Ⅲ-1〉과

〈그림 Ⅲ-1〉 키움증권 국내 브로커리지(brokerage) 시장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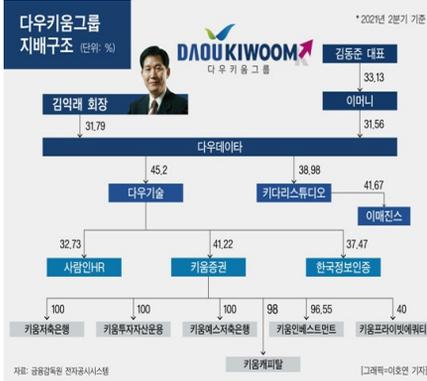
주 : 거래대금 기준

자료 : 이코노미리뷰(<https://www.skyedaily.com/index.html>)

같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Marketing Communication) 서비스로 문자메시징 서비스, 가상번호 서비스, 모바일 쿠폰 발행 등 기업-고객 간 소통 마케팅 툴(tool)²²을 제공하며, 에스크로 서비스, SNS 기반 주문 및 결제서비스, 쇼핑몰 통합관리 서비스 등 온라인 커머스 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 또한, 키움증권의 시스템 운영을 통해 축적한 기술 및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증권 거래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 시스템 통합, 아웃소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2 웹, 모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등 환경에서의 메시징 시스템 구축(문자메시지 서비스) 및 쿠폰 발행 시스템 구축(모바일 쿠폰), 가상번호 발급 및 모니터링, 번호·기간별 콜 통계자료 제공(가상번호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그림 Ⅲ-2〉 다우키움그룹 지배구조



자료 : <https://www.skyedaily.com/index.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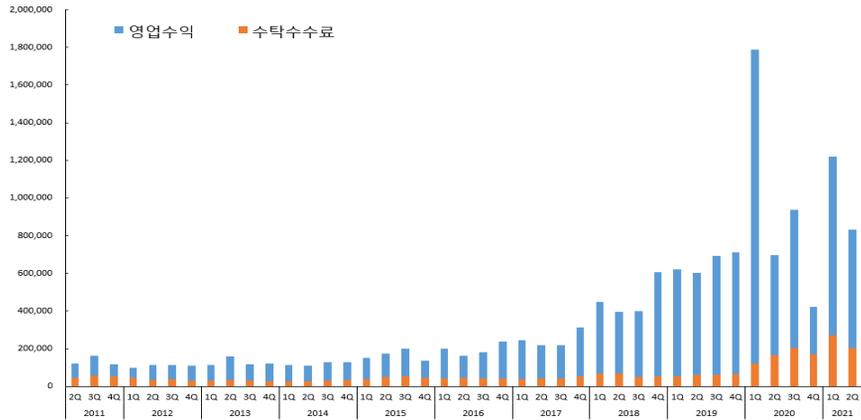
〈표 Ⅲ-1〉 다우기술 사업영역

| 영역 | 사업내용 |
|-------------------------|--|
| Marketing Communication | 온/오프라인 기업이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마케팅 툴 제공 |
| Commerce |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원스텝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
| Biz Infra | 다우기술 자체 개발 기업 인프라 및 업무용 서비스 제공 |
| Financial IT | 키움증권 시스템 운영 노하우 기반 국내외 BFSI(은행, 금융, 보험) 고객 대상 서비스 제공 |

자료 : 다우기술(<http://www.daou.co.kr/>)

그간 국내 금융투자업계는 증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위탁매매 중심²³⁾의 수익구조를 보여 왔는데, 키움증권 역시 위탁매매수수료가 주요 수익원을 구성하고 있다.

〈그림 Ⅲ-3〉 키움증권 영업수익 및 수탁수수료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3 2020년 국내 증권사 전체 수수료수익(13.6조원) 중 수탁수수료(7.0조원) 비중은 약 52%인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또한, 온라인 기반 위탁매매(무점포)를 통해 일반관리비를 최소화함으로써 낮은 매매수수료 책정이 가능했으며, 이는 곧 소액을 투자하는 개인고객의 대규모 유입 증대로 이어져 리테일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 활황 및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온라인 증권사인 키움증권의 성공요인에는 무엇보다도 공격적인 수수료 정책을 들 수 있겠으나, 이외에도 모기업의 IT 역량을 십분 활용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즉, 「영웅문」이라는 트레이딩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영웅문S」는 라이선스를 해외로 수출하며 상당한 수익을 확보하기도 했다. 다우기술과의 협업으로 플랫폼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키움증권은 기존 증권사와 비교하여 IT에 대한 투자 및 도입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모기업인 다우기술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한편 최근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 등 핀테크/빅테크 계열의 증권사가 ICT 모기업의 기술력과 간소화된 플랫폼을 무기로 소액 개인투자고객을 빠르게 유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ICT기업이 금융회사에 투자한 사례는 많다. 대표적으로 2010년 2월 SK텔레콤은 하나카드의 지분 49%를 인수하여 신용카드 사업에 뛰어 들었다(‘통신+금융’). SK텔레콤의 가입자 기반과 ICT 역량을 활용하여 신용카드 이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최적화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1년 11월 통신사 KT는 BC카드의 지분 33.85%를 추가 매수하여 최대주주(35.83%)로 등극했다. KT의 ICT 역량과 BC카드의 가맹점 네트워크 역량을 결합하여 모바일 기반 결제프로세스의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포부를 제시했다. 2020년 4월 BC카드는 모회사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구주)를 인수하고 케이뱅크 유상증자에도 참여(신주)하여 총 34%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기도 하였다.²⁴⁾

24 2021년 10월 현재 KT는 BC카드 지분의 69.54%를 보유하고 있는데, BC카드는 KT 그룹의 금융사업을 총괄하는 사실상의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만들고 2017년에 처음으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었다.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2018년 9월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면서 빅테크 및 ICT기업이 본격적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제도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논의와 시도는 이보다 훨씬 이전인 2001년과 2008년에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IT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실익이 크지 않았고, 법·제도 측면의 제약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무산된 경험이 있다.

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실패사례

2001년에는 SK텔레콤·롯데·코오롱 등 대기업과 안철수연구소·이네트퓨처시스템 같은 벤처기업 등 20여개 기업들이 공동 출자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인 가칭 브이뱅크(V-bank) 설립이 추진되었다. 100명 이하의 인력과 무점포 경영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이를 활용해 높은 금리를 제시하여 고객들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되었다. 자본금 1천억원 가운데 국내기업 20여개가 80~85%를 출자하고 나머지 15~20%는 독일 알리안츠나 프랑스 BNP파리바 등 유럽계 금융기관이 출자하도록 협의의 중이라는 내용도 발표되었다. 당시 은행법에 따라 국내 대주주는 4% 이하의 지분만 가질 수 있지만 합작은행일 경우에는 국내 대주주도 외국투자자 지분만큼 가질 수 있어 일부 대기업이 외국인 지분율만큼 출자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당시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인가기준이 없어 일반 시중은행으로 설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도는 수익모델 미비, 외국계 금융회사 자금 유치 실패, 정책당국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무산되었다. 특히 당시 가장 큰 걸림돌은 ‘동일인 지분한도 4% 규정’이었는데 이를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10% 이상 지분투자를 유치하여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외국계 자금 유치에 실패하면서 무산되었다.

2008년에는 정책당국인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은행법 개정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금융위는 2008년 6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하였다(금융위원회 2008). 여기에서 금융규제개혁의 기본방향 중 하나로 시장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자유로운 진입과 과감한 퇴출을 통해 금융시장 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방안의 하나로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을 통한 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하여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당시 제시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은 <표 Ⅲ-2>와 같다.

<표 Ⅲ-2> 2008년 금융위가 제시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 주요쟁점 | 내용 |
|---------------------------|--|
| 업무범위 설정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영업 자율성을 존중하되, 온라인·비대면 거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업무범위 설정 * (예시) 예대업무, 지급결제 서비스, 펀드 판매 등 |
|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특화은행 출현 유도 위해 외국에 비해 높은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 방안 검토 * (예시) 현행 1000억원 → 500억원 |
| 고객확보 상 어려움 해소 (금융실명제법 문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서 계좌개설 시 대면으로 실명확인 토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소방안 필요 - 은행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하여 실명확인, 업무협약을 체결한 타 금융회사가 실명확인 대행 등을 검토 중 |

자료 : 금융위원회 (2008)

2008년 10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조항이 포함된 은행법 개정안이 입법에 고되었다. 하지만 2010년 4월 국회 정무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모델이 취약하고 은행산업의 과당경쟁으로 은행들이 부실화할 우려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동 은행법 개정안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도입이 무산되었다. 국회 논의 이전에도 이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계좌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 확인을 통한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지점을 최소화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 장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면 확인을 위해 지점을 늘려야 한다면 굳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당시 허가당국인 금융위도 온라인 증권사나 기존은행의 인터넷뱅킹도 모두 금융실명법을 적용받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만 예외를 적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좌절된 중요한 이유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익모델이 취약한데다 은행산업의 과당경쟁을 불러와 은행들의 부실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당시만 해도 IT기술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따른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스마트폰이 없어²⁵⁾ 오늘날 인터넷전문은행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뱅킹이 불가능해 편의성이 떨어졌다. 또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IT기술이 발전하여 이를 통해 빅테크나 ICT기업 계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신용평가, 마케팅, 금융상품 개발 등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으나 2008년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다.

25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은 2007년 출시되었고 2009년에야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공사례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금융위가 내세운 설립 필요성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 제고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IT인프라를 활용하면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와 수수료 등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금융혁신을 통한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이다.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권의 보수적인 영업행태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혁신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미래 성장장동력의 창출이다.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부문 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회사와 ICT기업, 핀테크업체 등이 제휴하여 시너지효과를 내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신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 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시도되었던 지난 2001년이나 2008년에 비해 IT기술 자체가 크게 발전하여 이를 접목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치가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가능성도 높았다. 중요한 기술발전 중 하나는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모바일뱅킹이 가능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빅데이터와 AI 등 IT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이를 활용할 경우 정밀한 데이터분석을 통해 신용평가,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리스크관리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과거 설립을 시도했을 때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비대면 본인확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은산분리에 의해 산업자본인 최대주주는 의결권 있는 은행주식의 4% 이상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규제였다. 업무가 인터넷과 모바일로 주로 이루어지고 오프라인 지점도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계좌개설 시 비대면 본인확인이 허용되지 않으면 영업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 주로 ICT기업이 설립을 주도하

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 소유규제가 일반은행들과 동일하게 적용되면 설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대면 본인확인 불가라는 규제는 2015년 금융위가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방식에 비대면 확인방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길을 열어 주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히 해결된 셈인데 이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된데다 금융당국도 금융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해 걸림돌을 제거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017년 4월 케이뱅크, 7월 카카오뱅크가 설립되며 출범하기 시작했다.²⁶⁾ 그러나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4%까지로 제한한 기존 은행법 규정으로 인해 최대주주인 ICT기업들이 금융혁신 등의 역할을 하기 힘들었고 또 자본확충에도 어려움이 생겨 대출 중단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기도 어려웠고 은행법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결국 은행법을 개정하지 않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제정하여 정보통신기업에 한해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상한을 기존 4%에서 34%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동 법은 2018년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0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다. 시사점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은 2001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되었으나 금융실명법에 따른 대면 본인확인 제도 완화 불가 및 은산분리 완화 불가 등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2008년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26 당시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전자금융거래법을 활용했다. 즉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한 은행’을 의미하는 (은행업감독규정 제102조) 것으로 출발했다.

발생하여 수익모델이 불확실하고 경쟁강화로 은행 부실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처럼 과거 설립에 실패하였던 인터넷전문은행이 2017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걸림돌이 되었던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대면 본인확인 불가, 은산분리 등의 규제가 완화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완화된 것은 IT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따른 장점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커졌고 금융당국의 금융혁신에 대한 의지도 강했기 때문이다. 즉 스마트폰 보편화로 모바일뱅킹이 가능해져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커졌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IT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평가,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리스크관리 등에서 장점이 극대화되었다. 과거 2001년과 2008년 설립이 추진되었던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경우 지점과 인력 축소에 따른 비용절감 정도가 중요한 장점으로 제시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금융당국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통한 금융혁신으로 금융소비자 후생 증대 및 은행산업 경쟁강화를 도모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즉 경제·금융·IT기술 환경의 변화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장점이 커지고 금융당국의 금융혁신에 대한 의지가 커서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규제들이 자연스럽게 완화되면서 우리나라에 빅테크와 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IV. 금융기관 자금중개의 중요성 및 한계

1. 금융기관 자금중개의 의의

경제시스템에서 자금을 중개해주는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이 없으면 자금 부족자는 자금 잉여자를 직접 찾아 자금을 빌려야 한다. 이 경우 탐색비용 및 자금수요자에 대한 신용평가 비용이 너무 크고, 자금의 조건(규모, 만기 등)도 맞지 않을 수 있어 자금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사이에서 자금 이동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마찰요인들을 완화시켜 자금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금중개기관은 자금공급자로부터 잉여자금을 받아 풀(pool)을 만들어 다양한 규모와 만기 조건을 가진 자금수요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등 자산변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자금이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자금공급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자금수요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대표로 수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사후적으로 차입자에 대한 감시(monitoring)도 수행하여 대출 미상환 위험을 줄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즉 은행 등 자금중개기관은 자금공급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자금수요자의 신용위험을 사전적으로 평가하고 (delegated screening) 또 사후적으로 감시하여 (delegated monitoring) 정보비대칭성 (information asymmetry)을 줄이는 신용위험 중개 역할도 수행한다.

2. 금융기관 자금중개의 중요성

가. 경제성장 및 불평등 해소에 기여

은행 등 금융기관은 자금중개를 하기 전에 차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고 자금중개 이후에는 사후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자금중개기관의 신용평가를 통한 자금중개 기능은 상속 등을 통해 타고난 재원이 적은 경제주체들도 자신의 아이디어와 노력만 있으면 사업을 성공시켜 소득과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기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주로 직접금융인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간접금융인 대출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며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대출 의존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말 현재 전체 기업의 대출, 주식,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을 보면 대출이 94.7%로 압도적이며 회사채 4.7%, 주식 0.6%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대출 의존도는 77.0% 정도이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99.6%나 되어 중소기업들은 거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로 보면 대기업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자금조달에 있어 대출 의존도에 변동이 좀 있는 편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매년 자금조달의 99% 이상을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2019년 말 현재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전체의 85.5%, 사업체 수는 99.9%로 우리 경제의 고용 및 업체 수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종사자 수 비중은 지속적으로 85~86% 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고용에서 대기업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Ⅲ-3〉 기업의 규모별 자금조달 금액 및 비중 추이

(단위 : 조원,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기업전체 | 597 | 660 | 677 | 701 | 748 | 798 | 811 | 860 | 902 | 957 |
| 대출 | 541 (90.6) | 585 (88.7) | 618 (91.2) | 654 (93.3) | 706 (94.4) | 756 (94.7) | 776 (95.7) | 817 (95.0) | 857 (95.1) | 906 (94.7) |
| 주식 | 10.3 (1.7) | 12.9 (2.0) | 2.4 (0.3) | 5.2 (0.7) | 5.8 (0.8) | 8.0 (1.0) | 10.3 (1.3) | 10.4 (1.2) | 8.9 (1.0) | 5.3 (0.6) |
| 회사채 | 45.8 (7.7) | 61.8 (9.4) | 57.2 (8.4) | 41.6 (5.9) | 36.2 (4.8) | 34.2 (4.3) | 24.4 (3.0) | 32.3 (3.8) | 35.7 (4.0) | 45.3 (4.7) |
| (대기업) | 152 | 203 | 217 | 213 | 224 | 219 | 197 | 201 | 203 | 207 |
| 대출 | 100 (65.6) | 131 (64.4) | 158 (72.9) | 167 (78.4) | 183 (82.0) | 179 (81.9) | 166 (84.2) | 162 (80.4) | 161 (79.5) | 160 (77.0) |
| 주식 | 7.2 (4.7) | 11.1 (5.5) | 1.8 (0.8) | 4.4 (2.1) | 4.2 (1.9) | 5.7 (2.6) | 7.3 (3.7) | 7.7 (3.8) | 6.0 (2.9) | 2.5 (1.2) |
| 회사채 | 45.1 (29.7) | 61.1 (30.1) | 57.1 (26.3) | 41.5 (19.5) | 36.1 (16.2) | 33.9 (15.5) | 24.0 (12.1) | 31.7 (15.8) | 35.5 (17.5) | 45.1 (21.8) |
| (중소기업) | 445 | 457 | 460 | 488 | 524 | 579 | 613 | 659 | 699 | 750 |
| 대출 | 441 (99.2) | 455 (99.5) | 460 (99.9) | 487 (99.8) | 522 (99.7) | 577 (99.6) | 610 (99.4) | 655 (99.5) | 696 (99.6) | 747 (99.6) |
| 주식 | 3.1 (0.7) | 1.8 (0.4) | 0.6 (0.1) | 0.8 (0.2) | 1.6 (0.3) | 2.3 (0.4) | 3.0 (0.5) | 2.6 (0.4) | 2.9 (0.4) | 2.8 (0.4) |
| 회사채 | 0.6 (0.1) | 0.7 (0.2) | 0.1 (0.02) | 0.02 (0.005) | 0.02 (0.003) | 0.2 (0.04) | 0.4 (0.1) | 0.6 (0.1) | 0.1 (0.02) | 0.2 (0.03) |

주 : 1) 주식 및 회사채는 2010~2013년까지 금융채·ABS·은행채 제외이며, 2014년 이후부터는 금융채·ABS 제외

2) 대출은 국내은행 기준

3) ()는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및 보도자료

세계적으로 첨단지식기반 산업 위주의 4차 산업혁명이 득세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이어서 향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중요도가 매우 높고 세계적인 산업의 흐름에서도 중소기업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주로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은행 등 간접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증가는 우리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주 수익원

국내은행의 총자산 중 대출자산 비중은 대체로 60%대를 기록하고 있어 은행의 다양한 업무들 중 대출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Ⅲ-4〉 국내은행의 총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 추이

(단위 : 조원,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총자산 ¹⁾ | 1,835 | 1,967 | 2,033 | 2,109 | 2,291 | 2,456 | 2,628 | 2,743 | 2,941 | 3,174 | 3,472 |
| 총대출 ²⁾ | 1,108 | 1,197 | 1,217 | 1,270 | 1,394 | 1,494 | 1,568 | 1,633 | 1,736 | 1,847 | 2,044 |
| 총대출 비중 | 60.4 | 60.9 | 59.9 | 60.2 | 60.8 | 60.8 | 59.7 | 59.5 | 59.0 | 58.2 | 58.9 |

주 : 1) 은행+신탁계정

2) 원화대출+외화대출+내국수입유산스+지급보증대지급금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이에 따라 자금증가에 따른 이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자이익이 은행 이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은행의 경우 총 이익 대비 이자이익 비중이 매우 높은 편으로 2010년부터 보면 꾸준히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Ⅲ-5〉 국내은행의 총이익 대비 이자이익 비중 추이

(단위 : 조원,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총이익 | 45.2 | 47.7 | 42.6 | 38.9 | 38.4 | 37.4 | 39.1 | 44.6 | 46.0 | 47.3 | 48.5 |
| 이자이익 | 37.4 | 39.1 | 38.0 | 34.9 | 34.9 | 31.8 | 34.0 | 37.3 | 40.5 | 40.7 | 41.2 |
| 이자이익 비중 | 82.7 | 82.0 | 89.3 | 89.6 | 90.9 | 85.1 | 86.9 | 83.6 | 87.9 | 86.1 | 84.9 |

주 : 총이익=이자이익+비이자이익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즉 자금증개는 은행의 다양한 업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이며 이를 통해 은행은 다른 어떤 업무에서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3. 은행 등 금융기관 자금증개의 한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 거의 대부분의 자금조달을 주식, 채권보다는 대출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주로 은행대출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외부자금 조달의 약 70% 이상을 은행자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⁷⁾

〈표 Ⅲ-6〉 연도별 차입 외부자금의 조달비중(금액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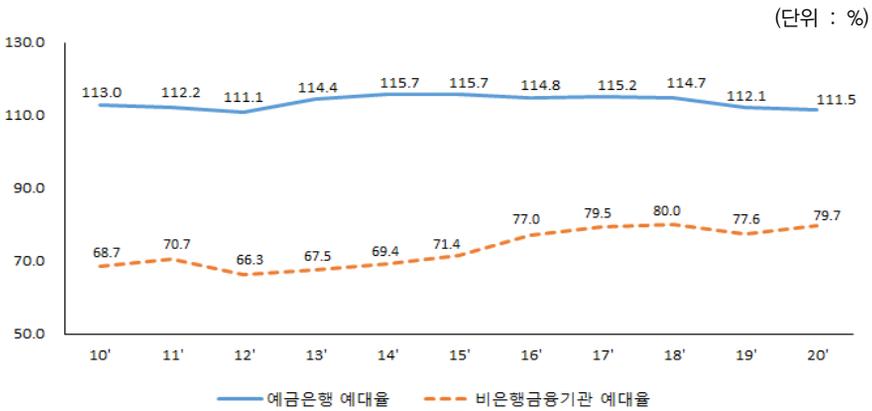
| 구분 | 은행자금 | 정책자금 | 회사채 | 비은행 금융기관 자금 | 주식 | 사채 |
|-------|------|------|-----|-------------|-----|-----|
| 2012년 | 80.3 | 14.2 | 1.3 | 0.7 | 3.4 | 0.1 |
| 2013년 | 78.4 | 14.9 | 2.5 | 0.0 | 2.2 | 0.2 |
| 2014년 | 69.2 | 29.9 | 0.3 | 0.1 | 0.5 | 0.0 |
| 2015년 | 79.0 | 15.1 | 0.9 | 0.0 | 3.3 | 1.0 |
| 2016년 | 81.1 | 10.6 | 7.5 | 0.0 | 0.5 | 0.2 |
| 2017년 | 72.6 | 23.4 | 1.4 | 0.8 | 0.8 | 1.1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각 년도

27 2017년 현재 중소기업 외부자금 조달 중 은행자금 의존도는 72.6%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서 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의존도가 낮은 것은 이들 기관이 신용평가 능력이 떨어져 대출을 많이 해주지 못하는 데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꾸준히 110% 이상을 기록하여 예금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비은행금융기관 예대율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80%가 되지 않아 예금은행 예대율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Ⅲ-4〉 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예대율 추이



주 : 비은행금융기관(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주로 은행대출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정작 중소기업들은 은행대출의 높은 금리와 한도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8년과 2019년 모두 높은 대출금리와 대출한도 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시장에서 대출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대출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표 Ⅲ-7〉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

(단위 : 개사, %)

| 구 분 | 사례수 | 높은 대출 금리 | 대출 한도 부족 |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 | 매출액등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 | 대출금 일부 상환 요구 | 부동산 담보 부족 | 연대 보증 요구 | 대출 연장 기피 | 기타 | 없음 | 예·적 금보험등 가입 요구 |
|------|-----|----------------|----------------|-----------------------|---------------------------|-----------------------|-----------------|----------------|----------------|-----|------|-------------------------|
| 2018 | 78 | 26.9 | 21.8 | 12.8 | 7.7 | - | 7.7 | 0 | 0 | 0 | 46.2 | 1.3 |
| 2019 | 177 | 28.2 | 17.5 | 16.9 | 16.4 | 11.9 | 11.3 | 6.2 | 4 | 0.6 | 33.9 | - |

주 : 중복응답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각 년도

이처럼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주로 은행에 의존하고 있지만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기본적인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지 못할 정도로 영세한 기업도 많으며 작성하더라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다. 신흥시장국이나 저개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대출심사에 요구되는 최소 서류요건을 잘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은 회계감사를 거친 금융서류나 형식요건을 갖춘 서류 등을 은행에 제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중 자산총액이 120억원이 넘어 회계법인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외감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많으며 이들 기업의 경우 정량화된 경성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재무제표와 같은 경성정보가 있다고 해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업력이 짧거나 첨단기술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재무제표나 경영지표 등 정량적 정보가 기업의 미래가치나 성공가능성 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첨단지식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등이 많이 출현한다. 이들에 대한 신용평가를 전통적인 신용실적이나 재무제표 등으로 수행하게 되면 새로운 산업의 발전과 이에 따른 기업의 미래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에는 경성정보뿐 아니라 연성정보²⁸⁾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 중소기업과 밀착한 관계금융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다수의 인력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된다. 또 최종 판단을 결국 사람인 대출심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데에서 나오는 오류도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중소기업들의 경우 부동산 등 담보가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 은행의 원화대출에서 담보대출 비중이 50%를 넘고 있어 담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미래가치가 높아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표 Ⅲ-8〉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대비 담보대출 비중 추이

(단위 : 조원,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원화대출 | 994 | 1,072 | 1,109 | 1,165 | 1,273 | 1,370 | 1,445 | 1,526 | 1,617 | 1,717 | 1,916 |
| 담보대출 | 491 | 566 | 589 | 618 | 675 | 730 | 777 | 828 | 877 | 940 | 1,005 |
| 담보대출 비중 | 49.4 | 52.8 | 53.1 | 53.1 | 53.0 | 53.2 | 53.8 | 54.2 | 54.2 | 54.8 | 52.4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4. 시사점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은 자금공급자로부터 여유 자금을 예금의 형태로 받고 또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자금수요자에게 대출해줌으로써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자금중개 시 신용평가를 통한 효율적 자금배분으로 경제성장 및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금중개업무가 이들 금융기관의 주 수입원이기도 하다.

28 경성정보(hard information)는 재무제표, 회계·세무 관련 정보 등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정량적인 정보를 말하며, 연성정보(soft information)는 수치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금융기관이 자금수요자와의 밀접한 관계 형성을 통해 알게 되는 정성적인 정보를 말한다.

이들 금융기관은 대출해줄 때 대출금리 산정 및 상환 가능성 평가를 위해 대출대상에 대한 신용평가를 한다. 신용평가 시 대출대상에 대한 계량화된 정보인 경성정보와 비계량정보인 연성정보를 모두 활용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규모가 작거나 업력이 짧은 중소기업들 또 첨단기술관련 업종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어 신용평가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자금을 주로 은행대출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신용평가의 한계 때문에 대출규모가 작고, 대출금리가 비싸다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은행대출이 어려우면 낮은 신용등급자들에 대출해주는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대체로 신용평가 능력이 더 떨어져 대출이 더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 금융기관들이 이처럼 대출대상에 대한 신용평가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신용평가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가 있을 경우 자금중개시장에 진입하여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역할을 최근 빅테크 계열 금융회사들이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빅테크에 축적되어 있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AI 등으로 분석하여 대출대상에 대해 보다 정밀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존 자금중개시장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등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빅테크 자금중개의 장·단점

1. 빅테크 자금중개의 장점

가. 신용평가 개선

1) 빅테크의 신용평가 방식 개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행의 신용평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정보불투명성이 높고 미래가치 판단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신용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경성정보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작성했다라도 신뢰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다. 첨단기술기업 등의 경우에는 미래가치가 높기 때문에 현재의 정보만으로 신용평가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연성정보의 경우에는 은행이 아무리 대출대상 기업과 밀착하여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도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비용도 많이 든다. 또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 및 분석결과에 근거한 판단에 대출심사자의 경험에 근거한 주관이 들어가게 되어 근본적으로 오류를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빅테크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차입자와 관련된 방대한 빅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또 이를 AI와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사람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은행보다 더 정확한 신용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빅테크는 은행과 같이 촘촘한 지점망을 통해 대출심사자가 자금수요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며 이를 통한 관계금융으로 기업에 대한 연성정보를 획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많은 가입자들이 활동하는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기업의 이커머스 활동, 고객들의 온라인 검색 및 SNS 활동 등으로부터 기업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빅데이터로 구축할 수 있다. 빅테크가 플랫폼에서 얻을 수 있는 상거래 관련 데이터는 판매규모와 평균판매

가격 등 거래관련 정보, 클레임비율, 배송까지 걸리는 시간, 고객의 사용후기 및 불만보고 등 평판정보, 판매의 계절성·트렌드·거시경제 민감도·산업의 미래전망 등 매우 방대하다. 이런 데이터들은 SNS, 검색 등 다른 채널 등을 통해 수집한 추가적인 데이터들로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대출 대상 기업에 대한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는 재무제표와 같이 수치화된 경성정보가 나타낼 수 없는 기업의 미래가치, 행동특성, 평판 등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빅테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집한 방대한 빅데이터를 AI와 머신러닝 등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하여 차입 기업에 대한 연성정보를 구축하게 된다. 이처럼 방대한 빅데이터를 경성정보와 함께 AI와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할 경우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는 전통 은행보다 더 나은 신용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또 이용자들의 플랫폼 사용 빈도가 늘어나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2) 자원배분 효율성과 금융포용성 증진

빅데이터를 AI와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하는 빅테크의 신용평가는 데이터가 확장되고 분석기법이 발달할수록 인간에 의한 신용평가 정확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빅테크의 정교한 신용평가는 자원배분 효율성 증진, 대출받는 기업의 수익성 증대, 부실 가능성 축소 및 금융안정성 향상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의 신용평가가 정교해지면 대출 적격 업체인데도 기존의 신용평가 방식으로는 대출받지 못하던 기업에 대출을 해줄 수 있고, 대출 부적격 업체인데 대출받던 기업에게는 대출해 주지 않을 수 있어 자원배분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대출 부적격 업체인데 신용평가의 오류로 대출해주게 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면 대출받는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부실 가능성이 축소됨에 따라 금융안정성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빅테크가 플랫폼 내에 쌓이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AI와 머신러닝 기법으로 적절한 신용평가를 수행할 경우 빅테크는 기존 은행에 비해 연성정보 획득에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대출이자에 반영할 수 있어 대출이자가 낮아지며 대출업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대출의 비용은 사전적인 신용위험평가와 사후적인 대출금 회수에 대한 집행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 사전적인 신용위험평가 시 연성정보 파악에 있어 비용이 많은 드는 관계금융을 활용해야 하는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에 비해 빅테크 계열 금융회사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빅테크는 자체 플랫폼의 경쟁력과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해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 발생하는 대출상환 강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은행은 일반적으로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로 담보를 잡아 차입자 파산 시 회수율을 높이려고 한다. 다른 방법은 차입자가 대출을 계약 당시 조건과 다르게 사용하는 데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차입자의 프로젝트를 시간과 자원을 들여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빅테크는 자체 플랫폼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기존 은행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대출상환을 강제할 수 있다. 먼저 빅테크는 차입자가 이커머스 플랫폼에 있을 경우 차입자의 매출에서 일부를 대출이자 등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빅테크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와 높은 이전비용²⁹⁾ 등을 고려할 때 차입자가 플랫폼에서 배제되는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이용하여 빅테크는 차입자가 대출상환에 불응하면 단순히 플랫폼에서 이용등급을 다운그레이드 시키거나 플랫폼 이용을 배제하는 옵션을 제시하여 상환을 강제할 수도 있다. 즉 전통적인 은행이 담보로 해결하던 정보 및 인센티브 문제를 빅테크는 플랫폼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해결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Stulz 2019).

이처럼 신용평가와 모니터링 모두에서 비용절감이 가능해짐으로써 빅테크는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비용문제로 서비스하기 어려웠던 차입자들에게 신용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도 생겨 금융포용성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29 기존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이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갈 때 발생하는 비용

나. 담보위주 대출 관행 개선

빅테크에 의한 대출은 기존 금융회사에 의한 자금증개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담보위주 대출 관행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빅테크는 네트워크 외부효과와 높은 플랫폼 이전 비용 등을 활용하여 자체 플랫폼 내에 있는 차입자에 대해 담보를 받지 않고도 대출상환을 강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해 신용대출을 확대할 수 있어 금융포용성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소규모 중소기업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기술력이 있어도 대출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빅테크가 담보 없이도 대출해줄 수 있게 되면 그간 기술력, 미래가치 등이 높아도 담보가 없어 대출받기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져 금융포용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4차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첨단지식기반기업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이들은 유형자산보다는 지식·특허 등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담보위주 대출로는 이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빅테크가 빅데이터로 신용평가 정확도를 높이고 담보여부가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출행태를 만들어 가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도 부응하는 대출행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첨단지식기반 기업들이 최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빅테크의 이러한 대출행태는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자금증개시장 경쟁 강화

기존에 영업하던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 이외에 빅테크 계열 금융회사가 자금증개시장에 진입할 경우 시장경쟁이 강화되어 대출이자율이 하락하고,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대출대상 기업 등 금융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빅테크 자금중개의 단점

가. 독과점화 가능성

빅테크는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플랫폼 이용에 따른 이익이 커지는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해 규모가 커질수록 경쟁력이 강화되어 시장지배력이 더욱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 플랫폼 이용자의 경우 플랫폼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플랫폼 내 다른 이용자들과의 관계 형성이 강화되어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비용이 커짐에 따라 이동이 쉽지 않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따라 빅테크 플랫폼은 이용자가 많아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빅테크가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배적 생태계를 만들어낼 경우 네트워크 외부효과와 플랫폼 이용자의 높은 타 플랫폼 전환비용 등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빅테크 플랫폼의 네트워크 외부효과와 높은 전환비용은 잠재적 진입자에게 매우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기존 빅테크 기업이 독과점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나. 반경쟁적 행위 가능성

빅테크는 자체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반경쟁적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자체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에는 혜택을 주고 기존 금융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 접근하는 것에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플랫폼 상에서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는 것을 활용하여 빅테크가 상품번들링 할인(여러 상품이 통합된 패키지 상품 구매 시 할인해주는 것) 등 반경쟁적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빅테크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가지게 되면 빅테크가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반경쟁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나타난다.

플랫폼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거의 비용 없이 모을 수 있는 빅테크가

이를 소비자에 대한 가격차별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빅테크는 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차입자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차입자의 신용도를 평가할 뿐 아니라 차입자가 대출을 위해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혹은 보험의 경우 고객이 보험가입을 위해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 등) 알아낼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가격차별화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차별화가 일어날 경우 소비자잉여의 많은 부분이 빅테크의 이익으로 전이되며 특정 소비자를 배제하거나 소수자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빅테크가 방대한 데이터로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될 경우 위험도가 높거나 수익기여도가 낮은 차입자를 아예 대출대상에서 배제해 버릴 수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빅테크는 풍부한 소비자 데이터와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을 결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선호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

다. 금융안정성 저해 가능성

대형 빅테크가 자금중개 서비스를 하며 시장에 진출할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먼저 빅테크와 기존 은행 간 과도한 경쟁이 일어날 경우 시장 전체적으로 위험 추구가 확대되면서 금융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즉 빅테크가 새로이 자금중개 시장에 진입하여 시장을 잠식해갈 경우 기존 금융기관들이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차입자 신용도에 비해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든가, 위험도가 높은 차입자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등 대출 증대를 위한 과도한 경쟁 행태를 보일 수 있다. 특히 국내은행은 이자수익이 전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대출시장이 잠식되면 수익기반의 대부분을 잃게 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은행들이 자금중개업에서의 수익 악화 만회를 위해 다른 업무에서도 위험 추구를 늘릴 가능성이 있어 전반적으로 금융산업 전체의 위험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빅테크의 주요 사업인 비금융업의 리스크가 금융업으로 전이될 위험도 있다. 빅테크의 주업무는 비금융업이며 여기서 발생한 리스크가 빅테크가 수행하는 금융업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특히 빅테크는 대형회사일 가능성이 큰데, 대형화된 빅테크의 경영실패나 운영위험 등이 발생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

VI. 사례 분석

1. 해외사례 : 남미 전자상거래업체 Mercado Libre³⁰⁾

가. 개요

Frost et al. (2019)은 남미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기업인 Mercado Libre가 자체 플랫폼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평가한 결과와 전통적인 크레딧부로 (credit bureau) 방식의 신용평가를 비교분석하여 전자의 방식이 더 정확한 신용평가를 이끌어냈음을 보였다. Mercado Libre는 남미 18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남미 전역에 수백만명의 이용자를 가지고 있다.

Mercado Libre는 자체 플랫폼에서 이커머스를 수행하는 판매자들에게 대출을 해주었는데 이들은 이미 크레딧부로 방식으로 평가된 신용평가 등급을 가지고 있었다. Mercado Libre는 이들에 대해 자체 플랫폼의 빅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신용평가를 수행(내부등급 방식)한 후 두 가지 신용평가 방식에 따른 위험도에 따라 이들을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크레딧부로 방식은 위험도를 Low, Medium, High 3개로 나누었고, 내부등급 방식은 위험도가 낮은 그룹부터 A, B, C, D, E 5개로 나누었다.

〈표 VI-1〉은 각 방식 신용평가의 위험 분류별 손해율 (loss rate)을 보여주고 있다. 손해율은 30일 이상 연체한 대출 비율이다. 예를 들어 표를 보면 크레딧부로 방식으로 분류했을 때 위험도가 낮은(Low) 것으로 분류된 그룹 중 내부등급 분류에서 위험도가 가장 낮은 A로 분류된 그룹의 손해율은 0.0%, B그룹 0.3%, C그룹 0.9%, D그룹 3.3%, E그룹 8.4% 등이다. 역으로 내부등급 방식 분류에서 B그룹으로 평가된 그룹 중 크레딧부로 방식에 따른 분류로

30 Frost et al. (2019)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Low 그룹의 손해율은 0.3%, Medium 그룹은 0.7%, High 그룹은 3.3%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1〉 Mercado Libre 차입자들의 내부등급 및 크레딧뷰로 등급별 손해율

| | | 내부등급 | | | | | 크레딧뷰로 등급별 손해율 | 차입자 비중 |
|-------------|--------|------|------|------|------|-------|------------------|--------|
| | | A | B | C | D | E | | |
| 크레딧뷰로 등급 | Low | 0.0% | 0.3% | 0.9% | 3.3% | 8.4% | 0.7% | 25% |
| | Medium | 0.5% | 0.7% | 0.7% | 2.3% | 10.2% | 1.0% | 45% |
| | High | 2.2% | 3.3% | 3.3% | 3.3% | 4.0% | 2.8% | 30% |
| 내부등급별 손해율 | | 0.7% | 1.2% | 1.9% | 2.8% | 7.7% | 1.4% | |
| 차입자 비중 | | 25% | 55% | 14% | 3% | 3% | | |

자료 : Frost et al. (2019)

나. 신용평가의 정확도 향상

크레딧뷰로 방식으로 Low, Medium, High로 분류된 집단 속에 있는 대출 기업들을 내부등급 방식 A, B, C, D, E로 분류했을 때 손해율을 보면 A에서 E로 갈수록 손해율이 단조적으로 (monotonic)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표에서 보면 크레딧뷰로 방식에 따라 Low로 분류된 집단 속에 있는 대출기업들을 내부등급 방식으로 재분류했을 때 손해율은 A에서 E로 가면서 0.0%, 0.3%, 0.9%, 3.3%, 8.4%로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손해율이 커지는 것이다. 이는 크레딧뷰로 방식의 모든 위험등급에서 성립한다.

그러나 반대로 내부등급 방식으로 A, B, C, D, E 로 분류된 집단 속에 있는 대출기업들을 크레딧뷰로 방식인 Low, Medium, High로 재분류했을 때 Low에서 High로 갈수록 손해율이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내부등급 방식에 따라 D로 분류된 집단 속에 있는 대출기업들을 크레딧뷰로 방식으로 재분류했을 때 손해율은 Low에서 High로 가면서

3.3%, 2.3%, 3.3%가 되어 위험도는 높아지는데 손해율은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즉 빅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신용평가를 수행한 내부 등급 방식이 대출자의 위험도를 더 잘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 차입자 포용성 향상

Mercado Libre는 크레딧부로 방식 분류에서는 고위험군(High)으로 분류되어 대출이 어려운 그룹의 판매자들에 대해서도 내부등급 방식 신용평가를 통해 일부 대출해줌으로써 금융포용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 보면 Mercado Libre의 차입자들 중 크레딧부로 분류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High 그룹의 비중이 30%나 된다. 전통적인 은행에서는 이러한 크레딧부로 방식의 위험분류에 더해 연성정보에 기반한 대출심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므로 이들 고위험군들은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등급 방식을 통해 Mercado Libre가 전통적인 분류에서는 고위험군에 속해있던 차입자들에게 대출해줌으로써 금융포용성을 더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국내사례 : 네이버파이낸셜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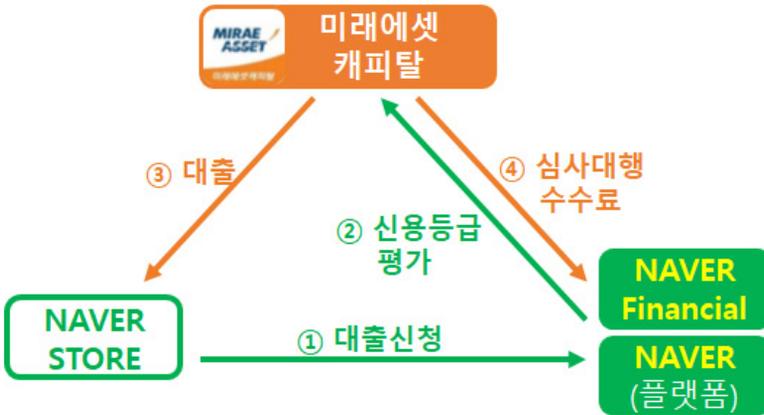
가. 개요

2020년 12월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과 제휴하여 네이버의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영업하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상품’을 출시하였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대출을 신청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들에 대해 대안신용평가(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 ACSS) 시스템으로 신용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31 저자들이 네이버파이낸셜에서 데이터를 직접 받아 작성하였다. 데이터를 제공해 주신 네이버파이낸셜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미래에셋캐피탈에 제공하면 미래에셋캐피탈에서 최종 승인하여 대출이 나가는 방식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이 금융회사 업무인 대출대상에 대한 신용평가를 대신해주는 방식인데 이는 네이버파이낸셜이 금융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의 일부 금융업무를 위탁받는 지정대리인³²⁾으로 지정되면서 가능해졌다.

〈그림 VI-1〉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대출 구조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은 기존의 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 CB)가 가진 금융 데이터에 네이버 플랫폼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판매자들의 판매현황, 매출흐름, 단골고객 비중, 고객 리뷰, 반품률 등 각종 비금융 데이터들을 결합하여 빅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AI,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 사업자 대출의 경우 사업자에 대한 가용 정보 부족 및 높은 폐업률 등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대부분 담보나 보증이 필요했다. 또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온라인 소상공인은 15~24%에 이르는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출이 담보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저금리의 신용대출로 이루어진 점은 고무적이라

32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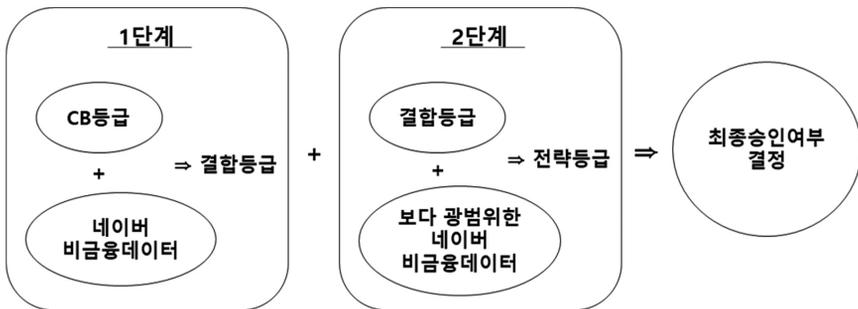
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빅테크 자금중개의 장점으로 거론되었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도 무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신용평가가 개선된³³⁾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빅테크인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한 빅데이터를 AI, 머신러닝으로 분석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이 기존 크레딧뷰로의 신용평가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했는지 알아보려면 앞선 해외사례에서와 같이 대출 손해율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이 이 대출상품을 내놓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아직 의미 있는 손해율 데이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빅테크의 대안신용평가 방식이 기존 신용평가에 비해 어느 정도 개선된 평가결과를 도출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나. 대안신용평가 절차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안신용평가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Ⅶ-2〉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안신용평가 프로세스



33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한 신용평가로 신용평가가 개선되어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대출자에게 대출해 줄 수 있다.

먼저 1단계에서는 대출신청자에 대해 CB 등급과 네이버의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한 등급인 내부등급을 결합하여 결합등급을 산출한다. 이후 이 결합등급에 네이버의 보다 광범위한 비금융데이터만으로 이루어진 평가에 따른 등급인 전략등급을 합산하여 최종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내부등급이나 전략등급 모두 네이버의 비금융데이터만으로 이루어진 평가에 따른 등급이지만 전략등급 결정 시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대안신용평가의 효과

(기초 통계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상품’의 대출신청자 자격요건은 3개월 연속 매출 50만원 이상인 판매자이다. 본고에서는 이 대출상품이 출시된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7일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 기간 중 총 대출금액은 887억 1,400만원이었다. 대출을 받은 사업자들은 개인사업자와 간이사업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총 대출금 중 개인사업자에 556억 8,400만원, 간이사업자에 330억 3,000만원이 대출되었다. 대출 평균금액은 개인사업자가 2,700만원, 간이사업자가 2,200만원으로 개인사업자가 조금 더 컸다. 대출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모두 5,000만원과 300만원이었다.

〈표 VI-2〉 사업자 구분별 대출 관련 통계

(단위 : 백만원)

| | 총금액 | 평균금액 | 최고금액 | 최저금액 |
|-------|--------|------|------|------|
| 개인사업자 | 55,684 | 27 | 50 | 3 |
| 간이사업자 | 33,030 | 22 | 50 | 3 |
| 합계 | 88,714 | - | - | - |

자료 : 네이버파이낸셜

대출 받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을 과거 3개월 간 월평균 거래금액대별로 분류하여 대출금액 관련 통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총 대출금액을 보면 월평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금액을 가진 판매자들에게 대출된 금액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은 1,000만~2,000만원, 그 다음은 500만~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즉 대체로 월평균 거래금액이 큰 판매자들에게 많은 대출이 나간 것이다. 매출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월평균 거래금액 100만~200만원인 판매자들에게 나간 대출금액이 300만~500만원인 판매자들에게 나간 대출금액보다 많았다. 평균 대출금액은 전자의 판매자들이 후자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나, 전자의 판매자들 중 대출받은 판매자 숫자가 상당히 많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총 대출금액이 가장 작은 구간은 월평균 거래금액 0~100만원인 판매자들이었다. 대출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모든 구간에서 각각 5,000만원과 300만원이었다.

〈표 VI-3〉 스마트스토어 과거 3개월 월평균 거래금액대별 대출 관련 통계

(단위 : 백만원)

| | 총금액 | 평균금액 | 최고금액 | 최저금액 |
|----------------|--------|------|------|------|
| 0~100만원 | 4,064 | 17 | 50 | 3 |
| 100만~200만원 | 10,929 | 19 | 50 | 3 |
| 200만~300만원 | 7,721 | 21 | 50 | 3 |
| 300만~500만원 | 10,178 | 21 | 50 | 3 |
| 500만~1,000만원 | 15,715 | 25 | 50 | 3 |
| 1,000만~2,000만원 | 18,839 | 30 | 50 | 3 |
| 2,000만원 초과 | 21,268 | 34 | 50 | 3 |
| 합계 | 88,714 | - | - | - |

주 : x~y만원은 x만원 초과, y만원 이하를 나타냄.

자료 : 네이버파이낸셜

총 대출금액과는 달리 평균 대출금액은 월평균 거래금액이 클수록 더 커졌다. 3개월 월평균 거래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판매자들에 대한 평균 대출금액이 3,4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월평균 거래금액이 줄어들수록 평균

대출금액도 점차 줄어들다가 0~100만원인 판매자들의 경우 평균 대출금액이 1,700만원 정도로 줄어들었다.

대출 받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을 업력별로 분류하여 대출금액 관련 통계를 살펴보았다. 총 대출이 가장 많이 나간 구간은 업력 36~60개월 판매자들이었고 가장 적게 나간 구간은 업력 6개월 이하 판매자들이었다. 평균 대출금액은 업력 60개월 초과 판매자들이 2,8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업력 6개월 이하 및 12개월 이하 판매자들이 2,200만원으로 가장 작았으며 대체로 업력이 길수록 평균 대출금액이 큰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대출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모든 구간에서 각각 5,000만원과 300만원이었다.

〈표 VI-4〉 스마트스토어 업력별 대출 관련 통계

(단위 : 백만원)

| | 총금액 | 평균금액 | 최고금액 | 최저금액 |
|---------|--------|------|------|------|
| ~6개월 | 4,892 | 22 | 50 | 3 |
| 6~12개월 | 12,521 | 22 | 50 | 3 |
| 12~18개월 | 11,975 | 24 | 50 | 3 |
| 18~24개월 | 11,992 | 25 | 50 | 3 |
| 24~36개월 | 15,930 | 26 | 50 | 3 |
| 36~60개월 | 20,084 | 27 | 50 | 3 |
| 60개월 초과 | 11,320 | 28 | 50 | 3 |
| 합계 | 88,714 | - | - | - |

주 : x~y개월은 x개월 초과, y개월 이하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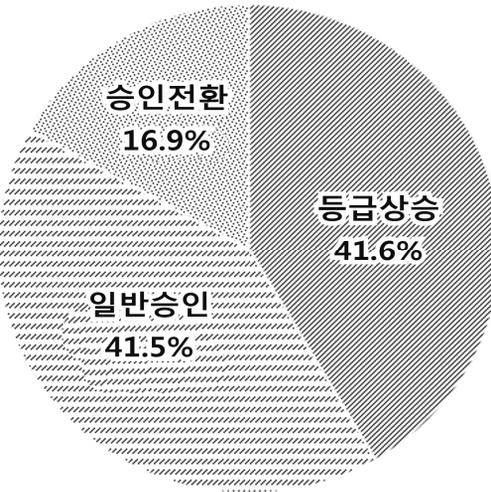
자료 : 네이버파이낸셜

(신용평가에서 비금융데이터의 효과)

앞에서 언급한 대안신용평가 절차에 따라 최종 대출승인이 난 사례들을 신용평가 2단계인 전략등급의 효과에 따라 분류해 보았다. 먼저 1단계 결합등급의 결과가 2단계 전략등급 합산 시에도 변하지 않아 그대로 최종 승인이

난 경우(일반승인)가 41.5%였다. 반면, 1단계 결합등급에서는 미승인이었으나 2단계 전략등급을 합산했을 때 승인으로 최종결과가 바뀐 경우(승인전환)가 16.9%, 1단계 결합등급에서보다 2단계 전략등급을 합산했을 때 승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등급이 올라간 경우(등급상승)가 41.6%였다. 2단계 전략등급은 비금융데이터만 활용한 평가인데 이것이 1단계 평가결과를 뒤집거나(승인전환), 동 결과의 등급을 상승시킨(등급상승) 경우들이 많아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가 상당한 효과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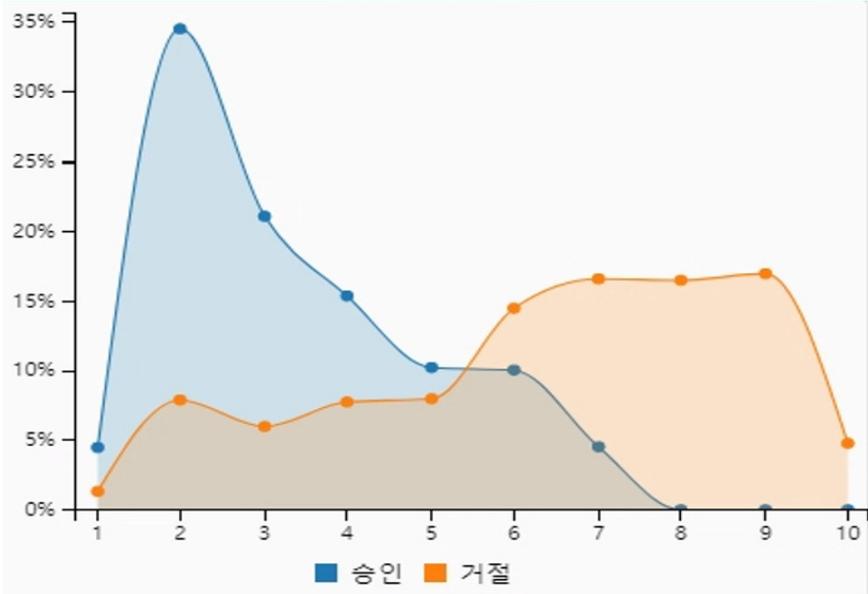
〈그림 VI-3〉 비금융데이터만 활용한 전략등급의 효과



자료 : 네이버파이낸셜

〈그림 VI-4〉에서 가로축 신용등급은 CB등급과 내부등급을 합친 결합등급을 표시하며 그래프는 여기에 전략등급을 더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심사결과의 분포를 보여준다. 이를 보면 대체로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는 6등급, 7등급 대출신청자도 일부 대출을 받고 있으며 1, 2, 3등급에서도 승인거절자가 나오는 등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한 전략등급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VI-4〉 비금융데이터 활용 최종심사결과의 등급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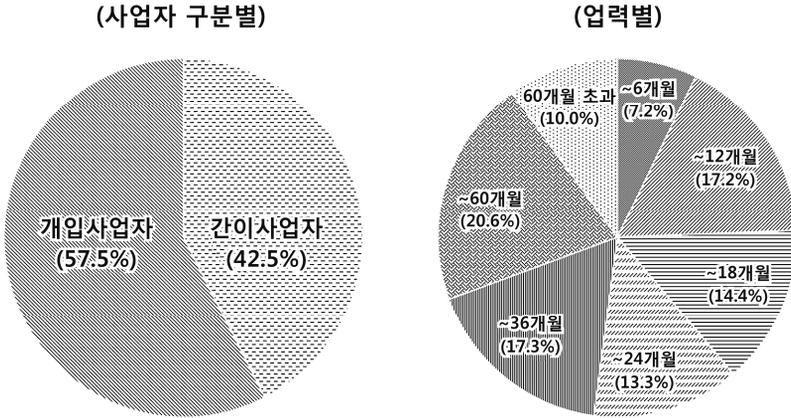
주 : 가로축은 CB등급과 내부등급을 합친 결합등급으로 평가한 신용등급이다.

자료 : 네이버파이낸셜

(대출 포용성 증가)

전체 대출 건수 중 42.5%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에 대한 대출이다. 간이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38.8%가 업력 18개월 미만의 초기 사업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 18개월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신청 시 증빙 가능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 매출에 따른 소득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하게 되므로 대체로 창업 후 최소 1년 6개월(18개월)이 지나야 대출신청을 위한 서류 구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빅테크 플랫폼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판매자들의 경우 실시간으로 매출정보 확인이 가능하여 업력이 짧은 업체도 대출신청 및 승인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5〉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의 사업자 특성별 분류



자료 : 네이버파이낸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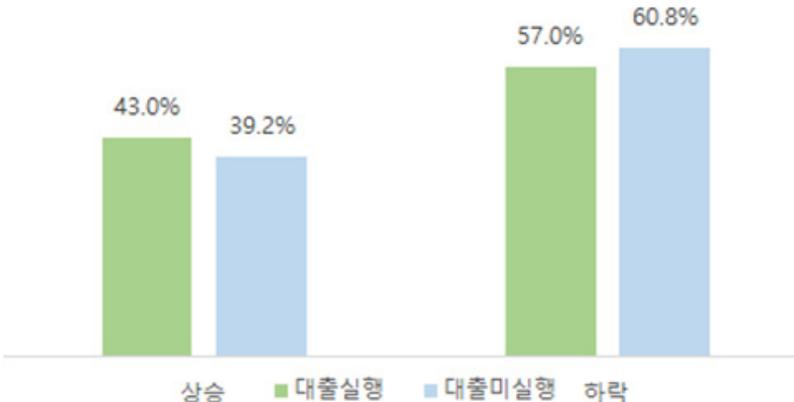
한편, 대출신청자 중 금융정보가 없는 Thin-filer가 2.7%였는데 이 중 약 51%가 대출을 받았으며, 금융 이용 경력이 매우 짧은 20대 사업자들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금융회사들의 경우 이러한 특징을 가진 대출신청자들은 대출을 거의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빅테크가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CB 데이터에 자체 플랫폼에서 가져온 각종 비금융데이터를 결합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AI기법으로 분석하는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신용평가를 하여 기존에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에게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이 실제로 우수한 신용평가 결과를 보여줬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향후 손해율 데이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손해율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에 의해서는 대출받기 어려웠던 대출대상들에 대해 신용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나 대출 포용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대출자의 영업실적 증가)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대출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비해 대출 이후 더 좋은 영업실적을 보여준다면 금융회사가 대출대상에 대한 선별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 그림은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대출을 받은 그룹과 대출 미실행자 그룹 간 대출실행 전·후 매출을 비교한 것이다. 대출실행 월(이 그림에서는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과 실행 후 3개월 간 평균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이 상승한 판매자와 하락한 판매자 비중을 구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대출실행자들 중 43.0%가 매출이 올랐으나 대출미실행자들 중 매출이 증가한 비율은 39.2%에 그쳤다. 매출이 감소한 판매자 비율은 대출실행자들 중 57.0%였으나 대출 미실행자들 중 비율은 60.8%에 달했다.

즉 대출을 받은 판매자들 중 매출이 늘어난 비율이 대출 미실행자들에 비해 더 높았고 매출이 줄어든 비율은 더 낮았다.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대출해 준 그룹이 대출 미실행 그룹에 비해 영업을 더 잘했다는 것으로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대상을 어느 정도 잘 선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VI-6〉 대출실행자와 대출미실행자 간 대출 이후 매출액 변동 비중 비교



주 : 대출실행 월(이 그림에서는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과 실행 후 3개월 간 평균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이 상승한 판매자와 하락한 판매자 비중을 구한 것이다.

자료 : 네이버파이낸셜

3. 시사점

해외사례에서나 국내사례에서나 빅테크가 자체 플랫폼에서 영업하는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에서 AI, 머신러닝으로 분석하여 수행한 신용평가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Mercado Libre의 데이터를 분석한 해외사례에서는 빅테크의 내부 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등급이 CB등급에 비해 손해를 더 잘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사례를 분석한 국내사례의 경우에는 아직 손해를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 엄밀한 평가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대체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내부 신용평가가 CB에 의한 신용평가에 비해 더 나은 선별력을 보여주었으며 금융포용성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ercado Libre와 네이버파이낸셜 사례의 경우 모두 자체 플랫폼에서 이커머스 활동을 하고 있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에 국한한 신용평가라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플랫폼의 빅데이터가 신용평가에서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용평가 대상이 자체 플랫폼 내 판매자가 아닐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빅테크의 형태에 따라 결과의 품질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산업에 직접 진출하고 있는 빅테크의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우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직접진출형의 예로서 금융업 인가를 받아 대출영업을 하는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를 들 수 있는데, 이들 은행은 기존 은행들이 접근 가능한 크레딧뷰로(CB) 정보에 더하여 지분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기업이나 관계회사로부터 유용한 비금융 정보를 수월하게 입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고객의 동의(explicit consent)를 전제로 한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부터 자체 신용평가모델(CSS)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관계회사로부터의 비금융정보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케이뱅크는 관계회사인 KT로부터 통신비 납부정보를 이미 활용하고 있고, 2021년 중 모회사인 BC카드의 데이터를 CSS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제휴를 통해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간접진출형은 일반적인 신용평가

에서 은행 대비 정보우위를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은 네이버파이낸셜 등 대형 전자금융거래업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CB 정보에 더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어 자체 플랫폼에서 형성되는 상거래 정보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축적되는 금융거래정보가 기존 은행 대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점은 다소 미흡하리라 판단된다. 빅테크의 정보우위 여부는 빅테크가 은행 대비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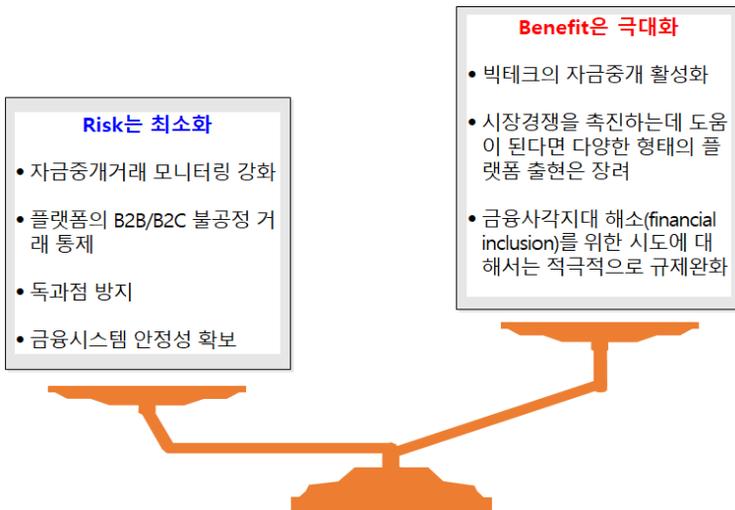
VII. 정책과제

1. 기본방향

빅테크의 자금중개가 확대되고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함에 따라 정책당국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빅테크가 기존 금융권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에 접근하는 경우 즉,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자금중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빅테크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온라인 소상공인과 쉐어파일러(thin filer)에게 자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금융권이 보유하지 못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이며 금융포용의 좋은 사례라 평가된다. 이처럼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면 빅테크의 자금중개를 차단할 명분은 약할 것이다.

〈그림 VII-1〉 빅테크 자금중개기능에 대한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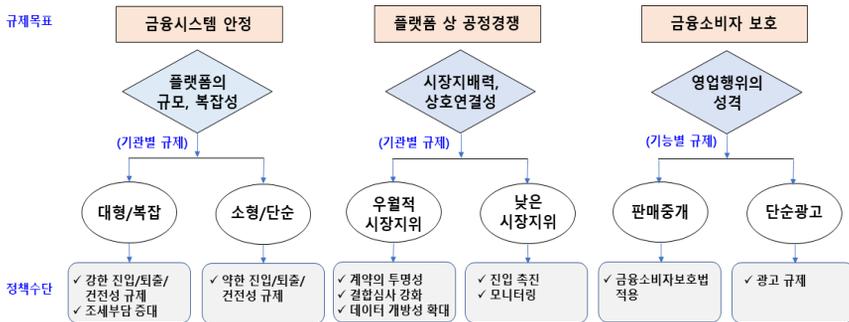
둘째,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확대될 경우, 비금융사업에서 촉발된 리스크가 금융사업의 파급될 리스크, 시장지배력 확대에 따른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빅테크의 자금중개 규모가 확대되면 빅테크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금융이 빅테크의 주력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확대될수록 금융의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금융사업에서 촉발된 리스크가 금융사업으로 파급되는 금융-비금융회사 간 위험전이(risk transfer)가 발생할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다.

아울러, 시장지배력 증대로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커질 수 있다. 예컨대, 빅테크는 플랫폼 지배력을 앞세워 가입자 유치와 이를 통한 수수료 수익을 확보하는 반면 판매에 대한 책임은 금융회사에 전가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증대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이 불투명한 금융상품 추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상품의 특징이나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가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판매채널이 점차 빅테크로 쏠리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플랫폼 독점으로 금융상품 광고 및 나열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되거나 특정 금융사 상품 위주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경우 사실상 시장지위의 남용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비용으로 귀착될 것이다.

셋째, 정책당국은 일률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규제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곳에 목적 적합한(relevant) 규제를 제시해야 한다. 즉,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해 ‘전자금융거래업자가 아닌 금융회사를 반드시 설립해서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든지, ‘강력한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든지, 혹은 반대로 ‘혁신을 위해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든지 하는 식의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곳에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즉,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규모나 사업의 복잡성, 시장지배력, 영업활동의 성격 등에 따라 정책조합(policy mix)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VIII-2>와 같을 것이다. 만약 빅테크의 자금중개 규모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정도이고, 상품구조가 단순하다면 규제당국은 전향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포용 증대에 도움이 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반대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그에 상응하는 강한 진입 규제와 건전성 규제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VII-2〉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 접근방식



2. 빅테크 자금중개의 활성화

빅테크의 자금중개 시장 진출은 동 시장 경쟁을 강화하고 신용평가 정확도 향상을 통해 자원배분 효율성 및 금융포용성도 개선할 수 있어 대체로 이득이 크다. 또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물결로 정보불투명성이 높은 첨단지식기반 산업 위주로 주력산업이 재편되고 있고, 역시 정보불투명성이 높은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이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어 빅테크에 의한 신용평가 정확도 향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정책적으로 기존 금융기관이 접근하지 못한 시장에서 빅테크의 자금중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철저한 금융감독 하에서 자금중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빅테크의 금융 자회사 설립, 기존 금융회사와의 제휴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금융당국이 기존 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빅테크 혹은 ICT기업의 금융자회사 설립은 2017년부터

벌써 세 개의 인터넷 전문은행³⁴⁾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설립되어 금융당국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초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 금융회사와의 제휴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제도개선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대출 신용평가 업무 위탁 제도 개선)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캐피탈과 제휴를 맺어 대출 신용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회사가 고유업무로 판단되는 대출 신용평가 업무를 핀테크나 빅테크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의 일환인 지정대리인 제도에 따른 것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2020년 6월 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미래에셋캐피탈을 협업금융회사로 하여 개인·소상공인에 대한 대안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로 임시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안신용평가도 2년 기한으로 운영되고 있다. 빅테크의 자금중개 활성화 차원에서 빅테크에 의한 대안신용평가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경우 업무 허용기간의 적절한 연장을 검토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 일단 동 서비스 운영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고 평가결과가 지속적으로 우수할 경우 지속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한편 신용평가의 경우 빅테크가 금융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것보다는 빅테크가 직접 면허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 금융감독이나 서비스 제공 및 소비자보호 등에서 더 나은 방안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빅테크가 본격적으로 대안신용평가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34 2017년 4월 케이뱅크, 7월 카카오뱅크가 설립되었고 2021년 10월 토스뱅크가 출범하였다.

(빅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supply chain finance) 활성화)

공급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이란 물품을 생산하여 대기업 등에 공급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통칭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대기업과 하청 및 납품업체 간의 자금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전자어음 할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 활용되어 왔다. 대기업이 제공한 어음 및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기에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P2P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다수의 투자자가 소상공인 등의 다양한 어음 및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형태, 또는 전자상거래 업체, 카드사 등이 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도를 새롭게 평가하여 대출로 연계하는 형태의 공급망 금융을 추진하고 있다.³⁵⁾

핀테크·빅테크 기업은 CB 데이터 및 자체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안신용평가를 하여 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고 차입자에 대해서는 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회사 대출, 어음할인 계약을 중개하는 형태의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에 지정대리인 제도로 금융회사의 대출 신용평가 업무를 위탁하던 것의 범위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할 때 금융회사에서 자금대출을 받는 공급망 금융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을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참여 기업을 핀테크뿐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가 가능한 빅테크, 신용카드사, 통신사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또 관련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 거래 관련 데이터를 창출하고 축적하며 이를 참여 기업들이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급망 금융을 통한 자금중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5 금융위원회 (2019)

3. 기존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제고

빅테크는 금융정보와 비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신용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고 자원배분 효율성 및 금융포용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금융회사도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금융회사들도 부수업무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기존 대형 빅테크에 비해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으나 기존 금융회사들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비금융 데이터를 확보하고 축적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기존 금융회사들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자체적으로 직접 영위하거나 또는 제휴를 통해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금융회사에 대한 플랫폼 비즈니스 허용은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형평성 제고와 경쟁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금융회사에 부수업무로 비금융 업무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허용해 주기 위해서는 고려해야할 점들이 많다. 미국의 경우 은행에 부수업무를 허가해줄 때는 해당 업무가 전통적으로 인정된 은행 고유업무와 기능적으로 동일하거나 논리적 연장선상에 있는지, 해당 업무가 소비자 편익을 창출하고 은행 건전성을 제고하는지, 해당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가 은행이 기존에 수행하는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 유형과 유사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재정경제부 은행업 부수업무 편람의 부수업무 해당 여부 판단기준에 ① 은행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② 은행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③ 은행의 신인도 및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 ④ 타 금융권 핵심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이 있었다. 2015년에 금융위원회는 신규 부수업무에 대해 은행의 여유 인적·물적자산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까지 폭넓게 인정하도록 최대한 탄력적으로 해석하기로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물론 이러한 부수업무 허용 관련 요건들을 충분히 고려하되 이를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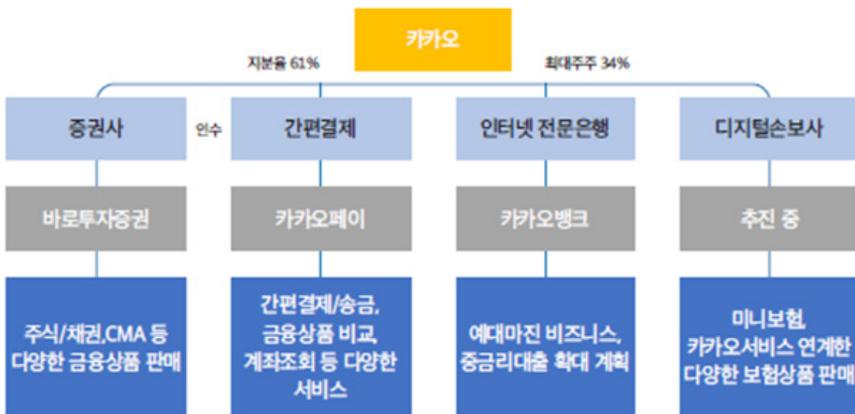
의 범위를 확대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수익원 다변화보다는 이들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비금융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대출 신용평가의 질을 높여 자원배분효율성과 금융포용성을 높이려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빅테크의 자금중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가. 모니터링의 필요성

국내의 경우 대표적으로 카카오와 네이버가 빅테크로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의 경우 현재 카카오페이(간편결제)와 카카오뱅크(은행업)를 중심으로 금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를 규율하는 업권법은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며,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한 후 2020년 2월 출범한 카카오페이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업권법으로 적용받고 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고 있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림 VIII-3〉 카카오의 금융사업 구조



자료 : 황나영 (2020)

〈표 VII-1〉 카카오와 네이버의 금융 관련 적용 법률

| | 카카오 | | | 네이버 |
|--------------|-------|----------|-------|----------|
| | 카카오페이 | 카카오페이 증권 | 카카오뱅크 | 네이버 파이낸셜 |
| 전자금융거래법 | ○ | ○ | ○ | ○ |
|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 X | X | ○ | X |
| 자본시장법 | X | ○ | X | X |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 ○ | ○ | ○ | X |
| 금융지주회사법 | X | X | X | X |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 X | X | X | X |

한편,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빅테크의 경우 금융-비금융, 금융-금융부문 간 내부거래가 급증할 소지가 많아 신중한 관리가 요구된다. 카카오페이만 보더라도 카카오페이 이용자가 카카오페이증권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및 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페이와 연동되어있는 게임(카카오게임즈), 운송(카카오모빌리티), 쇼핑(카카오쇼핑) 등 비금융 사업 간에도 상호 자금거래가 빈번하며 이에 수반되는 회사 간 정산규모도 상당하다. 카카오커머스의 경우 2020년 기준 카카오에 지급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약 1,710억원이며 이는 2020년 매출액 중 약 30%에 해당된다.³⁶⁾ 또한, 카카오는 2018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 2조 3,580억원 중 3,683억원(15.6%)을 계열사의 내부거래로 인해 달성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³⁷⁾

이처럼 SNS를 기반으로 하는 빅테크 특성상 그룹 내 계열사 간 상호연계성 연결성이 매우 높으므로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금융과 비금융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기업집단에 대해 리스크 관리나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36 언론기사, 조선비즈, 2021.4.6.

37 언론기사, 월요신문, 2019.5.30.

나.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의 취지와 빅테크

2020년 12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 및 경영상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제정되었으며, 2021년 6월 30일에 시행되었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나타난 법 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율적 위험관리체계 정착
-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다양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금융시장의 안정도모
- ③ 금융소비자·투자자 피해 예방

여기서 금융복합기업집단(financial conglomerate)은 ‘복합금융그룹’으로도 불리는데, 동일인의 지배 하에서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금융지주는 아니지만 금융계열사의 비중이 높은 소위 비(非)지주 금융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동 법은 비지주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비지주금융그룹은 금융자산 규모가 5조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또한, 그룹 내 거래(intra-group transactions and exposure; ITEs)로 인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의 동반 부실화 문제가 발생하는 등 각 업권별 감독으로는 그룹위험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국제적 감독 논의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통합 감독에 대해서는 1999년 국제결제은행(BIS) 조인트 포럼(Joint Forum)을 통해 처음 국제규범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중 대형 금융회사 및 금융그룹의 고위험 투자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받게 되면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SIFI)」에 대한 규제강화 이슈로 발전하게 되었다. 요컨대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강화 논의는 금융그룹이 금융시스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룹 내 거래의 빈도가 높다는 점과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이 그룹 내에서 영위되고 있어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서 촉발된 것이다.

특히, 조인트포럼의 경우 금융그룹 내 권역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만큼 규제차익(risk arbitrage) 가능성과 비은행 부문의 위험이 정부보증 혜택이 있는 은행부문으로 전이될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시스템 리스크 요인에 집중했다.³⁸⁾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이 2020년 4월 발표한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and Press Release for the Republic of Korea’에서는 우리나라의 비지주금융그룹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라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³⁹⁾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7월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금융그룹감독을 시범 운영하였고, 2020년 12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38 서정호 (2010) 참조

39 금융그룹감독 관련 IMF 주요 평가·권고사항 ①(평가)비지주금융그룹에 대한 그룹차원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 ②(비지주금융그룹 측면 권고)건전성 규제 강화, 그룹소유구조에 관한 정보 공개, 금융그룹의 적절한 지배구조 구축 필요, ③(감독당국 측면 권고)비은행금융기관의 시스템적 중요성, 다양한 그룹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그룹감독을 강화확대하고, 감독수단의 정교화 필요, 금융위원회 (2020a) 참고.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서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financial conglomerates)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⁴⁰)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2021년 7월 현재 보험사와 증권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6개 그룹(삼성, 한화, 현대차, 교보, DB, 미래에셋)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대상으로 지정되면 이전보다 강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지정기업은 통합자기자본이 통합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집단의 자본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위험관리 실태평가를 정성평가 항목⁴¹)으로 구성하고 총 5단계 등급으로 평가받게 된다. 그리고, 지정된 기업은 출자 신용공여 등을 분기별로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도 ①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의 업을 영위하면서, ②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현재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빅테크 기업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카카오의 경우 비주력업종(금융회사 집단이 영위하는 업 중 자산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인 금융투자업이 기준금액 5조원 미만이며, 네이버는 여수신, 보험, 금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해서 빅테크의 자금중개를 현재처럼 두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자금중개거래가 빈번하고 규모가 상당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논리이다. 빅테크의 상당수가 이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네이버의 경우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이 금융업 라이선스 없이 전자금융거래업자, 본인신용정보제공업자로서 일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40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이 속한 기업집단의 금융회사

41 ①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운영, ②자본적정성 유지 정책, ③위험집중내부거래위험전이 관리 등 적정성 평가 항목

네이버페이(결제서비스 플랫폼)를 분사하여 네이버파이낸셜이라는 금융자회사를 설립하였고, 대출,⁴²⁾ 보험,⁴³⁾ 투자⁴⁴⁾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사와의 제휴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사실상 금융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는 사실상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대상에 해당하는 2개 금융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하고 있지만 실제 취득한 관련 라이선스가 없어 감독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회사들은 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각 업권별 규제를 받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향후 규모 확대에 따라 대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네이버파이낸셜과 같은 경우, 금융사업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도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전자상거래) 등 비금융사업부문과의 상호연계성이 높으므로 비금융과 금융부문 간 전이 위험은 적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처럼 많은 빅테크들이 기존 금융회사와 제휴하는 방식으로 금융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등 핀테크 육성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등을 이용하여 정식 인허가 없이도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요컨대 빅테크는 기존의 금융회사보다 규제에서 다소 자유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더라도 관련 규제 중 일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적용받는 규제는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보다는 약하겠지만,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므로 사전적인 감독 노력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42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캐피탈과 제휴하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상품

43 네이버 의무보험: 소상공인과 보험사를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가맹점에게 필요한 주요 의무보험을 소개하고, 보험사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임.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이 참여하고 있다.

44 2020년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대우증권과 제휴하여 ‘네이버통장’을 출시하였으며, 이후 ‘미래에셋대우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네이버 통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적용되는 규제로는 자본적정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 공시, 위험관리실 태평가 등이 있는데 이 중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내부거래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빅테크 그룹 내 고위험(high-level risk) 내부거래를 유형화하고, 이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 시 규제 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으로 편입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감독 목적 상 빅테크 자금중개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정교하게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독과점 방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빅테크는 네트워크 외부효과와 높은 전환비용 때문에 독과점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빅테크의 고유한 특성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빅테크가 가장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대형 빅테크가 점차 시장지배력을 높이며 독과점화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금중개시장의 관점에서는 빅테크가 독과점화하더라도 기존 금융기관들과 경쟁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빅테크의 자금중개 대상이 정보불투명성이 높고 담보가 적어 기존 금융기관의 신용제공에서 소외되어온 부문에 집중될 경우 이 분야에서 빅테크의 독과점화로 자원배분효율성이 떨어지고 금융포용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빅테크가 독과점화하면 금융상품 번들링, 가격차별화 등 반경쟁적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빅테크의 독과점화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융업은 빅테크의 다양한 업무들 중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주도적으로 빅테크의 독과점화 방지를 유도하기는 어렵다. 금융당국과 공정거래당국의 협업이 필요하다. 현재는 금융시장에서 빅테크의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빅테크의 독과점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 기술개발의 속도가 빠르고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빅테크의 사업확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금융산업

에서도 빅테크가 의미있는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금융당국은 미리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6. 빅테크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율 마련

빅테크가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은 ‘플랫폼’ 자체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고, 플랫폼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경쟁의 규칙(rule)도 만들 수 있다. 이로 인해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빅테크가 유발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우선,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와 여기에 금융상품을 공급하려는 금융회사 간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소위 ‘B2B’에서 발생하는 플랫폼의 부당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빅테크가 금융소비자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할 수 있다. 시장지배력이 높은 플랫폼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노출시킬 수 있으며 이는 ‘B2C’로 표현할 수 있다. 금융규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기능별(functional) 또는 행위별(activity-based)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최근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확대되면서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뜨겁다.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규제적용의 형평성이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금융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동일 기능(혹은 동일 리스크)에 대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를 위해 플랫폼 상의 금융상품 판매행위 관련 규율체계를 기능별 혹은 판매행위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금융플랫폼의 역할과 입지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 시 플랫폼과 이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이 서로 책임공방을 펼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따라서 현행 업권별 규제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Carstens et al.(2021)도 행위별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금융플랫폼의 형태도 다양하고 그들의 행위 유형도 세분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법률관계 및 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금융플랫폼은 금융서비스의 광고를 노출하거나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수도 있고,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검색·조회하는 과정부터 이를 바탕으로 특정 금융회사와 금융서비스를 해당 금융플랫폼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는 쇼핑, 검색, SNS 활동 등의 소비자 활동 로그를 바탕으로 해당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추천해주는 추천·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플랫폼도 있다. 또한, 마이데이터처럼 온라인 상에서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다. 이처럼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을 연계하고 판매하는 전(全) 단계에 걸쳐 행위 유형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수요자의 시각에서 플랫폼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하고 각 행위에 대한 법적 성격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플랫폼 기업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 이외에도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제휴 시 과도한 경쟁을 통해 수익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접근(간접규제)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2021년 9월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정보제공, 비교, 추천 등은 단순한 ‘광고’ 활동이 아니라 금소법 상 ‘금융상품의 중개’에 해당되며, 따라서 해당 플랫폼은 금융상품 중개업 등록을 하고 금소법이 정하고 있는 영업행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플랫폼의 업태를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해당 영업활동의 성격에 준하여 규제를 적용하는 행위별 규제의 적용 사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연히 자금중개 기능을 담당하는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제시한 요건⁴⁵⁾에 부합된다면 ‘금융상품의 중개’로 보아 금소법 적용 대상이 될 것이다.

둘째,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비대칭적인 데이터 공유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45 ①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판매가 주 목적인 경우 ②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있다.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에 주고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으로 상당량의 금융회사 보유 정보가 빅테크에 제공될 수도 있다. 반면, 빅테크가 보유한 다양한 정보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괄되지 않아 금융회사 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 VII-2>는 신용정보법 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와 대상 신용정보 그리고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를 보여주고 있다. 정보주체인 개인은 동 요구권 행사로 자신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금융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표 VII-2>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의 범위

| 신용정보제공자 | 제공되는 신용정보 |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
|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 겸영여신업자, 전기통신사업자,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공공기관 등 | 금융거래 정보, 국세·지방세 납부정보, 보험료 납부정보, 통신료 납부정보, 주문내역정보, 기타 주요 거래내역 정보 | 정보주체 본인, 금융회사, 개인CB, 마이데이터 사업자 |

자료 : 관계 법령

셋째, 금융당국 내 플랫폼의 공정경쟁을 제고하는 감독기능 및 해외 감독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의 경우 경쟁촉진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이익 증대(promote effective competition in consumers' interests in regulated financial services)를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⁴⁶⁾ 복잡다기한 금융플랫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금융당국 내에 비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금융부문의 공정경쟁 이슈를 관리하는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의 독점적 지배력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 기존 금융사업자와 빅테크 간 규제차의

46 <https://www.fca.org.uk/about/promoting-competition>

을 제거하기 위한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는 빅테크의 전자금융업 합병 및 영업양수 시 당국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확장을 통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국내 감독에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해외 감독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하고 규율체계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V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빅테크가 신용제공을 확대할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금융당국이 핀테크 및 빅테크에 의한 신용제공의 규모를 파악하고 공식적으로 집계할 필요가 있다. BIS에서도 핀테크 및 빅테크에 의한 신용제공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 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Cornelli et al, 2020). 물론 현재 핀테크·빅테크와 관련된 신용제공이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크게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금융당국에서는 관련 데이터 확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는 미미한 수준인 빅테크의 신용제공이 향후 크게 늘어나 경쟁이 강화될 경우 일부 기존 금융회사들이 수익 확보를 위해 무리한 위험추구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감독 당국의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 기존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주수입원은 대출 등을 통한 이자수익이다. 따라서 빅테크가 신용제공을 확대할 경우 이들이 수익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기존 금융회사들이 줄어든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다양한 위험추구 행태를 보여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경쟁이 강화될 경우 기존 금융회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일부 금융회사들이 부실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자금중개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간접금융기관은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들인데 비은행금융기관들의 상당수는 신용평가 능력이 떨어지고 적당한 대출처가 없어 예대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빅테크가 강화된 신용평가 능력을 기반으로 정보불투명성이 높은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장확대에 나설 경우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은 수익성 악화로 부실화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현재는 빅테크의 대출 등 실적이 미미하여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발전속도가 매우 빠른 빅테크의 영업행태 등을 감안할 때 미리 대비체계를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

VIII.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에서 빅테크의 금융업 특히 자금융개업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서론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빅테크가 금융업, 특히 자금융개업에 진출하는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과거에도 ICT기업이 자금융개 등 금융업을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대부분 실패했는데 왜 최근에는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가? 빅테크가 기존 금융회사들에 비해 자금융개 시 신용평가에서 더 나은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가? 이러한 빅테크의 자금융개업 진출은 금융산업과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빅테크 자금융개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본문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제시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빅테크가 금융업 진출을 늘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고 네트워크 외부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다각화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다양한 데이터 확보로 기존 비즈니스 및 금융서비스 양자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 금융회사들의 신용평가 및 서비스 지역에서의 한계 등으로 틈새시장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빅테크 등 ICT기업이 금융업에 진입할 유인이 있고 이에 따라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 이들이 금융업 진출을 시도하였다. 키움증권은 ICT 모기업의 기술을 기반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온라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시도들은 모두 실패하였다. 금융실명제와 은산분리 규제 등이 표면적인 이유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오늘날과 같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IT기술이 발전하지 않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실익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 들어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고 금융당국의 금융혁신

의지도 가세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며 IT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빅테크 자금중개의 장점은 먼저 이들이 플랫폼을 통해 얻게되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AI와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해 정확도가 높은 신용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자원배분 효율성과 금융포용성을 높이게 된다. 또 자금중개시장 경쟁 강화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빅테크는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해 규모가 커질수록 경쟁력이 강화되어 시장지배력이 커지고 독과점화할 가능성이 높고, 자체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반경쟁적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 또 기존 금융기관과의 과도한 경쟁, 빅테크의 주요 사업인 비금융업 리스크의 금융업 전이 등으로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빅테크가 기존 금융회사들에 비해 신용평가에서 더 나은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살펴본 결과 해외사례와 국내사례 모두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빅테크의 자금중개 시장 진출은 경쟁을 강화하고 신용평가 정확도 향상을 통해 자원배분 효율성 및 금융포용성을 개선할 수 있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철저한 금융감독 하에서 활성화해야 한다. 한편 빅테크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관련 요건 충족의 조건 하에 기존 금융회사들에게 부수업무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허용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빅테크는 기존 금융회사보다 규제에서 다소 자유로운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더라도 관련 규제 중 일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또 독과점화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공정거래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빅테크가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은 ‘플랫폼’ 자체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고 경쟁의 규칙(rule)도 만들 수 있어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의 해결을 위해 금융규제 측면에서는 기능별 또는 행위별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비대칭적 데이터 공유 체계를 개선하며, 금융당국

내 플랫폼의 공정경쟁을 제고하는 감독기능 및 해외 감독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빅테크가 신용제공을 확대할 경우 빅테크와 기존 금융회사들 간 과도한 경쟁, 빅테크의 주요 사업인 비금융업으로부터의 리스크 전이 등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어 당국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핀테크 및 빅테크에 의한 신용제공 관련 공식적인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일부 경쟁력이 떨어지는 금융기관들의 부실 가능성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빅테크의 금융 진출에 대해 일반론적인 접근을 경계한다. 막연하게 빅테크는 ‘공룡’이기 때문에 금융업 진출을 막아야 한다거나, 빅테크는 비금융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갖는 순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 보다 세심한 접근을 해야한다. 더욱이 이러한 접근은 각국의 금융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고신용의 우량 고객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중신용자와 소상공인들이 겪는 금융 소외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은행 중심적인 금융시장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국내 상황에서 데이터와 첨단기술을 등에 업은 핀테크와 빅테크가 등장하였고 금융산업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국내 금융산업에 새로운 도전과 자극을 던져주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그야말로 불편한 동거를 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외면하자니 경쟁 금융회사들이 그들과 손을 잡을 것이고, 손을 잡자니 안방을 내주는 것 같은 형국이다. 경쟁과 협력이라는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빅테크의 자금중개 활동이 금융산업의 경쟁구도와 고객들의 금융행동을 바꾸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회사의 혁신동기를 자극할 것이고, 금융산업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책당국도 자금중

개기능의 다변화를 모색하되 이를 적절히 감독할 규제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빅테크의 자금중개 서비스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실증적으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입증하기는 이르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향후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면서 보다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정책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자료〉

- 고은아 (2020),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해외 규제 동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CEO경영이슈 제32호.
- 금융감독원 (2019),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추진 현황”, 보도자료, 5월.
- _____,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금융위원회 (2008),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보도자료, 6월.
- _____, (2019),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활성화 전담 팀(T/F)」 출범”, 보도자료, 10월
- _____, (2020a),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 의결”, 보도자료, 4월
- _____, (2020b),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보도자료, 7월.
- _____, (2021), “혁신적 포용금융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 보도자료, 5월
- 김준영 · 전보미 · 박지영, “금융데이터의 수집과 공유: 개정 신용정보법 하에 서의 변화”,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 2020-12 창간호.
- 김혜미 (2020),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금융안정성”,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15호, pp.1-5.
- 서정호 (2010),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논의와 정책과제”, 금융브리프 19-21, 한국금융연구원, 5월
- 서정호 · 이병윤 (2020),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은행”, 한국금

용연구원, KIF 연구총서, 2020-02.

이병윤 · 서병호 · 권홍진 (2020), “은행은 여전히 특별한가? :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은행의 대응”, 한국금융연구원, KIF VIP 리포트, 2020-15.

이보미 (2020a)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금융브리프 29-15, 한국금융연구원, 8월

_____ (2020b), “빅테크의 금융서비스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KIF금융분석리포트 2020-17, 한국금융연구원, 12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각 년도

한국은행 (2021), 『2020 지급결제 보고서』, 4월.

_____, 경제통계시스템.

황나영 (2020), “테크핀, 전통 은행에 도전장을 내밀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리서치PLUS+ 8월.

〈해외 자료〉

BIS (2019), *Annual Economic Report*, June.

Carstens. A., S. Claessens, F. Rostoy and H.S. Shin (2021), “Regulating big techs in finance”, *BIS Bulletin* No. 45, BIS, August

Cornelli, G., J. Frost, L. Gambacorta, R. Rau, R. Wardrop and T. Ziegler (2020), “Fintech and big tech credit: a new database”, *BIS Working Papers*, No 887, BIS, September.

Financial Stability Board (2019), “BigTech in finance: Market developments and potential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December.

Frost, J., L. Gambacorta, Y. Huang, H. S. Shin and P. Zbinden (2019), “BigTech and the changing structure of financial intermediation”, *BIS Working Papers*, No 779, BIS, April.

OECD (2020), *Digital disruption in banking and its impact on competition*.

Stulz, René M. (2019), “FinTech, BigTech, and the Future of Banks”, Working Papers 2631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September.

한국금융연구원(KIF) 발간물 현황

1. 정기 간행물

■ 격주간

- 금융브리프

■ 계 간

- 계간금융동향
- 금융연구
- Korean Economic and Financial Review
- 가계부채 분석 보고서

■ 연 3회간

- 한국경제의 분석
- 경제전망시리즈

2. 연구 발간물

■ KIF 연구총서

- 2021-03 비은행금융산업의 2030비전과 발전과제: 코로나 위기 이후 디지털금융을 중심으로, 2021.7./이재연·구정환·이규복
- 2021-02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 금융투자업 -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2021.2./송민규·연태훈
- 2021-01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 보험산업 -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2021.1./김재현·이석호
- 2020-02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 은행 -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2020.11./서정호·이병윤
- 2020-01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 개관 -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2020.10./구본성·이순호
- 2017-01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 및 대출 상품의 설계, 2017.3./송민규·노형식·박종상·박춘성·이보미·임진
- 2014-01 우리나라의 매크로레버리지 : 분석과 전망, 2014.7./구본성·김동환·박혜식·이명환·박성욱·김영도·임진·박종상·김석기·송민기

■ KIF 연구보고서

- 2021-06 외부충격 시 계열회사 부실화에 따른 그룹위험 연구 - 출자연계성을 중심으로, 2021.12./오테록·이시연
- 2021-05 공매도 논쟁과 향후 정책 방향, 2021.12./송민규
- 2021-04 국내 보험사의 외화유가증권 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2021.8./박혜식·이석호
- 2021-03 펜데믹 하에서의 재정정책 효과: 아동돌봄포인트의 소비 진작 효과 추정, 2021.8./권홍진·박춘성·오테록

- 2021-02 공모·상장리츠 M&A 자금조달방식 결정요인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아태지역 상장리츠 실증분석-, 2021.2./신용상
- 2021-01 국내은행의 효율성과 시사점, 2021.1./이지언·이대기
- 2020-05 OECD 회원국 은행그룹의 PBR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2020.8./권홍진·서병호
- 2020-04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생명보험사의 비용효율성 영향 분석 : Bootstrap DEA와 Stochastic Frontier Analysis를 중심으로, 2020.7./이석호
- 2020-03 투자자 정보, 기술적 분석 및 유전자 알고리즘(GA)에 기반한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최적화에 관한 연구, 2020.6./김병덕
- 2020-02 거주자 외화예금과 외환시장 안정성, 2020.2./송치영·박해식
- 2020-01 국내 외환시장 개입의 유효성 검증 : 사건연구를 중심으로, 2020.1./박해식·김남중
- 2019-04 금융 마찰과 기업 규모별 정책, 2019.12./김석기
- 2019-03 가계대출 안내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 : 핵심상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9.11./김정한·노형식·서병호
- 2019-02 연령 프레임 효과로 인한 취업자 증감 지표의 착시 현상, 2019.7./송민기
- 2019-01 G-SIB CDS 프리미엄을 이용한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 측정, 2019.4./이궁화·이명환
- 2018-07 자본시장을 통한 유동화 방식의 역모기지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18.12./김영도·신용상
- 2018-06 방카슈랑스제도 시행의 종합적 효과 분석, 2018.11./이석호·이순호
- 2018-05 예대출 규제에 거시건전성 효과와 시사점 : 대출의 경기순응성 완화효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2018.8./김남중
- 2018-04 저축은행의 경쟁과 위험추구, 2018.8./연태훈
- 2018-03 대외자산 및 대외부채가 외환시장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8.7./박성욱
- 2018-02 소비자의 대학진학 및 학자금대출 선택의 최적화에 관한 연구, 2018.4./김병덕
- 2018-01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동적특성 : 그룹별 대출 및 연체 추세에 대한 미시분석, 2018.3./박춘성·이보미
- 2017-17 통화정책의 신용분배 효과와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구조, 2017.12./박해식·이지언
- 2017-16 주택연금 시장참가자별 재무적 손익 분해와 고령화 관련 정책시사점 -주택연금 시스템 지속성 확보 관련 시사점을 중심으로-, 2017.8./신용상
- 2017-15 최근 구조조정 이후 우리나라 저축은행 특성별 대출포트폴리오 분석 및 시사점, 2017.8./이수진·이규복
- 2017-14 기업집단의 출자·부채구조와 사업재편에 관한 연구, 2017.6./김동환
- 2017-13 증권업의 기술·비용·수익·이윤 효율성과 시사점, 2017.6./이지언
- 2017-12 자산가격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고찰, 2017.5./김영도
- 2017-11 금융실효환율과 대외포지션 및 자본유출입의 관계 분석, 2017.4./김소영·이윤석
- 2017-10 국내가구의 교육 및 주거관련 비용 부담이 노후소득 준비에 미치는 영향 :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2017.4./이규복·이석호
- 2017-09 Determinants of SME Growth : Korean Manufacturing Firms, 2017.3./박창균·임형준
- 2017-08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적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17.3./김병덕
- 2017-07 대중수출 둔화의 구조적 원인과 대응전략 : 수입대체와 생산기지 이전 효과, 2017.2./지만수
- 2017-06 은행그룹의 비용구조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7.2./김우진·이대기
- 2017-05 Population Aging and Monetary Policy in a New-Keynesian OLG Model, 2017.2./김석기
- 2017-04 금융상품 자본업 도입에 따른 판매채널 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 2017.2./구정한·이규복
- 2017-03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원인 및 정책목표, 2017.1./박종규
- 2017-02 금융지주회사의 비예금부채가 시스템위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시사점, 2017.1./김자봉·이규복

- 2017-01 미소금융의 효율성 분석과 상품 개선 방안 -원가금리 추정과 대출금리 현실화 방안을 중심으로-, 2017.1./이대기
- 2016-04 주택자산의 금융상품화 방안 연구 -금융기관 인수 주택자산을 중심으로-, 2016.11./신용상·김영도
- 2016-03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약세장 가설 재조명, 2016.11./박해식·송치영
- 2016-02 한국 자본이동관리규제의 영향 분석, 2016.2./박성욱·송민규
- 2016-01 국제만기에 관한 연구 : 기간스프레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2016.1./박종상·송민규
- 2015-04 평균 수명 증가가 연령별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고령층을 중심으로, 2015.9./김석기·임진
- 2015-03 최근 기업부문 건전성 분석을 통한 금융 안정성 평가와 시사점, 2015.3./이지연
- 2015-02 기술력평가정보를 활용한 기술 중소기업 부도예측과 정책적 활용방안, 2015.2./박창균·임형준
- 2015-01 저성장·고령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2015.1./이석호
- 2014-05 국내 지역금융의 변화 추이와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2014.12./손상호·이재연
- 2014-04 국내은행의 경쟁력 제고방안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2014.11./김우진
- 2014-03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분석 및 시사점, 2014.9./서병호
- 2014-02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2014.9./노형식·임진
- 2014-01 금융소비자보호 효과제고를 위한 실천과제 : 규제, 사후관리, 역량강화, 2014.7./노형식·송민규·연태훈·임형준
- 2013-08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 임금(賃金)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2013.12./박종규
- 2013-07 방카슈랑스제도 시행에 따른 생명보험사의 비용절감(가격인하) 효과 : DEA 비용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2013.12./이석호
- 2013-06 금융업권간 자금이동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2013.12./김영도·서병호
- 2013-05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환경 변화와 국내시장의 영향, 2013.10./김영도
- 2013-04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국내 및 해외 포트폴리오투자 행태변화 및 시사점, 2013.9./박성욱·이규복
- 2013-03 정보기술의 발전과 주식시장 정보전달 속도, 2013.5./박재윤·이충열·강민호·이선호
- 2013-02 주가지수 편입의 효과 : KOSPI 200을 중심으로, 2013.2./연태훈
- 2013-01 증권시장 수익률 및 변동성의 전이현상에 관한 연구, 2013.1./강종만
- 2012-05 우리나라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가 은행수익성 및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2012.8./한상섭·이병윤
- 2012-04 한국 금융시스템의 비교제도분석 : 은행 vs 시장, 2012.7./김동환
- 2012-03 최초공모주식의 저평가 여부와 장기성과의 변화 : 기업공개제도 개선효과에 주는 시사점, 2012.6./강종만
- 2012-02 회사채 유동성 프리미엄 분석 및 시사점, 2012.3./이규복·임형준
- 2012-01 중소기업 신용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의 역할 비교분석, 2012.2./김자봉·이석호
- 2011-05 우리나라 은행의 외화자금 조달방식과 외화유동성 위험, 2011.12./이병윤·이윤석
- 2011-04 캐리거래와 우리나라 외환시장, 2011.12./박해식·송민규
- 2011-03 스트레스테스트에 기초한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 분석, 2011.8./신용상
- 2011-02 국내은행 업무 다변화의 성과분석, 2011.6./서병호·강종만
- 2011-01 해외주식투자 환헤지에 대한 연구, 2011.1./임형준
- 2010-07 시스템 리스크를 감안한 추가 규제자본금의 추정에 관한 연구, 2010.12./김자봉·김병덕
- 2010-06 콜시장의 지준시장화에 따른 콜금리 움직임 분석, 2010.11./임형석
- 2010-05 금융불안에 대응한 물가안정목표제 개선방안 연구, 2010.10./장민·이규복

- 2010-04 기업부문 부실 분석과 구조조정예의 시사점, 2010.10./이지언
- 2010-03 외국인 국내채권 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2010.10./김정환·이대기
- 2010-02 은행업 위험변화가 자금중개기능에 미치는 영향, 2010.10./강종만·김영도
- 2010-01 국내의 은행의 CDS프리미엄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2010.10./서병호·이윤석

■ KIF 금융분석보고서

- 2021-03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2021.11./이지언
- 2021-02 기업의 법적 형태가 부도위험과 기업형성에 미치는 영향 -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 2021.10./김석기
- 2021-01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경로 추정, 2021.7./장 민·박성욱
- 2020-01 한국과 유로지역의 가계부채 미시구조 비교 분석 - 과다채무자를 중심으로 -, 2020.2./임진
- 2019-03 국내은행의 핵심예금 결정요인 및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2019.12./김우진·이대기
- 2019-02 증권규제 비례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 증권법과 국내 자본시장법상 '민사적 금전제재(과징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2019.9./김자봉
- 2019-01 기업부채 리스크와 은행대출 건전성 -Merton 모델을 중심으로-, 2019.6./이지언
- 2018-01 은행 비예금부채의 부채 사이클 조정역할, 2018.9./김자봉·박양수·조태근
- 2016-04 우리나라 은행의 시장경쟁도 평가 및 정책점 시사점, 2016.8./서정호
- 2016-03 국내 서민금융 현황 및 개선방안 : 수요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2016.8./구정환·이규복·김석기
- 2016-02 금융자본계열과 산업자본계열 보험사간 경영성과 비교·분석, 2016.3./이석호
- 2016-01 계좌이동서비스 도입에 따른 주요 이슈와 시사점 :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2016.2./김우진·이순호
- 2015-01 국내은행의 점포수 변화와 변동요인 분석, 2015.10./이윤석

■ KIF 정책분석보고서((구) KIF 정책보고서)

- 2021-03 빅테크의 대출기능 현황, 영향과 정책과제, 2021.12./이병윤·서정호
- 2021-02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시사점, 2021.12./김남중·김현태·박해식
- 2021-01 코로나19가 소득분위별 체감물가상승률에 미친 영향, 2021.7./박성욱·장민
- 2016-03 서민금융의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 2016.8./손상호
- 2016-02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이해-워크아웃과 법정관리-, 2016.5./김동환·이순호·구정환·김석기
- 2016-01 금융실명제 시행 2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16.5./김자봉
- 2015-07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국제논의와 국내도입 시 고려요인 분석, 2015.11./임형석·이재연
- 2015-06 국내 기술금융의 과제와 개선방안, 2015.9./손상호
- 2015-05 디플레이션 우려와 정책대응방향, 2015.9./박종규
- 2015-04 국내 「금융회사 정리체계」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2015.9./임형석·고영호
- 2015-03 국내 주택시장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탈동조화 현상과 정책시사점, 2015.4./신용상
- 2015-02 국내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와 효과 분석, 2015.3./구정환·김영도·이시연
- 2015-01 협동조합은행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과 시사점-상업은행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015.2./김자봉
- 2014-05 인구고령화 및 금리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4.9./강종만
- 2014-04 낙수효과(落水效果)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의 쟁점과 대안, 2014.9./박종규
- 2014-03 금융회사 회생·정리계획 국제논의와 시사점, 2014.8./임형석

- 2014-02 은행의 금융중개기능과 금융통제(Financial Restraint)에 관한 연구, 2014.7./김동환
- 2014-01 국내 금융투자업의 발전방향 및 과제, 2014.6./손상호·김영도
- 2013-06 한국 정책금융의 평가와 분석 및 미래비전, 2013.12./손상호
- 2013-05 서민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방안, 2013.11./이재연·이시연
- 2013-04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 성과 및 부실채권시장의 향후 발전 과제, 2013.6./KIF
- 2013-03 방카슈랑스제도 시행 평가 및 과제, 2013.6./이석호
- 2013-02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 2013.4./KIF
- 2013-01 서민금융의 발전방향, 2013.3./손상호·이재연
- 2011-0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 방안, 2011.9./이시연·구본성
- 2011-02 금융그룹의 통합리스크 관리, 2011.7./이명환
- 2011-01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리스크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2011.1./구정환·이시연
- 2010-01 보험사의 녹색경영 현황 및 발전 과제, 2010.10./이석호·구정환

■ KIF 금융분석리포트((구) KIF VIP 리포트)

- 2021-06 코로나 위기 대응과 금융의 향후 과제, 2021.11./최홍식·구본성
- 2021-0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규제 주요 내용 및 향후 강화 방향, 2021.5./구정환·이규복·오테록
- 2021-04 2021년 은행산업 전망과 과제, 2021.3./구본성·권홍진·김우진·서병호
- 2021-03 기업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 추진 방식 점검, 2021.3./구정환·이규복
- 2021-02 BigTech의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주요이슈와 정책적 논의, 2021.2./구본성
- 2021-01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해외 사례 및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21.2./김병덕
- 2020-18 우리나라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현황과 과제, 2020.12./장 민
- 2020-17 빅테크의 금융서비스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2020.12./이보미
- 2020-16 ‘코로나 사태’이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향후 과제, 2020.12./김동환·임형석
- 2020-15 은행은 여전히 특별한가? :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은행의 대응, 2020.11./이병윤·서병호·권홍진
- 2020-14 코로나와 디지털 시대의 은행 :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발전방향, 2020.11./구본성·이대기
- 2020-13 글로벌 금융 불안과 우리나라 주가의 연계성, 2020.11./이명환
- 2020-12 코로나19와 글로벌 금융리스크 :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중심으로, 2020.10./박해식·김현태
- 2020-11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자금조달 현황과 산업별 재무건전성 점검, 2020.9./이보미
- 2020-10 크레딧시장 내 수익률추구(Reaching for Yield)와 금융시장 감독 관련 시사점, 2020.8./임형준
- 2020-09 주요국의 코로나19 위기 정책 대응 및 시사점, 2020.7./박성욱
- 2020-08 우리나라 금융시장 변동요인 분석, 2020.6./김남중·박성욱·박춘성
- 2020-07 제로금리 시대, 금융시장의 리스크와 대응과제, 2020.5./송민규 편
- 2020-06 일본의 노동시장 개혁과 시사점, 2020.4./임 진
- 2020-05 국내 부동산신탁업의 구조와 발전과제, 2020.3./서정호
- 2020-04 사적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2020.2./구정환·이규복
- 2020-03 2020년 은행산업 전망과 과제, 2020.2./이대기·김우진·권홍진
- 2020-02 글로벌 교역 동향과 생산기지로서의 아세안, 2020.2./김정환
- 2020-01 일반투자자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모·상장형 부동산 유동화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 공모형 리츠 및 부동산 DABS 거래소를 중심으로 -, 2020.1./신용상
- 2019-16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현황과 시사점, 2019.12./장 민

- 2019-15 우리나라 지방은행의 발전방안, 2019.12./이병윤·이순호
- 2019-14 IPO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 2019.12./이보미
- 2019-13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이해 : 해외의 주요 논의내용 및 시사점, 2019.12./이명할
- 2019-12 북한 금융의 주요 과제와 베트남 금융개혁의 시사점, 2019.11./박해식·이병윤
- 2019-11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9.10./김병덕
- 2019-10 금융거래지표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대응과제, 2019.9./김남중·송민규
- 2019-09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청년실업에 미치는 영향, 2019.6./장민
- 2019-08 레버리지론 및 CLO 시장의 위험과 시사점, 2019.5./박해식·오테록
- 2019-07 국내 자영업자의 부채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2019.3./서정호·이규복·이기혁
- 2019-06 최근 핀테크의 지급결제시장 참여 확대와 시사점, 2019.3./서정호·김자봉
- 2019-05 국내 부동산 그림자금융 현황과 업권별 리스크 관리방안, 2019.2./신용상
- 2019-04 지역중심 성장모델 강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과 시사점, 2019.2./구본성
- 2019-03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부진 원인과 개선방안, 2019.2./구정한
- 2019-02 자산운용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전략 분석, 2019.1./김병덕
- 2019-01 국내 대출채권 유통시장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검토, 2019.1./김영도
- 2018-08 오픈API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은행산업의 혁신전략, 2018.12./서정호
- 2018-07 ICO 현황과 규제방안 - 자본시장법 중심으로 -, 2018.11./이지언·이보미
- 2018-06 글로벌 금융불안요인 점검, 2018.10./박해식·김남중·오테록
- 2018-05 신남방정책과 국내은행의 아세안 진출, 2018.10./김정한·서병호
- 2018-04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금융 활용방안, 2018.9./박해식·이윤석
- 2018-03 국내 증권사의 IB 업무현황 및 시사점 : 은행계열 IB 분석을 포함하여, 2018.8./구본성
- 2018-02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가계부채 금리위험 완화 방안 : MBS와 커버드본드의 활용, 2018.8./김영도
- 2018-01 국내 은행산업의 발전방향 : 차별성과 사회적 역할 제고, 2018.7./구본성
- 2015-01 글로벌 100대 은행의 성과분석 및 시사점, 2015.4./김우진·이수진
- 2014-13 중국 은행시장의 지역별 특성과 진출환경, 2014.12./지만수
- 2014-12 영국 서민지원 주택금융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2014.9./강종만
- 2014-11 비트코인 거래 메커니즘의 분석과 시사점, 2014.9./김자봉
- 2014-10 위안화 직거래 체제 구축방안, 2014.8./박성욱·지만수·송민기
- 2014-09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 2014.8./김우진
- 2014-08 G-SIBs 규제 영향과 시사점, 2014.7./임형석
- 2014-07 RP 시장 선진화를 통한 단기자금시장 구조개선 지원방안, 2014.6./김영도
- 2014-06 거시경제적 효과를 감안한 해외채권투자의 활성화, 2014.5./구본성·임형준
- 2014-05 금융포용의 개념과 전략과제, 2014.4./노형식·이순호
- 2014-04 창조경제구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의 역할, 2014.4./이지언·최광필
- 2014-03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고찰, 2014.3./박성욱·박종상
- 2014-02 최근 신흥국 금융불안의 배경과 전망, 2014.2./박성욱·송민기
- 2014-01 퇴직금의 퇴직연금으로의 통합필요성 및 유인부합적 시행방안, 2014.1./김병덕
- 2013-10 일본의 고령화 대책, 2013.11./김동환
- 2013-09 금융거래세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2013.7./김정한·박성욱·박종상
- 2013-08 최근 양적완화 정책의 역사적 고찰 : 대공황기 주요국 평가절하 사례를 중심으로, 2013.7./이명할
- 2013-07 노르딕 모델이 갖는 금융산업에의 시사점, 2013.5./서정호·구본성
- 2013-06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소득·자산 구조와 시사점, 2013.5./박해식·임진
- 2013-05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금과 투자자 보호 강화, 2013.4./송민규·임형준

- 2013-04 ETF 관련 주요 이슈 및 발전 방향, 2013.4./김영도·송민규·연태훈·임형준
- 2013-03 주택가격 하락 등 충격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기반, 2013.3./김영도·임 진
- 2013-02 유럽 재정위기의 향후 전망과 정책과제, 2013.1./구본성·김정한·이명활·노형식·임 진
- 2013-01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의 부작용 점검 : 동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2013.1./박해식·박성욱
- 2012-09 국내은행의 PB 비즈니스 발전방안, 2012.12./서병호·김우진
- 2012-08 학자금대출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2012.7./강종만
- 2012-07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 2012.7./박해식·박성욱
- 2012-06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향후 전망, 2012.5./이윤석
- 2012-05 신용상당기능의 활성화방안, 2012.3./서정호
- 2012-04 우리나라의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2012.3./김우진·서병호
- 2012-03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역할 강화방안, 2012.2./박성욱·박재하
- 2012-02 국내 과세상품시장 공시제도 개선방안, 2012.1./김영도
- 2012-01 외국인 채권 매수·매도의 비대칭적 결정 요인, 2012.1./김영도·임형준
- 2011-26 ATS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 정비방향, 2011.12./송민규·연태훈
- 2011-25 연금금 자산운용관련 개선방안, 2011.12./김병덕
- 2011-24 최근 인플레이션의 특징 및 시사점·지속성 및 변동성을 중심으로, 2011.12./이규복·임형석
- 2011-23 가계부채의 증가원인 분석 : 미국 서브프라임발 위기와의 비교, 2011.12./이명활 외
- 2011-22 시민지원 주택금융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11.11./강종만
- 2011-21 주택담보대출 구조 변화와 연계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 2011.11./김영도
- 2011-20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2011.10./김동환
- 2011-19 한국·호주의 은행산업 비교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2011.10./서병호
- 2011-18 우리나라 외환시장 변동성 요인 분석, 2011.9./박성욱·장 민
- 2011-17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2011.8./이지언·연태훈·김영도·송민규·임형준
- 2011-16 최근 장기금리 하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11.8./김정한·장 민·이규복
- 2011-15 외환규제의 상호관계에 대한 검토, 2011.7./김정한·박성욱
- 2011-14 비우량회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 2011.7./이지언·임형준
- 2011-13 한국은행 통화안정계정(기간부예금) 평가 및 개선방안, 2011.7./임형석
- 2011-12 비은행 금융회사 금리 결정요인 분석 : 저축은행 및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2011.7./이규복·이순호
- 2011-11 주택금융제도의 국제간 비교 및 정책 제안, 2011.7./이재연
- 2011-10 국내은행의 외환부문 리스크 연계구조에 대한 분석, 2011.7./박성욱·송민규
- 2011-09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방안, 2011.7./이시연
- 2011-08 해외주식투자 활성화 방안, 2011.6./이지언 외
- 2011-07 증권대차시장의 발전방안, 2011.6./김영도
- 2011-06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외환업무 관련 효율화 방안, 2011.5./노형식 외
- 2011-05 개정 신탁법(안)이 은행 신탁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11.4./김병연·서정호
- 2011-04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2011.4./강종만
- 2011-03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 정보제공의 개선방향 : 비교공시를 중심으로, 2011.4./송민규
- 2011-02 고통화 진전에 따른 정책과제, 2011.3./김병덕 외
- 2011-01 금융안정분담금(은행세) 도입과 정책방향, 2011.3./박성욱 외
- 2010-16 국내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 활용 현황과 개선방안, 2010.12./서정호
- 2010-15 서민금융정책의 방향, 2010.11./정찬우
- 2010-14 우리나라 신용카드 거래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010.10./이재연

- 2010-13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군별 인사관리시스템의 개선 : 우리나라 은행을 중심으로, 2010.10./노형식
- 2010-12 최근 달러 캐리거래의 동향과 시사점, 2010.9./김정환·이윤석
- 2010-11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 건정성에 미치는 영향, 2010.8./장민·이규복
- 2010-10 향후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2010.8./장민·이규복·임형석
- 2010-09 최근 랩어카운트의 현황과 대응방안, 2010.8./이지언·임형준
- 2010-08 시스템리스크와 거시건전성 감독방안, 2010.8./손상호·이상제
- 2010-07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금융시장의 영향과 정책대응, 2010.6./김정환·임형준·이지언
- 2010-06 볼커룰(Volcker Rul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0.5./서병호
- 2010-05 서민금융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2010.5./김동환·정찬우·이재언
- 2010-04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 2010.4./장민·이규복
- 2010-03 외화표시 국내채권 CDS시장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2010.4./서병호·이윤석
- 2010-02 예대율 규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0.4./이지언·김영도
- 2010-01 녹색금융의 현황과 향후 과제, 2010.2./구정환
- 2009-06 기업부실 분석과 구조조정예의 시사점, 2009.12./이지언
- 2009-05 외환보유액 관리비용과 필요외환보유액 추정, 2009.12./김정환·이윤석·임형준
- 2009-04 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 위한 새로운 소비자보호체제의 구축 방안, 2009.12./김병연
- 2009-03 출구전략의 시기 및 조건, 2009.12./장민·이규복·임형석
- 2009-02 최근의 부동산시장 상황과 향후 금융정책 방향, 2009.11./장민·이규복·임형준
- 2009-01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개선방안, 2009.10./김동환

■ KIF 금융조사리포트((구) KIF 금융조사보고서) —————

- 2021-02 새로운 지급수단 출현과 결제방식의 변화가 국제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2021.3./김정환·이윤석
- 2021-01 국내의 ESG 투자 현황 및 건전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사점, 2021.3./이지언
- 2020-01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영향과 시사점 : 아마존의 사례를 중심으로, 2020.10./김자봉·이대기
- 2019-01 베트남의 금융개혁과 금융시스템 현황 및 시사점, 2019.12./이병윤·박해식
- 2016-01 금융이해력과 금융교육에 대한 해외 연구 및 사례, 2016.11./김정환

■ KIF Working Paper —————

- 21-19 은행 대손충당금 적시 인식에 따른 영향분석 2021.12./전병욱
- 21-18 주식프리미엄(equity premium)의 비교 및 결정요인 분석, 2021.12./김현학
- 21-17 정보경제학 관점에서 본 그림자 금융(비은행 금융중개)의 시스템 리스크와 거시건전성 관리 방향, 2021.11./강경훈
- 21-16 Robust and Resilient Finance, 2021.7./John Kay
- 21-15 Bank Regulation in the Age of the Platform Economy, 2021.7./Barry Eichengreen
- 21-14 Innovation Intensity and Asset Prices, 2021.6./Seunghyup Lee
- 21-13 SPACs, 2021.6./Minmo Gahng·Jay R. Ritter·Donghang Zhang
- 21-12 It's Not Who You Know - It's Who Knows You: Employee Social Capital and Firm Performance, 2021.6./DuckKi Cho·Lyungmae Choi·Michael Hertzfel·Jessie Jiaxu Wang
- 21-11 Redistribution and the Monetary - Fiscal Policy Mix, 2021.6./Saroj Bhattarai·Jae Won Lee·Choongryul Yang

- 21-10 Central Bank Policy and the Concentration of Risk: Empirical Estimates, 2021.6./ Nuno Coimbra·Daisoon Kim·Hélène Rey
- 21-09 Optimal Bailouts in Banking and Sovereign Crises, 2021.6./Sewon Hur·César Sosa -Padilla·Zeynep Yom
- 21-08 Digitalization of Finance in Korea, 2021.4./Taiki Lee·Yong Tae Kim·Thorsten Beck ·Yung Chul Park
- 21-07 Cryptocurrency Regulation and Enforcement in the U.S. and Europe, 2021.3./Demelza Hays·Andrei Kirilenko
- 21-06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 현황과 적립방식 연금 활용 방안, 2021.2./박종상
- 21-05 Digital Technology and Financial Innovation: A Literature Survey, 2021.2./Thorsten Beck
- 21-04 Market Structure, Regulation and the Fintech Revolution Antonio, 2021.2./Fatas
- 21-03 Inner Workings of Collateral-based Stablecoins and Its Implications, 2021.2./Gongpil Choi
- 21-02 Cross-border Collateral Constraints in Asia and Its Implications, 2021.2./Gongpil Choi
- 21-01 Toward a Central Bank Collateral Framework for ABMI, 2021.2./Gongpil Choi
- 20-04 금융기관의 조직 내 상시적 혁신을 위한 인사조직 개선방안, 2020.12./김경민·김승현
- 20-03 국내외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 한국, 선진국(G7), 신흥시장국(BRICS)에 대한 비 교연구, 2020.12./장원창
- 20-02 Finance and Technology: What is changing and what is not, 2020.9./Stephen G. Cecchetti·Kermit L. Schoenholtz
- 20-01 남북 경제협력 재추진시 금융관련 법제도적 이슈와 개선방향, 2020.1./이윤석·남오연
- 19-09 국내외 사회적 책임투자 사례 분석과 시사점, 2019.12./여은정
- 19-08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넛지(nudge) 도입 방안, 2019.12./박나영
- 19-07 금융상품에 대한 가격차별과 공정성에 대한 검토, 2019.12./한재준
- 19-06 국내 자본시장에서 PEF의 역할과 발전방향, 2019.11./이준서
- 19-05 Network effects of multiple banking relationships on systemic risks, 2019.11./서상원
- 19-04 CROSS-BORDER ASSET PLEDGEABILITY FOR ENHANCED FINANCIAL STABILITY, 2019.9./최공필
- 19-03 저소득층 가계부채 실태 및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 2019.5./박창균
- 19-02 부동산의 공유자산화를 통한 임대안정방안, 2019.1./이상영·최명섭
- 19-01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지급결제시장의 발전방안, 2019.1./오세경
- 18-05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DSGE 모형과 한국경제의 파라미터 추정에 관한 연구, 2018.12./ 남덕우·이정환
- 18-04 도시재생사업의 부동산 개발금융 활용방안, 2018.11./고성수·김준형·강원진
- 18-03 Reconnecting the Dots : Expanding Asian Financial Network for the PSD2, 2018.8./ 최공필
- 18-02 균형거시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주택가격 및 임차료 변동 요인 분석, 2018.5./박춘성· 송 준·홍재화
- 18-01 집합투자기구 투자증대를 위한 세계 개선방안 연구, 2018.1./조형태
- 17-09 News Media Sentiment and Asset Prices: Text-mining approach, 2017.12./표동진·김정호
- 17-08 빅데이터를 이용한 딥러닝 기반의 기업 부도예측 연구, 2017.12./오세경·최정원·장재원
- 17-07 대학생 대출 특성 및 제도 개선방안, 2017.12./이준서
- 17-06 Digital Single Market and the Global Financial Stability, 2017.12./최공필

- 17-05 The Use of Virtual Currencies in Small-value Cross-border Remittances and its Implication, 2017.4./최공필
- 17-04 Economic Fluctuations and Banking Sector: a Unified Analysis with a Financial Sector Augmented DSGE model, 2017.4./심명규·김석기·박춘성
- 17-03 벤처캐피탈 세컨더리 마켓 활성화 방안, 2017.2./한재준
- 17-02 각국의 채권추심 현황 및 시사점, 2017.1./박창균
- 17-01 내생적 통화공급과 통화정책의 효과, 2017.1./채희율
- 16-02 Fintech as a Catalyst for Financial Inclusion, 2016.10./최공필
- 16-01 저성장기 일본은행의 경험과 시사점, 2016.2./양원근
- 15-17 북한의 화폐·금융제도 연구, 2015.11./조영기
- 15-16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방안, 2015.11./조준모·우광호
- 15-15 거시건전성 감독과 신용정보, 2015.10./이인호·김영도·송연호·이준서·정재만
- 15-14 시장개방과 외국인증권투자, 2015.9./장원창
- 15-13 금융소비자의 금융투자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 심리 변인과 외재적 정보의 인지처리 과정에 관한 연구, 2015.9./변상호
- 15-12 세계금융위기이후 금융부문에 대한 시각 및 금융감독규제의 변화, 2015.8./조윤제
- 15-11 한국투자자 관점의 국제분산투자, 2015.8./정재만
- 15-10 한국자본시장의 차익거래 특성과 차익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 증권거래세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2015.8./박종원·이인호
- 15-09 한국의 기술혁신 지원 금융정책과 벤처금융산업, 2015.8./이인호
- 15-08 Real-financial Linkages and income Redistribution Effects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 Financial Social Accounting Approach, 2015.6./표학길·송세랑
- 15-07 유형별 자본이동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2015.6./김홍기
- 15-06 증가단일가에 기초한 파생상품 정산과 시세조종 유인에 대한 고찰, 2015.6./윤선중
- 15-05 금융발전과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 2015.5./한재명
- 15-04 원-위안화 직거래시대의 한-중 금융협력방안, 2015.4./서봉교·정영록
- 15-03 스톡옵션 행사시 내부자는 내부정보를 이용하는가?, 2015.4./김진호
- 15-02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소득계층별 가계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차이 분석, 2015.3./임병인
- 15-01 On the Determinants of Surges and Stops in Foreign Loans: An Empirical Investigation, 2015.1./백승관·송치영
- 14-16 A Regional Repo Market Initiative for Global Financial Stability, 2014.12./최공필
- 14-15 융합적 사회적경제와 SHC : 사회적경제와 주류경제의 융합, 2014.10./김대영·심상달·장원석
- 14-14 Competitive Search Equilibrium in the Credit Market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and Limited Commitment, 2014.10./송재은
- 14-13 연기금투자물 액티브 주식형펀드의 성과와 그 결정요인 : 공모 액티브 주식형펀드와의 비교 분석, 2014.9./이성효
- 14-12 기업내부의 사적이득 편취유인에 관한 실험적 연구, 2014.9./위경우·이재현·정현재
- 14-11 기업 지배구조 및 투자유형이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4.7./이장우·노희진
- 14-10 자본이득 과세에 관한 연구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중심으로, 2014.6./김정식
- 14-09 고령화가 가계부문 금융행태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패널을 이용한 분석, 2014.6./김경수·유경원
- 14-08 은행 예대금리의 결정요인 : 시장금리의 은행금리 전가에 관한 실증분석, 2014.6./김상환·노형식

- 14-07 글로벌금융위기 및 유럽재정위기가 유럽 및 신흥국 국제시장에 미친 영향과 한국 국제에 대한 외국인투자, 2014.6./김동순
- 14-06 고객 신용도와 금융회사의 가계신용 공급 연구, 2014.5./이건범·김우진
- 14-05 펀드 이용료와 쌍방의부성, 2014.5./민세진·이경원
- 14-04 신키로벌 통화전쟁의 가능성과 정책대응 방향, 2014.4./오정근
- 14-03 금융권간 융합과 경쟁에 대한 연구, 2014.4./강경훈·어은정
- 14-02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시사점, 2014.3./채희율
- 14-01 Growing Global Needs for ACU-Dominated Reserve Assets, 2014.3./최공필
- 13-15 IT기술발전에 대한 금융산업의 대응전략, 2013.12./김준호
- 13-14 공동화폐단위(CCU) 활용을 통한 역내화폐의 국제화 전략, 2013.12./최공필·김정환
- 13-13 발행수익률 자료를 이용한 한국이자율 기간구조 추정, 2013.10./김성민·김동석
- 13-12 북한금융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방안, 2013.10./윤덕룡
- 13-11 가계부채의 확대에 따른 리스크요인 점검, 2013.10./유경원
- 13-10 ELW시장의 투자자 매매패턴 및 성과분석, 2013.9./최영수
- 13-09 The Effect of IFRS on Loan Loss Provision and Loan Origination Pro-cyclicality: Evidence from European Banks, 2013.9./황이석·김영준
- 13-08 Korean Financial Sector in the Post-Crisis Era: Vision and Policy Issues, 2013.8./윤석현
- 13-07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의 등급인플레이션 문제와 정책과제, 2013.8./강경훈·한재준
- 13-06 은행업 분야의 전문규제와 경쟁정책의 조화에 관한 연구, 2013.6./정호열·송석은·안현중
- 13-05 신키공모시장에서 수요예측제도의 역할에 대한 연구, 2013.4./신인석·이관영
- 13-04 새로운 금융환경하의 은행의 구조와 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2013.4./송옥렬
- 13-03 부동산 관련 금융위기의 특징과 정책 대응, 2013.4./박원암
- 13-02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역모기지 활용에 관한 연구, 2013.4./함상문·고성수
- 13-01 은행산업의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2013.1./이기영·남재현
- 12-14 저성장시대의 일자리 창출방안에 관한 소고, 2012.12./이철환
- 12-13 우리나라 금융권 수신의 단기화 요인 및 개선방안, 2012.9./최창규
- 12-12 장내 파생상품거래의 규율체계 정비 및 방향, 2012.8./정기용
- 12-11 Governance and the Eurozone Crisis: What lessons to East Asian Integration?, 2012.7./백승관·오용협
- 12-10 Cross-Border Bond investment, Capital Flow Management Measures, and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2012.6./박대근
- 12-09 보험소비자 가용정보 현황과 과제, 2012.6./지범하·이경주·최현자
- 12-08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효과에 관한 연구 : Chop-shop 접근법을 중심으로, 2012.6./박정수·서정호
- 12-07 한국경제의 통화수요, 통화정책 및 환율결정 : 공적분 VAR모형에 의한 분석, 2012.6./주한광
- 12-06 고령화의 진전과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 주요국의 대응사례와 시사점, 2012.5./이인호 외
- 12-05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국제자본흐름의 특징과 전망 : 신키국관련 자본이동을 중심으로, 2012.5./강삼모
- 12-04 유럽재정위기의 요인과 대응방안, 2012.5./문우식
- 12-03 헤지펀드의 도입 및 규제방안, 2012.4./이호진
- 12-02 경제양극화 완화를 위한 경제정책 방향, 2012.3./백응기

- 12-01 Regulation for CB-IB Co-evolution-Establishing Sound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in the context of vertical/horizontal integration theory-, 2012.1./김동환
- 11-18 외국인 자본유출입 특성과 국내 금융시장의 과급효과, 2011.12./정재식
- 11-17 The Impact of Mandatory IFRS Adoption on the Cost of Equity Capital: An Empirical Analysis of European Banks, 2011.12./황이석·서정호·임상균
- 11-16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의 동태적 연관성, 2011.12./한상섭
- 11-15 내수 진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 대·중소기업간 위험공유를 중심으로, 2011. 12./하준경 외
- 11-14 리스크를 고려한 국내 은행산업의 효율성 분석, 2011.12./함준호
- 11-13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주식 소유에 따르는 법률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2011.10./전성인
- 11-12 산은 민영화 관련 주요 이슈, 2011.10./윤석현
- 11-11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국민연금기금 운용방향, 2011.9./남재현
- 11-10 고령화사회 진입이 금융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11.9./장동구
- 11-09 국내 부동산가격변동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분석, 2011.5./고성수
- 11-08 동아시아 국가들의 실질환율, 순수출 및 경제성장간의 상호관계 비교연구 : 시계열 및 패널자료 인과관계 분석, 2011.5./송유철·원용걸
- 11-07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2011.5./이기영
- 11-06 The Roles of Financial and Monetary Stabilities for Fiscal Soundness, 2011.5./이만우·오정근·김동현
- 11-05 이슬람 금융의 도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2011.5./김중관·이승영
- 11-04 On the Determinants of Aggregate Currency Mismatch, 2011.5./백승관
- 11-03 원/달러 변동성 증대의 결정요인 분석, 2011.4./성태운
- 11-02 녹색금융의 자본조달론-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녹색금융의 활성화, 2011.3./전용일 외
- 11-01 최근 EMU의 체제위기 분석과 향후 전망, 2011.3./박성훈
- 10-14 금융위기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2010.12./하준경
- 10-13 Constructing an Enhanced Global Financial Safety Net: IMF as a Global Central Bank, 2010.11./최공필
- 10-12 글로벌 금융위기가 각국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금융중심지에 대한 함의, 2010.9./송치영·박해식
- 10-11 The Dollar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Crisis and Reforms, 2010.9./유재원, Shinji Tokagi
- 10-10 금융그룹에서 법인격과 자기자본규제의 의미, 2010.9./송옥렬
- 10-09 최근 시스템 리스크에 관한 논의, 2010.8./박영석
- 10-08 차이나머니의 해외투자 향방과 시사점, 2010.7./김경엽
- 10-07 국내 투자은행(IB)의 리스크관리 방안 연구, 2010.7./김진호
- 10-06 경기변동성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개선과제, 2010.7./이종욱
- 10-05 자본이동의 반전과 외화유동성 확보 방안, 2010.7./김정식
- 10-04 금융투자업 종사자 보수체계의 비대칭성과 투자충립현상, 2010.6./강경훈 외
- 10-03 재정정책의 변화가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패널분석, 2010.6./박완규 외
- 10-02 시스템리스크와 금융정책과제, 2010.5./채희울
- 10-01 가격경직성과 금융시장마찰이 존재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의 통화정책 효과 분석, 2010.4./정용승
- 09-03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은행의 위험추구와 효율성에 미친 영향, 2009.12./정형권·조성욱

- 09-02 금융 산업에서의 경쟁과 건전성, 2009.12./이인호
- 09-01 금융규제와 시장원리에 관한 연구, 2009.11./김종민·정순섭

■ 기타보고서

- Fostering Fintech for Financial Transformation -The case of South Korea, 2021.8./Thorsten Beck, Yung Chul Park
- 디지털금융 법제화의 세계적인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market integrity)의 균형을 중심으로 -, 2021.2./김자봉
- 금융윤리자격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 해외사례와 국내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2020.12./정운영·박원주·황삼진
- 2020년 경제 및 금융 전망, 2019.12.
- 일본 기능별·횡단적 규제체계의 <중간정리>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2019.7./김자봉·노형식
-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의 역할, 2019.4.
-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 2019.1./함유근·이중석
- 2019년 경제 및 금융 전망, 2019.1.
- 생산자동화 및 기술발전이 금융산업 고용 및 임금구조에 미친 영향 : 미국의 사례(1980년과 2007년 비교), 2018.12./심명규·양희승
- ICO의 이해, 2018.12./홍기훈
-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과 대응방안, 2018.2./임 진·김영도·박중상·박춘성
-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 2017.1./신용상·이상영·이수옥·이태리 외
- 국내 미술금융 활성화 전략 및 활용방안, 2016.12./홍기훈
- 2015년 하반기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상황, 2016.11./김석기

■ KIF 금융리포트

-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시장 저신용자 배제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 2018.3./이수진
- 국내은행의 영업점 성과평가 방향성에 관한 연구 -KPI 개선을 중심으로-, 2018.2./김우진·이대기
- 국내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실증분석과 금융교육 정책과제, 2017.12./김자봉·김정환
-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환경의 변화와 국내 금융사의 대응 과제, 2017.7./지만수·이윤석
- 금융권 미청구자산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2017.3./이순호·이재연
-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동향과 과제 -바람직한 금융규제 체계의 모색-, 2017.1./김동환
-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 2016.10./서병호·이수진·이윤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경변화와 국내 증권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5.12./강종만
- 부동산금융시장의 현황 및 과제 -지분형 부동산증권화 및 NPL시장 등을 중심으로 2015.9./김동환
-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구조평가와 시사점, 2015.6./김우진
- 2014 국제금융시장의 동향과 구조변화 : 주간금융브리프(국제금융이슈컬렉션) 2014, 2015.01./KIF
- 북한 은행시스템의 변화와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 : 통일금융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2014.12./안형익·박해식
- 한국금융산업발전사(1990~2010년을 중심으로), 2014.12./KIF
- 한국 통화정책의 유효성 연구, 2014.6./강명현·이혜란
- 금융지주회사의 CEO 리스크와 지배구조 개선방안, 2013.11./김동원·노형식
- 금융기법에 대한 특허권 인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2013.8./이순호
- 중소기업금융의 발전과제, 2013.6./손상호·김동환
-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발전과 향후 과제-단기표금리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2013.3./김영도

- 가계부채 백서, 2013.3./KIF
- 디지털 금융의 이해, 2003.9./강임호 외
- 유럽 자본시장 및 결제시스템의 주요 변화, 2003.5./곽선호·이경형
- 금융상품의 법률관계, 2003.2./함귀용
- 아르헨티나 공기업의 민영화와 시사점, 2002.12./강종만
- IMF자금 조기상환의 의미와 향후과제, 2001.12./최홍식·박해식·박종규
- 자본이동과 환율변동 : 분석 및 예측, 2001.12./김정한·박해식·장원창·차백인
- 한국 금융산업의 과거·현재·미래, 2001.11.
- 은행 자산관리 및 은행 경영전략, 2001.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실태조사결과 및 개선 방향, 2001.9./김우진 외
- 미·일 자본시장의 구조 및 변화, 2001.7./이경형 외
- 은행구조조정 및 사이버뱅킹, 2000.9.
- 동남아 주요국의 금융제도, 1999.12./이광상 외
-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제도, 1999.12.
- 자산건전성 분류 사례집, 1999.11./손상호·김동환 외
- 은행산업 연봉제 도입방안, 1999.11./김병연 외
- 가치경영을 통한 은행의 경영혁신, 1998.7./지동현·함유근
-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Opening in East Asia, 1998.3.
- 금융정보화의 추진방안, 1998.3./지동현·함유근
- 국제화 환경에서의 금융개혁, 1998.2.
-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1998.2./박경서·김선호
- 스웨덴의 금융위기와 정부의 지원정책, 1997.12./이장영·박해식 외
- 경제자유화와 자본자유화, 1997.12./이천표
- 개방시대의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1997.6.
- 전자기술의 발달과 은행산업의 미래(CD Rom 포함), 1997.3.
- 외국의 은행합병현황, 1996.9./김병연·박경서 외
- 남미 주요국의 금융제도, 1996.8./이경형·정승원 외
- 우리나라 사금융시장에 관한 연구, 1996.8./박영철·양원근 외
- 체제전환국의 금융제도, 1995.4.
- 외환제도개혁연구, 1994.11.
- 금융제도개편연구, 1993.12.
- 외환시장 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연구, 1993.9.
- 외국환관리법 공청회, 1991.10.

※ 홈페이지(www.kif.re.kr)를 참조하시면, 한국금융연구원의 모든 발간물을 보다 상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병 윤(李秉允)

■ 약력

-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석사)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
- 한국은행 조사역
-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 「금융연구」 공동편집위원장
-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 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요 논저

-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 은행 -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공저), KIF 연구총서 2020-02, 한국금융연구원, 2020
- 「은행은 여전히 특별한가? :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은행의 대응」 (공저), KIF VIP리포트 2020-15, 한국금융연구원, 2020
- 「우리나라 지방은행의 발전방안」 (공저), KIF VIP리포트 2019-15, 한국금융연구원, 2019
- 「북한 금융의 주요 과제와 베트남 금융개혁의 시사점」 (공저), KIF VIP리포트 2019-12, 한국금융연구원, 2019
- 「금융기관론」 (공저), 제3판, 도서출판 청람, 2016
- 「우리나라 은행의 자금조달구조가 은행수익성 및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공저), KIF 연구보고서 2012-05, 한국금융연구원, 2012
- "Corporate Governance of Banks in Korea" (공저), in 「Research Handbook on International Banking and Governance」, Horthampton, MA: Edward Elgar Publishing, 2012

서 정 호(徐禎浩)

■ 약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 美 텍사스공과대학교 (경영학 석사, 박사)
- 한국은행/금융감독원 조사역
- 하나은행 부행장/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 금융감독원 금융자문관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산업연구실장/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
- 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2실장
- 현) 금융위원회 ombudsman (Ombudsman)
- 현)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협의회 위원

■ 주요 논저

-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 은행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공저), KIF연구총서 2020-02, 한국금융연구원, 2020
- 「국내 부동산신탁업의 구조와 발전과제」, KIF VIP리포트 2020-5, 한국금융연구원, 2020
- 「국내 자영업자의 부채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공저), KIF VIP리포트, 2019-7, 한국금융연구원, 2019
- 「최근 핀테크의 지급결제시장 참여 확대와 시사점」 (공저), KIF VIP리포트 2019-6, 한국금융연구원, 2019
- 「금융업의 불특정 다수인 활용과 정책과제」 (공저), KIF금융리포트 2017-2, 한국금융연구원, 2017

KIF 정책분석보고서 2021-03

빅테크의 대출기능 현황, 영향과 정책과제

2021년 12월 21일 인 쇄
2021년 12월 27일 발 행

발 행 인 박 종 규
발 행 처 한 국 금 용 연 구 원

서울시 중구 명동 11길 19 은행회관 5·6·7·8층
전화: 02-3705-6300 FAX: 02-3705-6309
http://www.kif.re.kr : webmaster@kif.re.kr
등록 제1-1838(1995. 1. 28)

© 한국금융연구원 2021

※ 보고서의 연구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 한국금융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